



2021. 12.

국회사무처 | 의사국

국회의안편람 해설편

국회의안편람 해설편

머리말

최근 국민의 입법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의원입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의안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20대국회의 의안 접수 건수는 24,996건으로, 제18대국회의 14,762건, 제19대국회의 18,735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21대국회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안(議案)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합니다. 국회는 의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통상 위원회 회부·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이송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이러한 의안 처리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안 실무의 기준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국회의안편람」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간한 「국회의안편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단축, 체포동의안의 기간 내 미표결 시 처리 방법 등 제20대국회 이후 국회 관계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전자발의 활성화에 따른 업무처리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만든 이 편람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의안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편람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의안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12.
의사국장 박 태 형

이 편람에서 인용·참조한 주요 법령명 약어

헌	대한민국헌법
계엄	계엄법
공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선	공직선거법
공윤	공직자윤리법
국	국회법
국감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공	국가공무원법
국재	국가재정법
대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령등공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인청	인사청문회법
청원	청원법
행절	행정절차법
공병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병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윤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청원규	국회청원심사규칙
공윤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정
국37①ii사	국회법 제37조제1항제2호사목

목 차



총 설

제1절 의안(議案)의 의의	2
01 의안의 개념	2
02 의안의 성립요건	3
03 의안의 일반적 특성	3
04 의안의 발의·제출권	4
05 의안의 발의·형식	4
06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수	6
07 의안의 제출시기	8
제2절 의안의 종류	9
01 내용에 의한 분류	9
가. 헌법개정안	9
나. 법률안	10
다. 예산안	10
라. 기금운용계획안	11
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1
바. 결산	12
사. 동의안	13

아. 승인안	14
자. 결의안	14
차. 건의안	14
카. 규칙안	15
타. 선출안	15
파. 의원징계	16
하. 의원자격심사	16
02 처리절차에 의한 분류	23
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의안	23
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의안	23
다. 의장이 결정하는 의안	24
제3절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	25
제4절 주요 개념	27
01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27
02 발의·제출·제안·제의(發議·提出·提案·提議) · 27	
03 의결·부결·폐기(議決·否決·廢棄)	28
04 수정안·대안·위원회안(修正案·代案·委員會案) 29	

제2편

**의안종류별
실무**

제1장 법률안

제1절 입법과정 개관	32
01 법률안의 입안과정	33
가. 법률안의 제안권자	33
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34
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41

라.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	48
02 법률안의 심의·의결	54
03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56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56
나.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57
04 법률의 효력발생	58
가. 법률의 효력발생 시기	58
나. 법률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	59
05 입법과정도	59
제2절 법률안 실무	61
01 접 수	61
가. 개 요	61
나. 업무처리	61
다. 확인사항	62
라. 법률안의 접수방법	72
마. 일괄개정법률안	73
02 본회의 보고	73
가. 개 요	73
나. 실무절차	74
다. 보고내용	74
라. 본회의 보고시점으로부터 처리시한이 정하여지는 의안	75
마. 조치사항	76
03 위원회 회부	77

가. 개 요	77
나. 위원회 회부절차	77
다. 원 구성 전 의안 접수와 처리	93
라. 안건의 회송	94
04 위원회 심사	96
가. 개 요	96
나. 심사절차	96
다. 법률안 통과형태	110
라. 심사 중인 안건의 소관 위원회 변경	114
05 체계·자구 심사	116
가. 개 요	116
나. 법률안의 상정시기	116
다. 심사의 범위	117
라. 심사기간의 지정	117
마. 심사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118
바. 심사절차	119
사.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123
06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125
가. 개 요	125
나. 작성·제출 절차	126
다.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부대의견	128
07 전원위원회 심사	128
가. 개 요	128
나. 개회요건	129
다.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및 개회시기	129
라. 전원위원회의 위원장	130
마. 전원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30

바. 전원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보고	130
08 본회의 심의	131
가. 개 요	131
나. 심의절차	132
09 정부이송 및 공포	138
가. 개 요	138
나. 이송 및 공포 절차	138
다. 관보정정	146
10 환부(還付)와 재의(再議)	146
가. 개 요	146
나. 처리절차	146

제2장 예산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자금운용 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제1절 예산과정	150
01 예산안의 편성	150
02 예산안의 심의·확정	153
03 예산의 집행	155
04 결산	156
제2절 예산안 실무	162
01 접 수	162
가. 개 요	162
나. 접수 시 확인사항	163

다. 의장결재와 본회의 보고	173
02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와 정부의 시정연설 · 173	
가. 개 요	173
나. 위원회 회부절차	174
다. 정부의 시정연설	175
03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76
가. 개 요	176
나. 예비심사절차	176
다. 정보위원회 심사특례	178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80
가. 구 성	180
나. 회 부	180
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181
가. 개 요	181
나. 심사절차	182
06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186
가. 개 요	186
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87
07 본회의 심의	191
가. 개 요	191
나. 심의절차	191
08 정부이송	193
가. 개 요	193
나. 이송절차	193

제3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실무	195
01 결산의 의의	195
02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의의	195
03 접 수	196
가. 개 요	196
나. 접수 시 확인사항	197
다. 의장결재와 본회의 보고	201
04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202
가. 개 요	202
나. 회부절차	203
다. 정부조직 개편과 회부	203
05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6
가. 개 요	206
나. 예비심사절차	206
다. 정보위원회 심사특례	208
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8
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09
가. 개 요	209
나. 심사절차	209
08 본회의 심의	211
가. 개 요	211
나. 심의절차	212
다. 일부 부처를 제외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212

09 정부통지 및 시정 요구사항 이송	215
10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송부	215
제4절 기금운용계획안	216
01 기금제도의 개관	216
가. 기금의 의의	216
나. 기금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218
02 기금운용계획안	218
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18
나. 기금운용계획안 실무	220
제5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24
01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 의의	224
0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제출·심의 절차	225
0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실무	227

**제3장 헌법개정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선출안, 의원징계, 의원자격심사, 중요
동의, 인사청문요청안, 각종 위원 위촉·추천·
지명의 건**

제1절 헌법개정안	228
01 헌법개정안의 의의	228
02 헌법개정의 절차	229

제2절 동의안	234
01 동의안의 의의	234
02 동의안의 종류	235
03 동의안 처리절차	237
04 동의안 관련 사항	242
제3절 승인안	249
01 승인안의 의의	249
02 승인안의 종류	250
03 승인안 처리절차	251
04 승인안 관련 사항	255
제4절 결의안	258
01 결의안의 의의	258
02 결의안의 종류	259
03 결의안 처리절차	260
04 결의안 관련 사항	268
제5절 건의안	275
01 건의안의 의의	275
02 건의안의 종류	275
03 건의안 처리절차	277
04 건의안 관련 사항	280

제6절 규칙안	281
01 규칙안의 의의	281
02 규칙안의 종류	282
03 규칙안 처리절차	284
제7절 선출안	286
01 선출안의 의의	286
02 선출안의 종류	287
03 선출안 처리절차	288
제8절 의원징계	294
01 의원징계의 의의	294
02 의원징계요구권자	295
03 의원징계사유	295
04 의원징계의 종류(국163)	302
05 의원징계요구·회부시한 등	303
06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305
07 본회의 의결 및 선포	306
08 의원징계안 처리절차(국155~164)	308
09 의원징계 관련 사항	309

제9절 의원자격심사	310
01 의원자격심사의 의의	310
02 의원의 자격요건	310
03 의원자격심사의 절차	311
04 의원자격상실결정의 효과	315
05 의원자격심사안 처리절차	316
제10절 중요동의	317
01 중요동의의 의의	317
02 중요동의의 종류	319
03 중요동의 처리절차	320
제11절 인사청문요청안	321
01 인사청문요청안의 의의	321
02 인사청문요청안의 종류	324
03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절차	325
04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 처리절차 ·	328
05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첨부서류	329
06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사항	333

제3편

의안 관련
중요사항

제12절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335

01 국회의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의의 335

02 국회(국회의장)가 위원을 위촉·추천·지명하는
공직 현황 336

03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처리절차 338

제1절 의안의 철회 및 수정 342

01 의안의 철회 및 수정의 의의 342

가. 관계 규정 342

나.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 342

다.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 343

라. 철회요구 및 수정안의 의안번호 부여 여부 · 344

02 의안의 철회 및 수정 절차 344

가. 의안의 철회 344

나.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정부의 수정안 제출 346

03 의안의 철회 관련 사항 348

가. 일부 발의자(찬성자) 제외 가능 여부 348

나. 철회된 의안의 효력발생시점 348

다. 철회된 의안의 재제출 350

라. 기존 비준동의안 철회 후 새로운 비준동의안
제출 350

제2절 수정동의, 의원발의 대안 352

01 수정동의, 의원발의 대안의 의의 352

가. 관계 규정	352
나. 수정동의	352
다. 의원발의 대안	355
02 수정동의, 의원발의 대안의 처리절차	356
가. 수정동의	356
나. 의원발의 대안	356
제3절 번안(翻案)	358
01 번안의 의의	358
가. 관계 규정	358
나. 번안의 개념	358
다. 번안의 제출방식	359
라. 번안의 제출시한	360
02 번안의 처리절차	360
가. 본회의 번안	360
나. 위원회 번안	362
03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의 수정방법	364
제4절 재회부	365
01 재회부의 의의	365
가. 관계 규정	365
나. 재회부의 개념	365
02 재회부의 절차	366
가. 절차요약	366
나. 처리절차	367



각종 질문

제5절 본회의 부의 요구	368
01 본회의 부의 요구의 의의	368
가. 관계 규정	368
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개념	368
02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절차	369

제1절 대정부질문	374
01 대정부질문의 의의	374
02 대정부질문의 절차	374
03 대정부질문의 한계	377
04 대정부질문 관련 사항	378

제2절 서면질문	381
01 서면질문의 의의	381
02 서면질문 절차	381
03 서면질문 관련 사항	383

제3절 긴급현안질문	386
01 긴급현안질문의 의의	386
02 긴급현안질문 절차	386

그림목차

그림 1-1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도	26
그림 2-1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도	40
그림 2-2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도	47
그림 2-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도	53
그림 2-4	입법과정도	60
그림 2-5	위원회 심사 절차도	107
그림 2-6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절차도	108
그림 2-7	소관 위원회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및 심사 절차도	109
그림 2-8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도	121
그림 2-9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도	122
그림 2-10	본회의 심의절차도	137
그림 2-11	법률안 정리·이송 및 공포 절차도	145
그림 2-12	재의요구 처리절차도	149
그림 2-13	예산안 처리절차도	160
그림 2-14	결산 처리절차도	161
그림 2-15	헌법개정안 처리절차도	233
그림 2-16	일반동의안 처리절차도	237
그림 2-17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절차도	238
그림 2-18	의원체포·구금동의안 처리절차도	239
그림 2-19	회기 중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의 건 처리절차도	240
그림 2-20	폐회 중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의 건 처리절차도	241

그림 2-21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처리절차도	252
그림 2-22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절차도	253
그림 2-2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처리절차도	253
그림 2-24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처리절차도	254
그림 2-25	일반결의안 처리절차도	261
그림 2-26	감사요구안 처리절차도	262
그림 2-27	국정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절차도	263
그림 2-28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처리절차도	264
그림 2-29	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 처리절차도	265
그림 2-30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처리절차도	266
그림 2-31	탄핵소추안 처리절차도	267
그림 2-32	일반결의안 처리절차도	278
그림 2-3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처리절차도	279
그림 2-34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국회규칙 처리절차도	284
그림 2-35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정하는 국회규칙 처리절차도	285
그림 2-36	의장이 선출(추천)안을 제안하는 과정	289
그림 2-37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 선출안 처리절차도	292
그림 2-38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공직후보자 선출안 및 추천안 처리절차도	293
그림 2-39	의원징계안 처리절차도	308
그림 2-40	의원자격심사안 처리절차도	316
그림 2-41	의장제의 중요동의 처리절차도	320
그림 2-42	의원발의 중요동의 처리절차도	320
그림 2-43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절차도	326
그림 2-44	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절차도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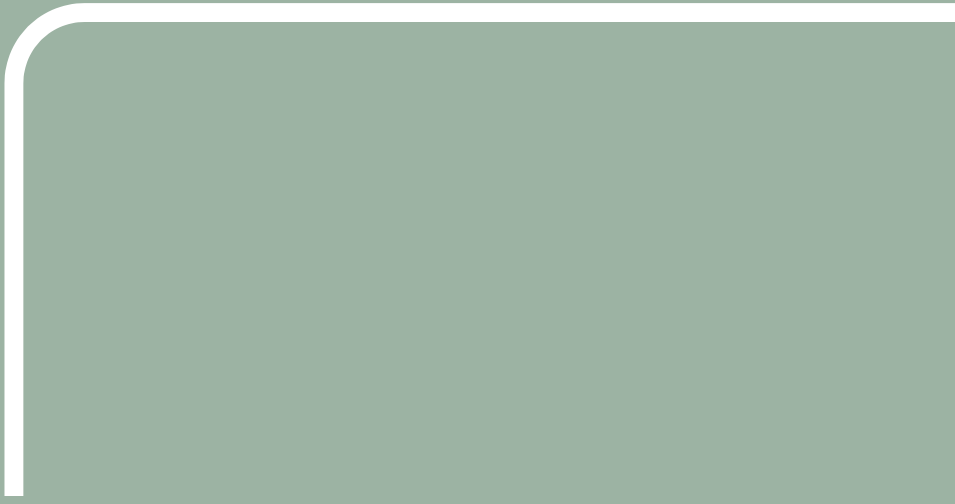
그림 2-45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 처리절차도	328
그림 2-46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처리절차도	338
그림 3-1	철회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345
그림 3-2	철회대상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345
그림 3-3	수정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347
그림 3-4	수정대상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347
그림 3-5	수정동의와 의원발의 대안의 비교	355
그림 3-6	수정동의 처리절차도	356
그림 3-7	의원발의 대안 처리절차도	357
그림 3-8	본회의 번안동의 처리절차도	361
그림 3-9	위원회 번안동의 처리절차도	362
그림 3-10	재회부 처리절차도	367
그림 3-11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절차도	369
그림 4-1	대정부질문 절차도	377
그림 4-2	서면질문 절차도	383
그림 4-3	긴급현안질문 절차도	389

표목차

표 1-1	내용에 의한 의안의 분류	19
표 2-1	법률안 접수 시 확인사항	71
표 2-2	예산안 편성 절차	152
표 2-3	예산안 심의 절차	154
표 2-4	예산의 집행 절차	155
표 2-5	결산의 절차	158
표 2-6	예산안 첨부서류의 종류	171
표 2-7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법정서류 및 근거규정	198
표 2-8	결산의 실제 제출서류 현황	199
표 2-9	기금과 예산의 비교	217
표 2-10	기금운용계획안 절차	219
표 2-11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현황	221
표 2-1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제출·심의 절차	226
표 2-13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범위	322
표 2-14	국회(국회의장)가 위원을 위촉·추천·지명하는 공직 현황	336
표 3-1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의 수정방법	364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

www.assembl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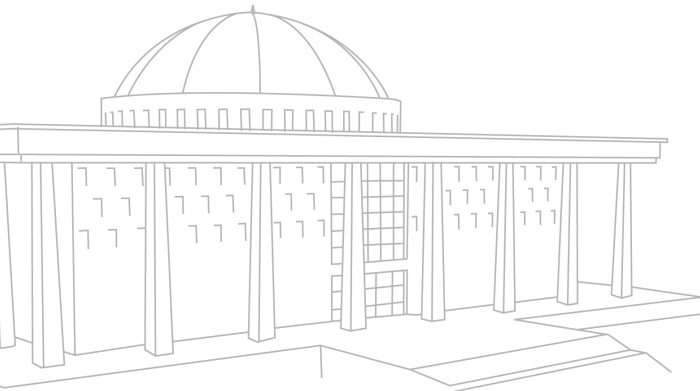
제1편 총 설

제1절 의안(議案)의 의의

제2절 의안의 종류

제3절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

제4절 주요 개념



제1절 의안(議案)의 의의

01 의안의 개념

국회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른다.

「국회법」은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서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안의 개념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02

의안의 성립요건

- ① 일정한 안을 갖출 것
- ② 의원(10명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 ③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등

03

의안의 일반적 특성

- ①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헌법개정안이나 의원체포동의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원 사직의 건 등과 같이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 관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안도 있다.
- ② 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다만,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약비준동의안 등과 같이 그 의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정을 할 수 없는 의안도 있다.
- ③ 수정안은 원안의 수정을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서면으로 발의 등을 하는 것으로, 원안을 전제로 성립되고 원안과 동시에 심의된다. 수정안은 원안과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의안으로 볼 수 없다. 실무적으로도 수정안에는 독

립된 고유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④ 의안은 원칙적으로 회기계속의 원칙(헌51)에 따라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만 자동폐기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국87), 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할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의안(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04 의안의 발의·제출권

의안은 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발의·제출할 수 있다.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결의안·건의안 등이고, 예산안·결산·조약비준동의안 등은 그 성질상 정부만이 제출권을 가진다.

05 의안의 발의·형식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

안은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에 바로 시행될 수 있거나 그 의미를 명

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요강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안이 될 수 없다.

표지부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제안이유에는 해당 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 의안의 국회의결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효과 등을 기재한다. 주요내용은 의안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의안의 발의서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헌법 또는 「국회법」 제00조에 따라 법률안, 결의안 등 의안을 발의함을 밝히고,
- ② 의안의 대표발의자, 발의자, 찬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 ③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 ④ 법률안이면 조문을,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면 주문을 적으며, 일부 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붙이고,
- ⑤ 의안의 시행에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이며,
- 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의 경우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06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의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의안은 국회심회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다.

“1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것은 발의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공동발의하거나 찬성하는 의원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발의자를 제외하고 찬성자만 별도로 1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고 의안 발의 또는 특정 사안 요구를 위한 요건

- ① **의원 2명 이상**
 - 위원회에서의 동의(국71)
 - 일반동의(국89)
- ② **의원 10명 이상**
 - 비공개회의의 동의(국75①)
 -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 발의(국79①)
- ③ **의원 20명 이상**
 -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국77)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국121①)
 - 긴급현안질문 요구(국122의3①)
 - 의원의 징계 요구(국156③)

참고 의안 발의 또는 특정 사안 요구를 위한 요건**④ 의원 30명 이상**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국87①)
- 일반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국95①)
- 위원회에서 폐기된 청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국128⑧)
-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국138)

⑤ 의원 50명 이상

-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국95① 단서)

⑥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 임시회의 집회 요구(헌47①)
- 휴회 중 본회의 재개 요구(국8②)
- 의원의 석방 요구(국28)
-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국63의2①)
- 국정조사 요구(국감조3①)

⑦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헌63②)
- 탄핵소추의 발의(헌65② 본문)
- 무제한토론 실시 요구(국106의2①)

⑧ 재적의원 과반수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헌65② 단서)
- 헌법개정안의 발의(헌128①)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국85의2①)

의안은 국회의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다. 제10대국회까지는 폐회 중에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국회가 집회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 의안을 회부 받은 후에 심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폐회 중에도 의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의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81①).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한 경우에는 회부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절 의안의 종류

01 내용에 의한 분류

가.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을 말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128①).

헌법개정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며, 수정의결을 할 수 없고 원안에 대하여 가·부만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수정의결은 공고되지 아니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되어 헌법개정안의 공고제도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기명투표로써 하되(국112④),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130①).

나. 법률안

“법률안”이란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을 말한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79①).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국79③).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82·89).

다. 예산안

“예산안”이란 정부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본예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할 때에는 이를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사용된다.

“추가경정예산안”(국재89)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대내외 여건의 중

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미한다.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정예산안”(국재35)과는 다르다.

라.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이란 정부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수입과 지출의 운용규모를 계상한 기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금융성기금은 10분의 3)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재70).

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란 정부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의2①②).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의3①).

바. 결산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예산안과 같이 결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지출은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국회는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법·부당한 지출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정부 재정집행의 결과를 감독하게 된다.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국84②)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은 사후승인의 의미로서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2008회계연도 결산까지는 정부로부터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별도의 건으로 제출받아 각각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으로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2009. 1. 1.)에 따라 각 중앙관서별로 소관 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통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도 「국회법」 개정(2010. 5. 28.)을 통해 종전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하나의 결산으로 통합하여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 동의안

“동의안”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이는 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의 국정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사전 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국채모집,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헌58),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헌60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헌60②) 등에 대한 동의권 및 국무총리 임명동의 등 인사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동의안에는 국회 안에서 의장단, 위원장 및 의원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본회의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예 :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의원 사직 등)도 포함된다.

아. 승인안

“승인안”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이외에도 국회 안에서 의장이나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예 :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포함된다.

승인안은 원칙적으로 안건의 성질상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다.

자. 결의안

“결의안”이란 의원이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감사요구안, 탄핵소추안 등과 같이 의안의 명칭에 “결의안”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안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결의를 표명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이면 결의안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결의내용을 정부,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의회 등의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차. 건의안

“건의안”이란 의원이 정부나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건의안이 본회의에

서 의결되면 건의사항을 담당하는 정부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송부한다.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송부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카. 규칙안

“규칙안”이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범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하며(국169①),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국회규칙은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국회법」의 시행령은 아니며 그 자주적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타. 선출안

“선출안”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국회에서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의안을 말한다(국46의3①, 인청2ii).

구체적으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과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4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3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3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4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 등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의안을 선출안 또는 추천안이라고 한다.

국회가 이들 기관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조직구성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파. 의원징계

“의원징계”란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국회가 의회구성원인 의원에게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국155~164). 의회자율권인 징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에 의한 처벌이나 정부가 공무원에게 과하는 일반적인 징계와는 구별된다.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헌법이 사법적 심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헌64④)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 의원자격심사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헌64②),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138).

의원의 자격이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자격심사란 국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의원의 자격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국회 스스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상 의원의 자격요건은 ① 적법한 당선인일 것, ②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 등이다. 따라서 의원에게 당선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개시 후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의원자격심사는 자격에 대한 쟁송의 심리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의원으로부터 자격심사청구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그것을 회부한 때에 한하여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모든 의원에 대하여 자격유무를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할 수는 없다.

참고 기타 안건

○ 중요동의

“중요동의”란 회의운영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의원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의장이 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다만, 수정동의나 번안동의와 같이 원안에 종속된 동의는 중요동의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중요동의를 동의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국회의 관행에 따른 구분이며 성질은 일반동의와 같다. 중요동의에는 휴회의 건, 회기연장의 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중요동의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식을 갖추어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동의를 의안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그 내용에 제한은 없으나, 법률로써 특별히 그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의안은 중요동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요청안”이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등의 도덕성, 자질 및 전문성 등을 검증받기 위하여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국65의2, 인청).

인사청문요청안은 임명동의안·선출안과는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의안과 구분하여 별개의 안건으로 관리하고 있다.

○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이란 법령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 없이 의장이 의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위원 등으로 위촉·추천·지명을 하는 것으로 의안과 구분하여 별개의 안건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1-1 | 내용에 의한 의안의 분류

구 분	종 류	비 고
헌법개정안	○ 의원발의 헌법개정안 ○ 대통령제안 헌법개정안	헌128~130 "
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 ○ 위원회제안 법률안 ○ 정부제출 법률안	헌52, 국79 헌52, 국51 헌52
예산안	○ 예산안 ○ 추가경정예산안	헌54, 국재33 헌56, 국재89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국재35 국재68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국재70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7의2①
결산	○ 결산	국재61
동의안	○ 국채의 모집,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동의안 ○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안 ○ 선전포고·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주류에 대한 동의안 ○ 일반사면동의안 ○ 국가보증채무동의안 ○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 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 한 동의안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 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 원수임명동의안 ○ 의원체포·구금동의안 ○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의 건, 의원 사직의 건	헌58 헌60① 헌60② 헌79② 국재92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③ 헌86①·98②·104 ①②·111④, 국46의3· 65의2, 인청 군인사법 17의2② 헌44①, 국26 국19·41⑤·45⑥·135

구 분	종 류	비 고
승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과 긴급 명령의 승인안 ○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p>헌55②, 국재52④ 국21③ 헌76③ 방송법 65 방송법 5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3 국감조7Ⅳ 국감조3④</p>
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의안으로서의 결의안 ○ 회기 결정의 건 ○ 의원 석방 요구 결의안 ○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 ○ 탄핵소추안 ○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감사요구안 ○ 보고·서류 등의 제출요구의 건 ○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국정감(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p>국79 헌47, 국7 헌44②, 국28 헌62②, 국121 헌65, 국130·133 헌77⑤, 계엄4·11 국44·79 국127의2·79 국128①·79 국129①·79 국감조16①</p>
건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의안으로서의 건의안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p>국79 헌63</p>
규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및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안 	<p>헌64①, 국169①</p>
선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p>헌111③, 국46의3·65의2, 인청 헌114②, 국46의3·65의2, 인청 국가인권위원회법 5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p>

구 분	종 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p>한 법률 13③ 공윤14의5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② 특별감찰관법 7①</p>
의원징계안	○ 징계요구	헌64②, 국155·156
의원 자격심사안	○ 의원 자격심사청구	헌64②, 국138~142

※ 기타 안건

구 분	종 류	비 고
중요동의	○ 특별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 • 비공개회의를 열자는 동의 • 의사일정 변경동의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 의장이 제의하는 중요동의	국75 국77 국85의2①
인사청문요청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 사장	국65의2, 인청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 의장이 위촉·추천·지명하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위원 등	
국정조사 요구	○ 국정조사 요구	국감조3①

02 처리절차에 의한 분류

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의안

- 법률안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결산
- 동의안(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포함)
- 일반의안으로서의 결의안
- 일반의안으로서의 건의안
- 규칙안
- 선출안(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 의원징계안
- 의원자격심사안

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의안

- 헌법개정안
-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의 건, 의원 사직의 건
-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동의안
- 선출안(국가인권위원회 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위원·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결의안
-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 탄핵소추안(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
-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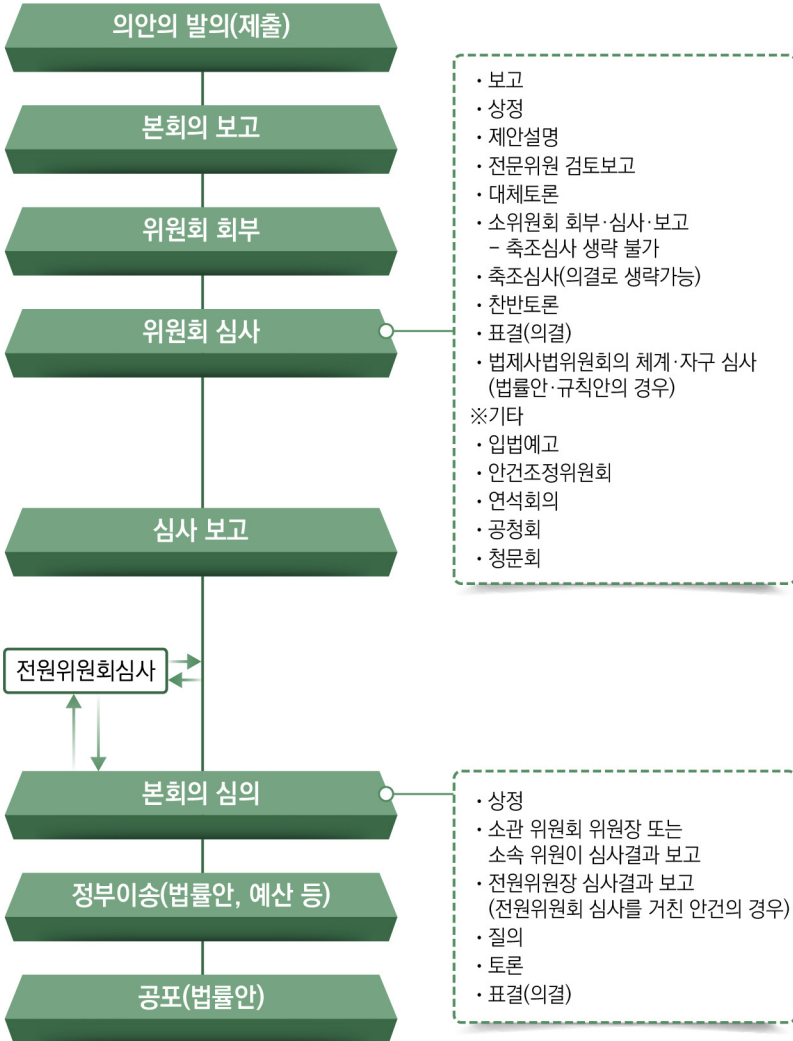
다. 의장이 결정하는 의안

- 폐회 중 위원장 사임 허가
- 폐회 중 의원 사직 허가

제3절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

의안의 처리절차에 의한 분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의안과 의장이 직접 결정하는 의안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안은 <그림 1-1>과 같은 절차로 심의된다.

▶ 그림 1-1 ◀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도



제4절 주요 개념

01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 의안 :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 안건 : 국회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다.
- 의제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말한다.

02 발의·제출·제안·제의(發議·提出·提案·提議)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과 관련하여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의안을 내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포함하여 “제안”이라고도 한다.

-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 : 정부가 의안을 낼 때
-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낼 때

03 의결·부결·폐기(議決·否決·廢棄)

- 의결 : 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부결·동의(同意)·승인(承認)·채택(採擇) 등으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는 가결(可決)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부결 :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의결의 형태를 말한다.
- 폐기 :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서 국회에서 의안이 폐기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
 - ①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원 30명 이상으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는 경우(국87)
 - ② 「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한 경우(국112⑦·130②)
 - ③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헌51)

04

수정안·대안·위원회안(修正案·代案·委員會案)

- 수정안 : 원안의 내용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수정이라 하며, 수정내용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본회의 수정안은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는 제안설명을 포함)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국95①).
- 대안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띤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 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
- 위원회안 :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입안한 안을 말한다. 원안의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 제출하는 대안과는 달리,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II

www.assembl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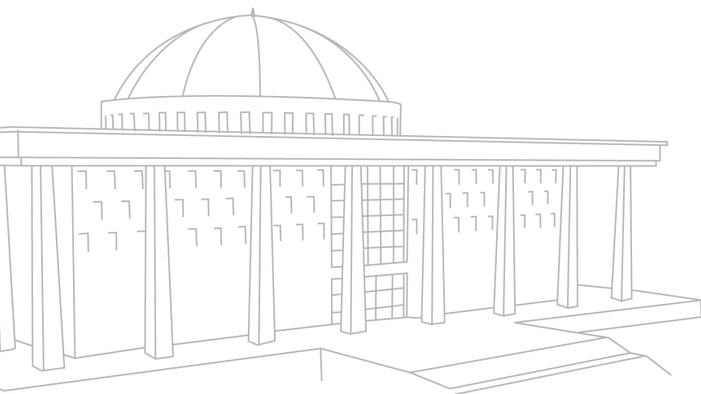
제2편

의안종류별 실무

제1장 법률안

제2장 예산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제3장 헌법개정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선출안, 의원징계, 의원자격심사, 중요동의,
인사청문요청안,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제1장 법률안



제1절 입법과정 개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것을 입법절차 또는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이라고 한다.

입법과정은 일정한 입법정책적 목적 아래 작성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친 다음 정부이송 및 대통령 공포를 거쳐 하나의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입법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법률안의 입안과정,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과정,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로 구분할 수 있다.

01

법률안의 입안과정

가. 법률안의 제안권자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의 정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국51), 이를 의원발의 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국79①),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79의2①).

또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79의3).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하며(헌82·89),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국79의2③), 연간 조세특

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42⑤).

헌법상 법률안 제안권이 없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관계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제도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현저히 불합리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들 내용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이를 참고하여 「국회법」 제51조에 따른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다.

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의원발의 법률안은 ①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관련 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안 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소속 정당의 정책실무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무회의 등 소정의 당내절차를 거쳐 발의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 이러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법준비 단계

특정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당 안의 정책기구의 결정 또는 정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각 정당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당전문위원을 두어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 소속으로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결정 과정에 당과 국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관계에 있어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한편, 2007년에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입법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의원의 입법준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법률안 기초 단계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보좌직원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

법제실에는 법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제관(변호사·박사 포함)이 배치되어 의원발의 법률안 입안 지원과 각종 입법정보의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원의 법률안 입안의뢰에 따라 법제실에서 법률안이 입안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률안 입안의뢰

법제실의 입안지원을 받아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은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작성해서 입안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제실(소관 법제과)로 법률안 입안의뢰서를 제출한다.

나) 입법취지 파악 및 법률안 문제점 검토

담당 법제관에게 법률안 입안이 의뢰되면 법제관은 우선 입법자가 의도하는 입법목적 및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의뢰된 법률안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제실무자인 법제관 등은 법률안의 입안을 의뢰한 의원 또는 의원보좌직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다) 입법자료 수집

훌륭한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법제관 등은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입법례 실태와 추세, 국가의 정책방향,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전문가 의견 등 법률안 초안 작성에 필요한 입법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라) 초안의 작성

내용적인 면에서는 입법의도의 반영 여부, 헌법체계 적합 여부 등에

유의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법률안의 형식·표현방식 등에 유의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법률이란 결국 특정한 의미를 가진 문자와 문장을 매개로 하여 표현되는 것이므로 법문은 입법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형식이나 내용이 법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마) 법제관 합동검토

법률안의 초안이 작성되면 법제과별 법제관 합동검토인 독회(讀會)를 거쳐 모든 조문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또한 국회입법지원단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인다.

바) 의회의원에게 송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성안된 법률안은 법제실 내부결재를 거쳐 입안의뢰한 의원에게 송부된다. 이 경우 그 법률안의 성안을 담당하였던 법제관이 의원에게 법률안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3) 비용추계서 작성 단계

발의하려는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 한다(국79의2①). 기존에는 의원실에서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2015. 3. 19. 시행)으로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하였다.

4) 조세특례평가 자료 작성 단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작성하게 한다(국79의3).

5) 국회 제출 단계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명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당초에 법률안을 기초하거나 입법을 주도한 의원이 발의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의 정책부서 등에서 기초하여 입법이 추진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의 소속 의원이나 그 법률안의 내용과 직접·간접으로 관련 있는 의원이 발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이유는 그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낭독하는 제안설명과 같은 연설문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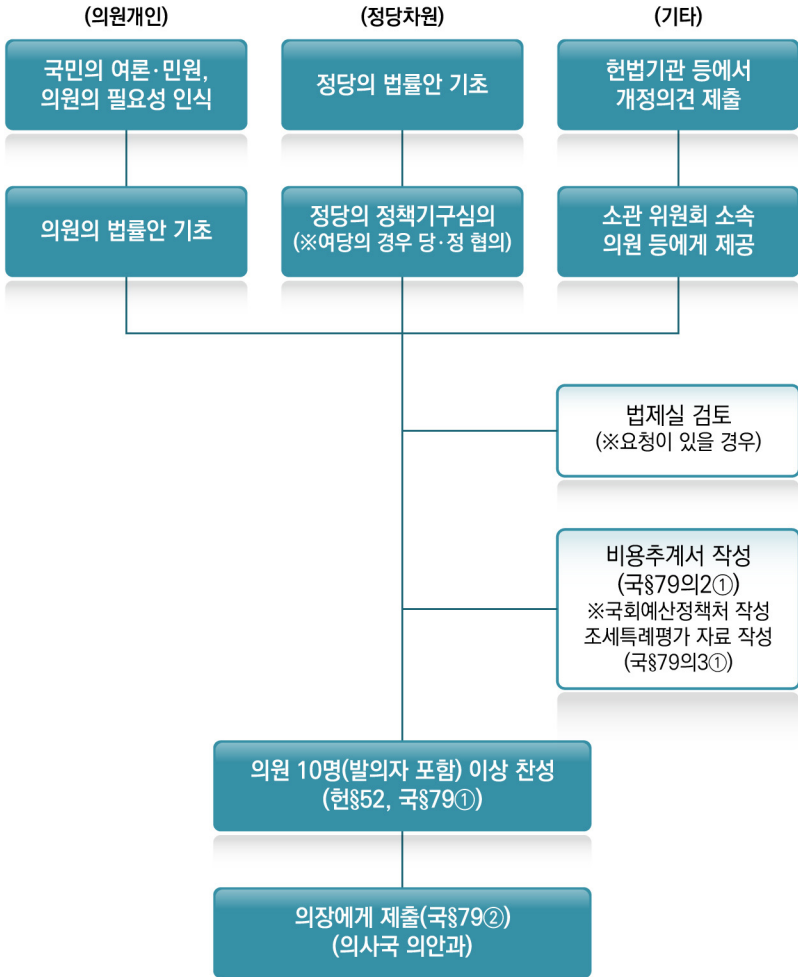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며,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요구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첨부한다(국79의2①, 국79의3①).

완성된 법률안을 의장(의안과)에게 제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발의자나 찬성자의 서명날인을 소정의 서명부에 모두 받은 후 법률안 제출공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안·비용추계서(비용추계요구서)·조세특례평가 자료·서명부를 첨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요약·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 그림 2-1 ◀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도



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1)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계획제도는 입법의 추진시기를 검토·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국정개혁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보완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법률안 제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고,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5의3).

2) 법률안의 기초

정부제출 법률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률안의 초안은 해당 법률의 집행을 담당할 소관 부처의 주무부서가 주관하게 된다. 주무부서는 소관 업무에 관한 입법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법률안 기초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주거나 전문가들로 임시 조직을 구성하여 입안하기도 한다.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국79의2③).

또한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등은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42⑤).

3) 관계 기관과의 협의(합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에서 입안을 하게 되면 그 법률안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는 만장일치제로 운영하는 관행상 어느 한 부처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제정·개정 과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관계 부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예산·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출연·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
- ②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
- ③ 공무원의 인사: 인사혁신처
- ④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 ⑤ 회계·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
- ⑥ 벌칙·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 법무부
- ⑦ 법령상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4) 당·정 협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입안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협의를 한다.

5) 행정상 입법예고

정부입법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에 앞서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행절41~43). 입법예고의 시기에 관하여 종전에는 관계 기관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6월 9일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률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또한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행절41).

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행절44, 법제업무 운영규정 18).

6)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률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7·10·12).

그 밖에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법제업무 운영규정 11⑥),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7) 소관 중앙행정기관 원안확정

앞서 기술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법률안의 초안을 보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된다.

8) 법제처 심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법률안의 자구·형식·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는 부처별로 분장하고 있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담당하고 있다.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과 그 밖에 쟁점이 있는 중요 법률안에 대하여는 모든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등이 참여하는 법령안합동심사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9)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국무회의 규정 5).

10)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정부의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인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소관은 법무부장관인 국무위원이, 그 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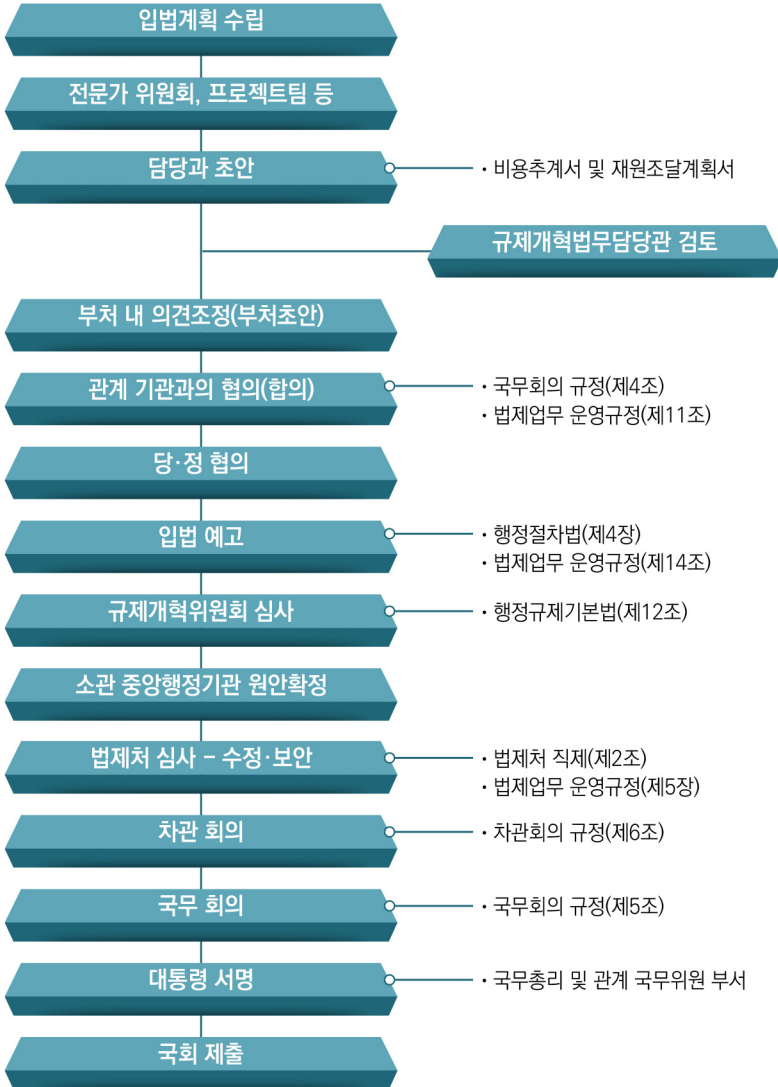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장관인 국무위원이 각각 부서한다.

11) 국회 제출

법률안 제출공문에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갖추면 법제처는 공문과 법률안(1부)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한다. 공문은 국가기관 공용의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결된 정부 측과 국회 측의 별도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요약·정리하면 <그림 2-2>와 같다.

▶ 그림 2-2 ◀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도



라.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

1) 제안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국51).

2) 소관 사항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국36·37·51).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회법」 제3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안의 입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특별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이 상임위원회와 겹치게 되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 해석하여 법률안 등의 의안제출권을 인정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소관 사항의 상호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명시적으로 법안심사권이나 그 밖의 안건의 심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및 제출권은 제한된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특별위

원회의 활동결과와 관련된 보고 성격을 가지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감사요구안의 경우에도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관련된 결의안 제출 사례

건	명	제안자	제안일	의결일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09.2.20.	09.3.2.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지지 결의안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장	10.11.25.	10.11.25.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	11.4.4.	11.4.5.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장	15.7.24.	15.7.24.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장	15.7.31.	15.8.11.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장	15.7.31.	15.8.11.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제고와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장	15.8.11.	15.8.1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16.9.23.	16.11.3.

사례

건명	제안자	제안일	의결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 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16.10.24.	16.11.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공기관 등 후원지원 촉구 및 권유 결의안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16.11.30	16.12.1.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장	18.5.28.	18.12.7.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	20.3.12.	20.3.17.

활동결과보고서의 경우 종래에는 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의장에게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주로 회의록 게재를 통한 서면보고)되었으나,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4년 5월 14일 「국회법」 개정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 절차가 신설되었다(국44⑥).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국회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유형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입법실무상 “위원회안”과 “위원회제출대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원회안”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위원

회제출 대안”은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하여 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즉, “대안”은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비하여 “위원회안”은 원안의 존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4) 제안절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제안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79의2②).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79의3).

위원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국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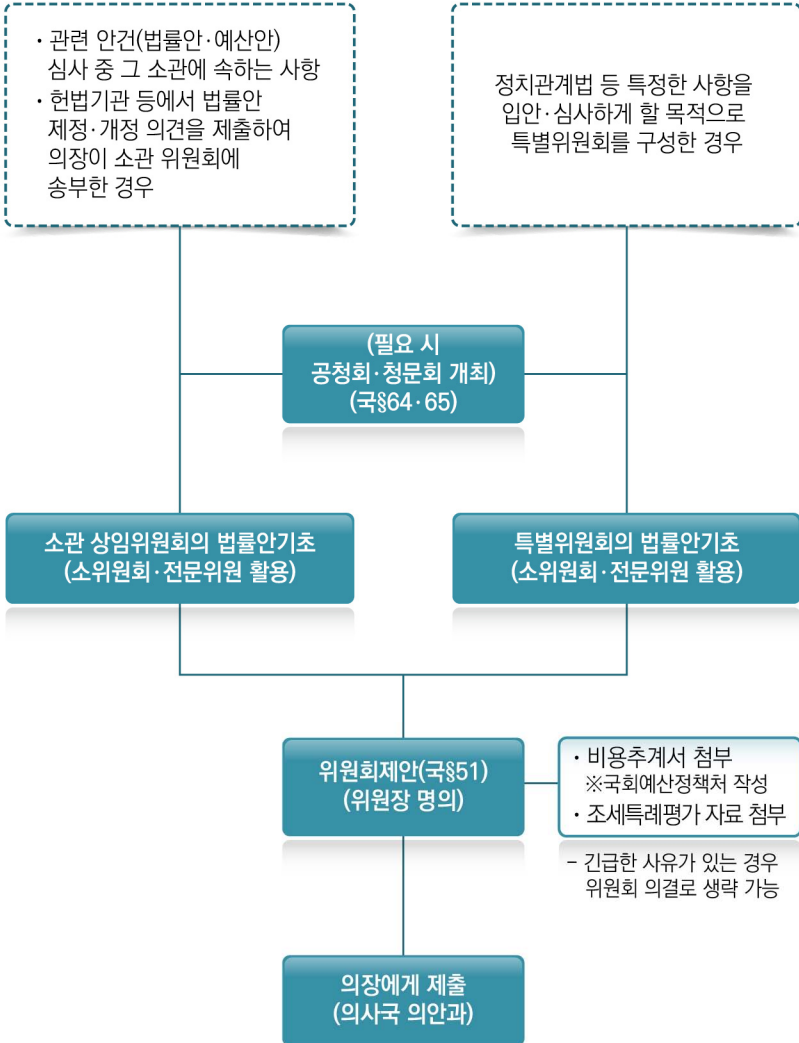
그러나 그 의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88).

5) 제안서식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은 이미 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제안서식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그 서식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을 요약·정리하면 <그림 2-3>과 같다.

▶ 그림 2-3 ◀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도



법률안의 심의·의결 과정의 세부사항은 다음에 설명하는 법률안 실무에서 후술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심의·의결 과정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 회부(국81·82) :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 ② 관련위원회 회부(국83):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입법예고(국82의2):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④ 위원회 심사(국58) : 의사일정 작성·상정 → 제안설명(발의자 또는 제출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대체토론 → 공청회 또는 청문회(제정·전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생략 가능) → 소위원회 심사 → 축조심사(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로 생략 가능) → 찬반토론 → 표결(의결)

참고 안건조정제도(국57의2)

○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절차

구성 요구(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 회부(대체토론 전에 구성 요구된 경우에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 → 심사 및 의결(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위원회 보고(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표결)

○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한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며, 활동기한은 90일로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 ⑤ 체계·자구 심사(국86) : 법제사법위원회
- ⑥ 심사보고서 작성·제출(국66) : 소관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
- ⑦ 전원위원회 심사(국63의2) :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하며 전원위원장 명의의 수정안 제출 가능
- ⑧ 본회의 심의(국93) : 본회의 상정 → 위원장의 심사보고 → 전원위원장 심사보고(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의 경우) → 질의·토론(의결로 질의·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 생략 가능) → 의결
- ⑨ 법률안의 정리(국97) : 본회의는 법률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

참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처리절차(국85의2)

○ 소관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지정 시

소관 위원회(지정일부부터 180일 이내 심사 완료) → 심사 미완료 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 자동 회부 간주 → 법사위(회부 후 90일 이내 심사 완료) → 심사 미완료 시 본회의 자동부의 간주 → 자동부의 간주 일부부터 60일 이내 상정 →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상정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단계에서 지정 시

법사위(지정일부부터 90일 이내 심사 완료) → 심사 미완료 시 본회의 자동부의 간주 → 자동부의 간주일부부터 60일 이내 상정 →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상정

03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며(국98①),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53①).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며,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제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법률공포대장에 공포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법률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12).

나.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1)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헌53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53③).

2) 국회의 재의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112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고(헌53④),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헌53⑥).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수정의결할 수 없다.

3) 국회의장의 법률공포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회의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

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의장은 대통령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포 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98③). 이 경우 공포방식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둘 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로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후 5일 이내
- ② 국회의 재의에 부친 결과 전과 같이 의결하여 법률로서 확정된 때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

의장이 법률을 공포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98③, 법령등공포11②)〈서식 1-121〉.

04

법률의 효력발생

가. 법률의 효력발생 시기

법률은 그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헌53⑦).

나. 법률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행하며 「국회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법령등공포11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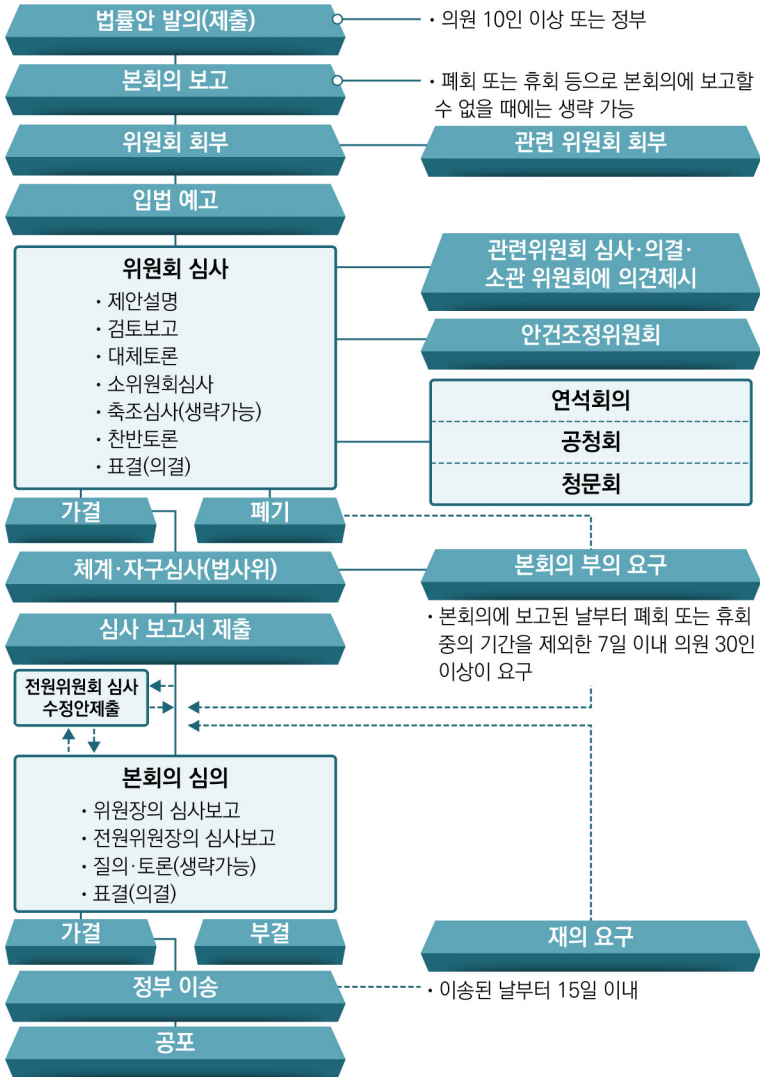
법률의 공포일은 그 법률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12). 판례는 공포일을 그 법률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로 보고 있다.

05

입법과정도

이상에서 살펴본 입법과정을 요약·정리하면 <그림 2-4>와 같다.

▶ 그림 2-4 ◀ 입법과정도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제2절 법률안 실무

01 접수

가. 개요

법률안의 접수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출권자가 그 형식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한 법률안을 의장이 수리하는 절차로서 그 법률안의 형식, 체계, 절차, 내용, 자구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률안의 접수는 의장의 권한사항이나 실제로는 의안실무자(의사국 의안과)가 「국회법」,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선례 등에 따라 법률안의 형식 등을 확인하여 하고 있다.

나. 업무처리

법률안의 접수는 의사국 의안과에서 담당하며, 의안실무자는 접수 시 제출공문, 발의자·찬성자의 서명부, 비용추계서 등을 확인한다. 제출 서류에 일부 미비요건이 발견되면 제출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에 접수하며 흠결된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을 접수할 때에 형식이나 자구 등에 오류가 많은 경

우에는 발의자로 하여금 법제실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비용추계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조세특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의안실무자는 법률안을 접수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 ① 접수된 법률안의 e-의안시스템 등록
- ② 소관 위원회 결정 및 관련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 ③ 법률안 요지서 및 회부공문 작성
- ④ 의장결재
- ⑤ 소관(관련) 위원회 회부

다. 확인사항

의안실무자는 법률안을 접수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 문

가) 의원발의 법률안

의원은 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 법률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공문에는 대표발의자·발의자 및 찬성자가 등록인장으로 날인하고 서명한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안실무자는 의원발의 법

률안의 경우에는 발의요건 충족 여부(발의자 포함 10명 이상의 찬성)와 등록인장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발의공문의 법률안 제명이 현행 법률 제명 및 인쇄물의 법률안 제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서식 1-1>.

나) 정부제출 법률안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공문은 반드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대통령 명의로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의안실무자는 이의 누락 여부와 공문상 법률안 제명의 오기 여부 등을 확인한다<서식 1-2>.

참고로, 법제처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공석이 아니고 사고(해외출장 등)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자나 직무대리자의 부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정부의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인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사례

부서 없이 대통령 명의로 제출된 안건을 반려한 사례

- 제헌국회 제1회 제57차 본회의(1948. 9. 4.)에서 「유엔총회 정부 대표 파견에 관한 건」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 대통령 명의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을 정부에 반려하기로 의결하였다.
- 2001회계연도 결산 등의 대통령 명의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음을 이유로 반송(2002. 9.)하였다.

다) 위원회제안 법률안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공문은 제안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며, 의안실무자는 직인의 누락 여부, 공문의 법률안 제명 오기 여부 등을 확인한다(서식 1-80, 82).

2) 법률안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크게 ① 표지부 ② 본문부 ③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④ 비용추계서(정부제출 법률안은 재원조달계획서 포함) ⑤ 조세특례평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의안실무자는 법률안의 접수 시 위의 구성요소 구비 여부와 다음에 설명하는 구성요소별 세부사항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가) 표지부(서식 1-3, 81, 83)

(1) 법률안 제명

법률안의 제명에는 「○○○법(률)안」,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폐지법률안」의 4가지 형태가 있다.

의안실무자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접수할 경우에 반드시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명이 개정된 법률을 공포 후에 접수할 때에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률이 시행 전인 경우에는 개정 전의 법률제명으로, 시행 후인 경우에는 개정 후의 법률제명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2) 의안번호

의안번호는 의장(의안과)이 접수한 의안을 e-의안시스템에 등록한 순서에 따라 부여하되 대별(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3) 제안(발의·제출)연월일

제안(발의·제출)연월일은 의안과에 접수할 때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4) 제안(발의·제출)

법률안을 발의 주체별로 구분하면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위원회제안 법률안으로 나눌 수 있다.

구 분	제안(발의·제출)자
• 의원발의 법률안	• 발의의원의 성명 및 찬성의원 인원 수
• 정부제출 법률안	• 정 부
• 위원회제안 법률안	• 위원장

※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한자·한글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해당 의원실과 협의 필요)

(5) 제안경위

위원회안(대안 포함)의 경우에는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다.

(6) 제안이유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나 그 취지를 간략히 적은 것으로서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요내용과는 구별된다.

(7) 주요내용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안의 핵심적 사항을 조문 순서로 구체적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8) 참고사항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거나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또는 그 밖에 입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또한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기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법률에 명문화하거나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던 사업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나) 본문부<서식 1-4, 5>

(1) 법률번호

법률을 공포할 때 부여하는 공포번호가 법률번호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일 때는 확정되지 아니하며, 법률공포 시 그 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여 둔 공란이다.

(2) 법률안 제명

법률안의 제명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표지부와 달리 부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법률안 본문

법률안의 본문은 그 법률안의 핵심내용으로서 제정법률안, 전부개정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의 작성 형식상 차이가 있다.

- ①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 전문을 조문 순서대로 모두 기재한다.
- ②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 개정할 부분에 한정하여 개정내용을 기재한다.
- ③ 폐지법률안은 현행 법률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4) 부 칙

법률안의 부칙은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모든 형태의 법률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만을 개정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도 부칙을 둔다.

다) 신·구조문대비표〈서식 1-6〉

신·구조문대비표는 원칙적으로 일부개정법률안에만 첨부된다.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지 아니하나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법률안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개정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별표만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법률(공포 후 시행 전의 법률인 경우에는 공포 후 시행 전인 법률)과 개정안과의 내용을 대비시킨 것으로서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본문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문이 우선한다.

라) 비용추계서 등(서식 1-7~13, 22, 23)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일 경우에는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국79의2).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또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3①단서).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79의2①).

비용추계 대상 법률안은 ① 예산 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조세 관련 법률안이 대표적이며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②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그 예로 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형식으로 지원조항을 두더라도 비용추계는 해당 규정을 시행할 때를 대비한 것으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된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회계 간 자금이동으로 통합재정 개념상 순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은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외에도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국79의2③). 재원조달계획서에는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생,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6).

마) 조세특례평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의 경우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79의3①).

3) 발의자(찬성자) 서명부<서식 1-14>

발의자 또는 찬성자 서명부는 의원발의 법률안에만 붙인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79①). 발의공문에는 발의의원 중 대표발의자(1인 발의인 경우에는 발의자)만이 서명날인하고 발의자 또는 찬성자 서명부에는 발의자 또는 찬성자가 서명날인하여 법률안에 첨부한다. 이 경우 반드시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교섭단체에서 당론으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날인한 당론 확인증<서식 1-15>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기명날인(등록인장이 아닌 경우도 가능)한 발의자(찬성

자) 서명부를 법률안에 첨부한다.

그러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함께 각각의 당론으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교섭단체는 당론 확인증과 기명날인의 서명부 제출이 가능하지만 비교섭단체는 일반 의원발의와 같이 소속 의원들이 서명하고 등록인장으로 날인한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파일 제출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e-의안시스템 등록과 법률안의 공개를 위하여 법률안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쇄물

법률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안 인쇄물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표 2-1	법률안 접수 시 확인사항
--------------	----------------------

구 분	확 인 사 항
1. 공문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발의자 서명 및 등록인장 • 대통령서명 및 직인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
2. 법률안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부 • 본문부 • 신·구조문대비표 • 비용추계서(비용추계요구서) • 조세특례평가 자료 및 재원조달계획서 • 법률안 내용의 중복 여부 확인
3. 법률안의 요지설명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관련위원회 회부 필요성 •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부처협의 내용 및 결과
4. 발의자·찬성자 서명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의자·찬성자 수 • (대표)발의자와 찬성자의 중복 여부 • 이름과 서명의 일치 여부 • 등록인장 확인
5. 파일·인쇄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 파일, 비용추계서 파일(추계요구서 제출시 요구서 1부) • 의원발의 법률안 1부 • 정부제출 법률안 1부
6. 의안번호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는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e-의안시스템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
7. 의안통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위원회별·종류별 통계
8. 본회의 보고 및 국회공보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와 통보

라. 법률안의 접수방법

1) 서면접수

e-의안시스템의 ① 의안관리(접수/회부)에서 의안접수 → ② e-의안결재(기록물등록대장)에서 비전자문서로 등록한다.

2) 전자접수

가) 의원발의 법률안

의원실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법률안을 e-의안시스템에서 접수한다.

나) 정부제출 법률안

정부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법률안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하여 e-의안시스템으로 송부한 후 e-의안시스템에서 접수한다.

다) 위원회제안 법률안

위원회에서 e-의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법률안을 e-의안시스템에서 접수한다.

마. 일괄개정법률안

일괄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소관주의(국36·37)와 개별 법률의 직접 개정원칙을 고려할 때 접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일괄개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 ①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일괄개정법률안을 분할할 것
- ② 개정되는 각 법률의 개정 취지가 같고, 개정 대상이 동질적·일관적이며, 개정 내용의 통일적·동시적 시행이 필요한 사항일 것
- ③ 개별 법률에 따라 구체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본질적·실체적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아닐 것
- ④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일 것

02

본회의 보고

가. 개 요

본회의 보고란 의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건의 발의 또는 제출 상황 및 위원회의 심사과정 등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의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사국장이 보고한다.

의안 관련 본회의 보고사항으로는

- ① 의안의 제출, 심사보고서의 제출, 재의요구, 의안 철회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의안에 관한 사항
- ③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④ 결의, 건의, 결산 시정 요구,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정부의 처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 ⑤ 중요 문서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이 있다.

특히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먼저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국81), 추후 개의회는 첫번째 본회의에서 그때까지 접수된 법률안을 일괄 보고한다.

나. 실무절차

의안 등의 접수 → 의사과에 통보 → 의사과의 보고문안 작성 →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의 구두 보고(구두 보고에서 생략된 보고사항은 의정기록과에 내용 통보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기재)

다. 보고내용

- 의안의 접수 시 : 접수일자, 발의(제출)자, 의안 제명 등을 구두 보고하며, 소관위 회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함.

- 의안의 철회 시 : 보통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회의록에만 철회사실을 기재하며, 발의자와 철회일을 기재함.
- 심사보고서의 접수 시 : 보통 본회의에 상정할 때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로부터 보고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을 구두 보고하고 심사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함.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시 : 보통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회의록에만 그 사실을 기재하며, 기재시점은 대안반영폐기와 일반폐기의 경우 모두 심사보고서 제출 후 첫 번째 본회의 개의일에 각각 기재함.

라. 본회의 보고시점으로부터 처리시한이 정하여지는 의안

○ 의원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국87).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112⑦).

○ 탄핵소추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때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130①②).

○ 의원 체포·구금 동의안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국26②).

마. 조치사항

본회의 보고사항은 회의록 게재사항이므로 의안실무자는 이 중 의안의 접수·철회·회부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의정기록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03

위원회 회부

가. 개 요

법률안 등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서식 1-17~21>. 「국회법」과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되, 법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나. 위원회 회부절차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1) 소관 위원회 결정

가) 소관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

법률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되,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그 소관을 결정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이 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법률안 연혁을 참고하고, 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법률안의 내용 및 주무부처와 「정부조직법」 및 부처별 직제 등 내용적·형식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특히, 제정법률안에서 기존 정부부처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영역을 제도화하려는 때에는 어느 부처업무와 연관성이 높은지, 어느 부처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법률안에서 주무부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해당 법률안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정부조직법」상 어느 부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정부제출 법률안은 부서한 국무위원을 참조하여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국가정보원이나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처 소관 법률안 등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여 제출하므로 이 경우에는 국무위원의 부서로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소관), 「습지보전법」(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 소관) 등과 같이 소관 부처가 둘 이상이어서 둘 이상의 국무위원이 공동으로 부서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무위원 공동 부서로 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처 업무가 법률안의 중심을 이루는지, 어느 부처의 업무비중도가 높은지 등을 고려하여 1개 위원회만을 소관 위원회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동 소관으로 공포된 법률안에 대하여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위원회를 소관으로 결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예로 들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나) 법률안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안의 내용이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거나 소관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직접 결정한다(국37②·81②).

다만, 「국회법」에 따른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전 단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조율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국회사무처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2)〈서식 1-16〉. 따라서 실무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에 「국회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의안실무자는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 관계되는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및 대표

발의의원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관련 의안의 위원회 계류 상태, 의안의 소관 위원회 결정기준 등에 입각한 검토자료를 준비한다.

사례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 회의 사례

법률안	발의자	위원회 개최 이유	조정 결과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13. 4. 18. 장하나의원 등 21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대책 등 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됨.	13. 5. 2. 환경노동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회부함.
상조업법안	13. 4. 22. 김춘진의원 등 11인	상조업에 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보건복지·정무위원회의 소관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됨.	13. 5. 2. 보건복지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정무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회부함.
국무총리의 헌법 권한의 행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13. 4. 9. 변재일의원 등 12인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 등 헌법상 권한 및 행사·절차·효력 규정을 내용으로 하여 소관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됨.	13. 8. 5. 「국회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함.

사례

법률안	발의자	위원회 개최 이유	조정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3. 6. 26. 심상정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 환경노동·법제사법위 원회의 소관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됨.	13. 7. 8. 환경노동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회부함.
경제민주화기본 법안	14. 1. 15. 추미애의원 등 104인	국무총리 소속의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경제민주화 관련법령 실태조사 등 정무·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됨.	14. 2. 18. 정무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기획재정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회부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	14. 3. 14. 원유철의원 등 14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기업투자 관련 각종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여 정무·기획재정·산업 통상자원·국토교통위 원회의 소관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됨.	14. 4. 21. 개별 법률에 그 내용을 담아 재발의하는 방안 에 관하여 법제실에서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운영위에 소관결정 협의요청을 하도록 함.

사례

법률안	발의자	위원회 개최 이유	조정 결과
청년정책 기본법안	16. 8. 17. 박홍근의원 등 10인	청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정부·기획재정·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됨.	16. 9. 27. 여성가족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함.
청년기본법안	16. 8. 24. 이원욱의원 등 10인	청년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정부·기획재정·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됨.	16. 9. 27. 여성가족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함.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8. 4. 25 정병국의원 등 10인	청년의 날 제정, 기념식 및 행사 실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기획재정·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됨.	18. 5. 4. 「국회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함.

다) 위원회의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안의 경우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국81③).

「국회법」 제81조제3항은 해당 위원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나아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소관 위원회 위원이 의안과 사실상·간접적·반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면 일부 상임위원회는 대부분의 소관 의안을 스스로 심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주의 원칙을 벗어나 상임위원회 간에 소관을 둘러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의 회의 제척사유로서의 “직접 이해관계”의 의미를 해당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1997. 5. 8. 대법원결정 96두47)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자격자보다 자신이 가지는 자격에 치우쳐 불공평하게 의안을 심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격 또는 지위와 관련되는 조항이 있다고 모두 적

용할 것이 아니라 소관 위원회 위원이 같은 규정을 심사함으로써 유사한 자격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업무영역 등에서 갈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이해관계 법률안의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요청 사례

법률안 (소관 위원회)	발의자	주요내용	협의요청 결과
정부법무공단법안 (법제사법위원회)	05. 10. 6. 정 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등에 있어서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대리 가능	법제사법 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결정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06. 4. 28. 송영선의원 등 17인	민사소액사건 일부에 대하여 법 무사에게 소송대리 권한을 부여	법제사법 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결정

라) 법률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국44①)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소관 사항이 정하여지게 된다. 그 외에도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국82①),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국82②).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명칭이나 주문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안에 한정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명시적으로 법률안심사권이나 의안심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권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해석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특별위원회가 법률안심사권을 가졌는지 여부는 그 명칭(예 :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이나 주문내용(예 : ○○○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법의 제정 또는 법적·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을 보고 판단한다.

의안실무자는 법률안심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경우 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회송요청을 하여 이를 회송받은 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의 종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회송요청을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서식 1-24~28>. 해당 안건이 회부된 관련위원회에는 관련위원회 지정 없이 소관 위원회가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서식 1-29>.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 특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그 특별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국44③).

활동기한이 2010년 4월 30일까지였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10년 4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제·자구 심사를 의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2010년 9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0년 9월 16일까지 존속하였던 사례가 있다.

2) 관련위원회 결정

가) 관련위원회 결정 기준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국83). 따라서 의안실무자는 소관 위원회 결정 시 입법조사관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관련위원회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하고 있다.

(1)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에서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 법률의 소관을 변경하는 경우
- 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특례, 조세특례, 부담금 설치, 특별회계 설치, 토지이용규제 신설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2) 여러 부처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정부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규정할 때 2개 이상의 부처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 2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부서한 법률

나) 관련위원회 회부방법

특정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의 결정은 의장이 회부 단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서식 1-30~32>이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서식 1-36> 의장이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임을 명시하여 회부할 수 있다(국83①)<서식 1-37>. 의장이 관련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할 때에는 소관 위원회에 회부통지를 하여야 한다<서식 1-35, 38>.

의장이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83②). 의장이 관련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이 불투명하여 심사기간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관 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 또는 “소관 위원회 의결 전”까지로 정하기도 한다. 이는 잦은 심사기간의 연장요청과 승인 등으로 인한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국83④),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국83⑤).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 기간 내에서는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의 심사를 종료하기 전에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관 위원

회는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국83③).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보고서에 그 요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국66②),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 시 관련위원회의 의견도 보고하여야 한다(국67①). 관련위원회가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기재한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서식 1-39).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그 연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식 1-40, 41).

관련위원회 의견서의 작성요령 및 관련 서식은 <서식 1-42~44>과 같다.

3) 위원회 심사기간 지정제도

가) 심사기간 지정의 의의

위원회의 심사기간 지정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의 기간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하면 심사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2012. 5. 25.)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관련 안건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안건의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한정하였다(국85①). 심사기간의 지정은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 또는 회부한 후에 할 수 있다(서식 1-45).

사례

심사기간 지정 사례

의안명	소관 위원회	심사기간 지정일		본회의 의결
		지정일	지정기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27인)	안전행정	14.12.2.	14.12.2.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로 합의문 작성 • 심사기간 경과 후 본회의에서 원안의결(14.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문화 체육관광	15.12.2.	15.12.2. 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간 경과 후 산성범의원 등 31인으로부터 본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수정안 가결(15.12.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철우의원 등 24인)	정보	16.2.23.	16.2.23. 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간 경과 후 주호영의원 외 156인, 이종걸의원 외 106인으로부터 각각 본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주호영의원 외 156인의 본회의 수정안 가결(16.3.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정무	17.3.30.	17.3.30. 1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로 합의문 작성 • 심사기간 경과 후 김관영의원 등 50인으로부터 본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수정안 가결(17.3.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산업통상 자원	17.3.30.	17.3.30. 1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로 합의문 작성 • 심사기간 경과 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 가결(17.3.30.)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는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장이 그 법률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참고 심사기간 지정 유형

○ 소관 위원회 회부 시 또는 심사 중의 심사기간 지정 :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그와 관련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안건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안건의 경우에 정함(국85①).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중의 심사기간 지정 :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그와 관련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법률안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법률안의 경우에 정함(국86②).

○ 예산안·결산 등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기간 지정 :

의장이 정함(국84⑥).

사례

심사기간 경과 후 계속 심사한 사례

의안명	심사기간 지정일	심사경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중희의원 등 16인)	09. 3. 2. (같은 날 15:00까지 심사기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간 내에 심사 미료됨에 따라 소관위 (정무위) 중간보고(09.3.2.) • 심사기간 경과 후(09.3.3.) 소관위 수정의결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중 체계·자구 심사 기간 지정(09.4.30.) • 홍준표의원 외 169인 수정안 발의(09.4.30.) [09.4.30. 본회의 수정의결]

나) 위원회의 중간보고 및 다른 위원회 회부

지정된 심사기간 경과 후 중간보고(국85②)를 듣는 이유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살펴 그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체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심사전망은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간보고는 심사기간이 경과된 때나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진하여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서식 1-46, 47>. 중간보고의 형식은 「국회법」상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의안과 관련된 중요 문서는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정치적인 상황이나 본회의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구두보고로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례

구두보고 형식으로 중간보고를 한 사례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	소관 위원회	심사기간		본회의 의결
			지정일	지정기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10.11.17.)	보건복지	10.12.8.	10.12.8. 11:00	10.12.8.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8.10.10.)	지식경제	11.11.22.	11.11.22. 16:00	11.11.22.
우체국예금·보험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8.10.13.)	지식경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8.10.10.)	지식경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8.10.10.)	지식경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8.10.10.)	지식경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8.10.13.)	지식경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8.10.10.)	지식경제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국85②),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안실무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기간이 지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기간이 지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다. 원 구성 전 의안 접수와 처리

현행법상 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보고 후에 하되,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원구성의 지연으로 의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상황일 때에는 법률안을 비롯한 의안을 접수만 한 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보류하게 된다.

실제로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5건의 법률안과 9건의 동의안, 3건의 결의안, 3건의 승인안, 1건의 결산, 1건의 인사청문요청안 등 총 602건의 의안을 접수만 한 채 위원회 회부를 보류하였다가 원구성 후 소관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다.

원구성 지연 등에도 의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의안 회부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라. 안건의 회송

안건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시에 이미 심사대상 안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었으므로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송받은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별도의 본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의장은 이러한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의안실무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사대상 안건이 계류 중인 상임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회송요청을 하여 이를 회송받은 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당 안건이 회부된 관련위원회에는 소관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를 의결하여 대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대안반영폐기 대상이 된 의안을 회송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11년 3월 1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를 위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회송하였으나 대안반영폐기 대상인 2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송하지 않고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시켰다.

사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송받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사례

건명	소관위(회송)	특별위(회부)	회송일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	지식경제·국방·국토해양위원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11.3.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11.7.1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15.1.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	보건복지위원장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장	15.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7건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8.10.19.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18.11.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18.11.15.

04

위원회 심사

가. 개 요

위원회의 역할은 의안에 대한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을 위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① 입법예고 ② 위원회 상정 ③ 제안자의 취지 설명 ④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⑤ 대체토론 ⑥ 공청회·청문회 ⑦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⑧ 축조심사 ⑨ 찬반토론 ⑩ 표결의 순서를 거친다.

나. 심사절차

1) 입법예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간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국82의2,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3). 이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4).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5).

2) 상 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49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상정할 수 없다(국59).

한편, 위원회에서 의안의 최초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2012. 5. 25.)으로 의안의 상정간주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59의2).

3) 제안자의 취지 설명(趣旨 說明)

법률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 발의자가, 발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한다. 발의자 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

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인 경우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설명한다.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보고서<서식 1-48>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고(국58⑨), 이 경우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규정」에서 검토보고서의 작성 원칙과 배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5) 대체토론(大體討論)

대체토론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대체토론의 범위를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시하는 찬반토론과는 구별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 또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58③·57의2①).

대체토론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질의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발의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도 있다. 질의 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102).

6) 공청회·청문회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58⑥).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국65⑤).

7) 소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나면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하며, 소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회법」상 소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건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설소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국57①). 종전에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에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으나, 「국회법」 개정(2005. 7. 28.)으로 상설소위원회 설치의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국회법」 개정(2019. 4. 16., 2020. 12. 22.)으로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정례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여 회부된 법률안 등 의안을 심사할 수 있다. 또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대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안의 기초 등을 행하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과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일반적으로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소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국57⑤⑧).

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

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58④).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상정,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률안을 회부받은 후 15일 또는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한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는 대체토론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시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도입된 제도로서 위원회는 그 취지에 맞게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소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원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관련 입법사항을 추가하여 조정하는 등 법률안을 독자적으로 성안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안하기도 한다. 위원회안 제안을 위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안을 성안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고, 나아가 위원회의 의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소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성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므로(국57④) 특정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도 되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미리 그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한 심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8) 축조심사(逐條審査)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58⑤).

9)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 109~114의2). 표결의 방법에서는 기립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국7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54).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유무(異議有無)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석에서 선포한다.

참고 안전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국회법」 개정(2012. 5. 25.)으로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이미 안전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제외)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안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 회부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데,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여야 한다(국57의2①③④).

안건의 조정위원회로의 회부는 소위원회 심사 중 또는 소위원회 심사 완료 후에도 가능하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 전에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할 수 있다(국57의2①). 이는 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로 하되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국57의2②). 다만,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때에는 그 활동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국57의2⑨).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의 기산점인 ‘구성일’은 실제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날이 아니라 안전조정요구서가 제출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안전조

참고 안전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정요구서가 제출된 후 위원선임이 지연되는 등을 사유로 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한다. 심사절차는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57의2⑩), 의결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함으로써 협의와 타협에 의한 안건처리를 유도하고 있다(국57의2⑥).

조정위원장은 조정안이 의결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국57의2⑥⑦).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않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국57의2⑧).

참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소관위)

「국회법」 개정(2012. 5. 25.)을 통해 도입된 안건신속처리(Fast track)제도란 여·야 간 쟁점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의원 또는 위원이 안건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심사 미종료 시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및 지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및 지정은 소관 위원회 심사단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단계 모두에서 가능하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49, 50).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85의2①). 의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가결된 때(서식 1-51)에는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하고(서식 1-52, 53),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국85의2②).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절차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국85의2③). 동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로 부의)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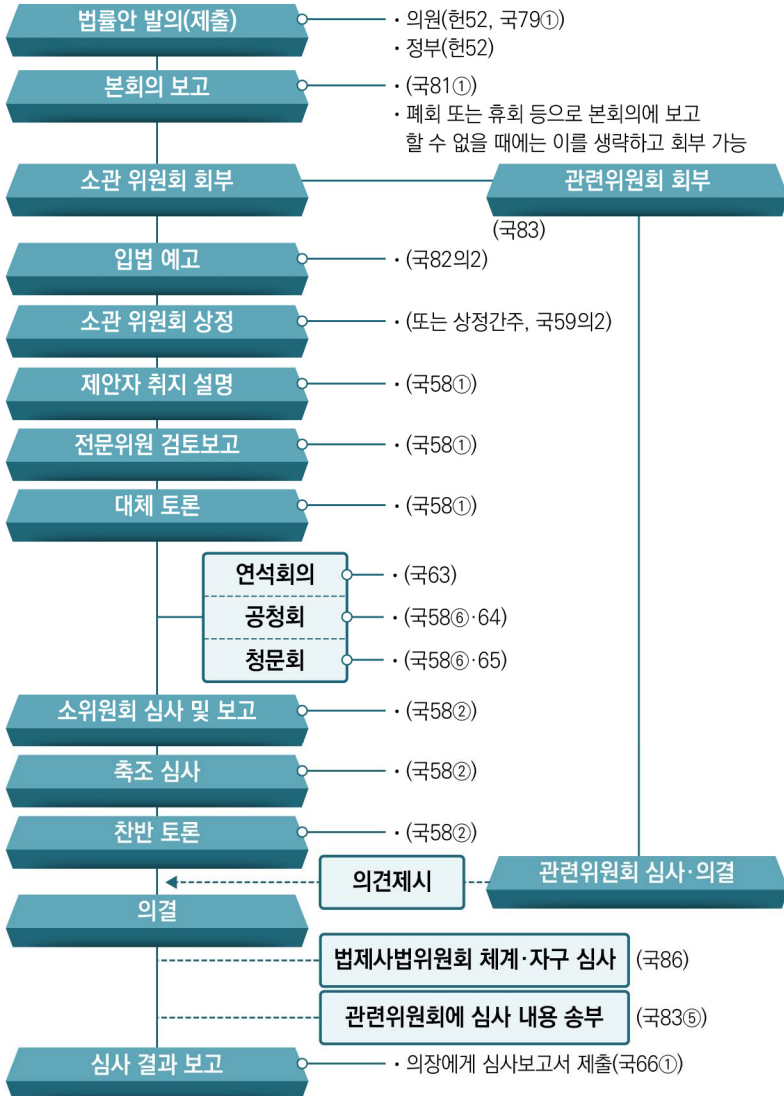
참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소관위)

(국85의2④). 이는 간주규정이므로 소관 위원회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체계·자구 심사 의뢰 등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안건의 진행상황 및 회부 간주일 등과 관련된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안과에서 소관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간주 사실을 통지한다(서식 1-54). 다만,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등 일련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85의2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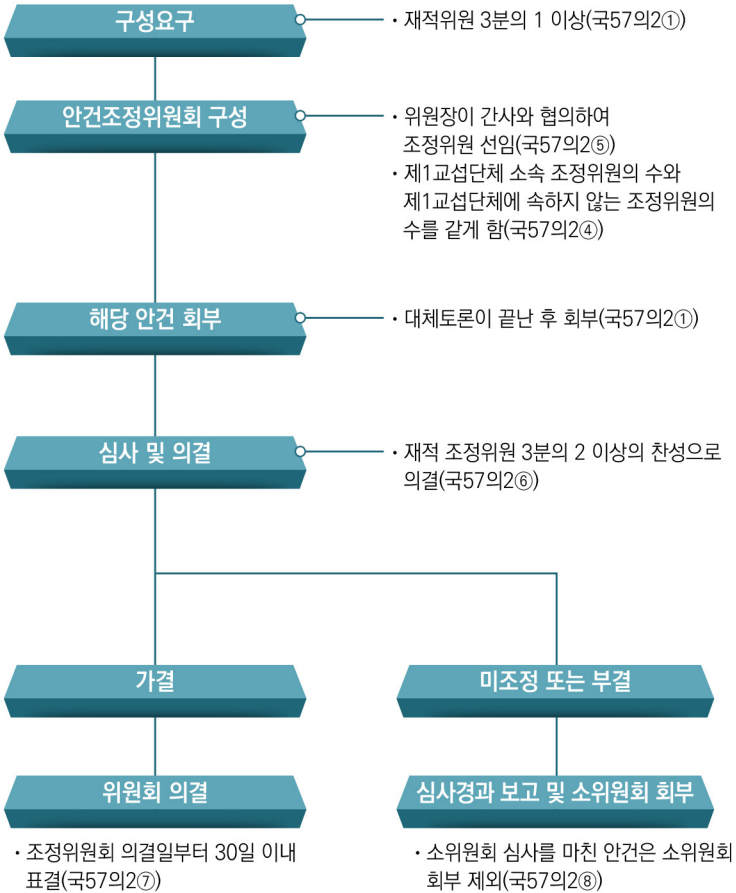
사례**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사례**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일
200447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16.12.19.	16.12.26.
20177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4.	18.12.27.
20177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4.	18.12.27.
201770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4.	18.12.27.
201650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12.	19.4.30.
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4.26.	19.4.30.
20200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4.26.	19.4.30.
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19.4.29.	19.4.30.
2019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4.24.	19.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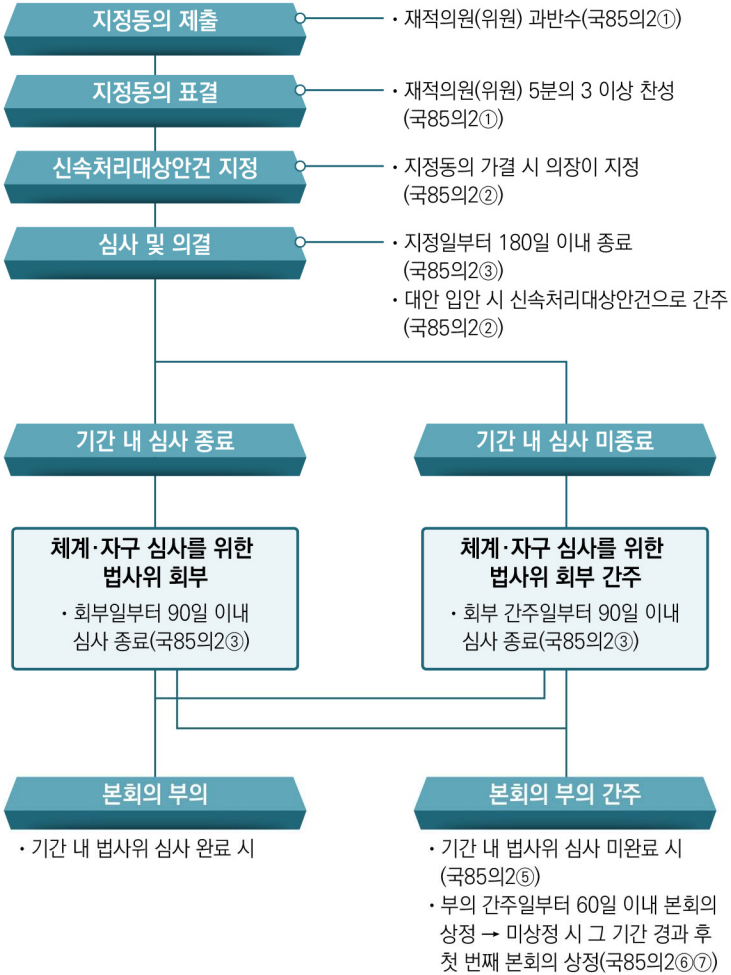
▶ 그림 2-5 ◀ 위원회 심사 절차도



▶ 그림 2-6 ◀ 안전조정위원회 심사 절차도



▶ 그림 2-7 ◀ 소관 위원회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및 심사 절차도



다. 법률안 통과형태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또는 한글의 한자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된 내용의 심사보고서 반영에 따른 변경은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가) 개념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므로(국71), 위원회에서의 수정안 발의는 위원 2인 이상이면 할 수 있다.

나) 범위

- 문안의 내용 및 체계·자구의 변경
- 문안의 삭제 또는 새로운 문안의 추가
- 제명의 변경
- 조·항 등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조·항 등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의 통합 등 형식 변경 등

3) 대안의결

가) 개념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명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95)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51)이 있는데, 통상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의원발의 대안은 원안에 수정을 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위원회에 회부되면 원안과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한편, 위원회제출 대안은 위원회가 새로운 안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나) 범위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경우
- 1건의 법률(또는 입법)사항에 대하여 2건 이상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2건 이상의 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 1건의 법률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에 있어서 원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조문의 내용까지 개정하고자 할 경우로서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 대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 의원발의 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원안과 의원발의 대안을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
- 1건의 법률안을 분할하여 여러 건의 법률안으로 하거나 여러 건의 법률안을 합하여 1건의 법률안으로 하는 경우
- 제명이 다른 법률안을 합하여 1건의 법률안으로 하거나 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을 합하여 제정법률안을 만드는 경우 등

4) 폐기(廢棄)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 또는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중 어느 하나이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意思)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즉, 법률안이 위원회 의결과과정에서 대안의 가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결된 경우와 대안의 가결을 전제로 기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경우이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에 의원 30명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87).

위원회에서의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국회의 최종적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회의 능률적인 운영이란 관점에서 모든 의안에 대한 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만,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본회의의 부의 요구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본회의에 결정권을 유보하려는 취지라고 하겠다.

위원회에서 대안의 가결을 전제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대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대안의 제안과 동시에 또는 대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그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안 제안에 따른 폐기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는 대안의 제안과 함께 제출된다.

대안의 가결을 전제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법률안은 형식상으로는 폐기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대안에 그 내용과 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2015. 9. 16 부터는 법률안 처리 통계의 작성 시 “법률반영” 항목에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다. 대안반영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률안은 대안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되고,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원안의 내용 또한 최종 법률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또는 정부이송 법률안(대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하여 법률로 확정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법률반영” 항목에서 제외된다.

라. 심사 중인 안건의 소관 위원회 변경

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회부되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국회법」 개정 등으로 소관이 변경되어 다른 위원회로 회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소관의 변경이 단순히 위원회의 명칭만을 변경한다든지 위원의 변동이 전혀 없는 소관 변경인 경우에는 나머지 심사절차만 행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사례

중전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인정한 사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918131호) 등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2015. 8. 18.) 및 그 외 법률안 심사 진행
- 새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존 특위 심사경과를 인정하기로 함(2015. 9. 1.).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문

2015년 8월 31일로 활동기한이 종료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계류되었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에 대한 심사 경과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의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로 구성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승계한다.

사례

종전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28호)**
 - 정부위원회에서 검토보고 완료(2016. 11.)
 -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 개정으로 소관이 변경되어 정부위원회에서 회송받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2017. 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보고(2017. 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1370호)**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완료(2016. 11.)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회부 및 다시 검토보고(2017. 9.)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회부 및 다시 검토보고(2018. 1.)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회부 및 다시 검토보고(2018. 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1057호)**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보고 완료(2016. 11.)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로 회부 및 다시 검토보고(2018. 11.)

05 체계·자구 심사

가. 개 요

위원회에서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국 37① ii 아·86)〈서식 1-56~58〉.

체계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심사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은 법제사법위원회 외의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후 심사기간이 경과되어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법률안과 동의안·승인안 등 다른 종류의 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안의 상정시기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상정할 수 있다(국59).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지난 후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59의2).

다. 심사의 범위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국86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체계와 자구의 심사에 한정되고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등 상위법이나 타법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 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체계심사의 대상이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뢰한 원안(대안·위원회안 포함) 또는 수정안을 심사하고,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면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수정의결을 한 후 그 심사결과를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에 통보하며〈서식 1-69〉, 소관 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반영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하거나 제안하게 된다.

라. 심사기간의 지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었으나 「국

회법」 개정(2012. 5. 25.)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그와 관련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한 법률안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한 법률안의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 기간 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86②)〈서식 1-59~63〉. 이는 법률안 등의 본회의 심의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 지체로 인하여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마. 심사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서식 1-70). 그러나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86③).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된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일반의결정족수)로 표결한다(국86④).

이는 체계·자구 심사기간의 지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이유 없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본회의의 심의 또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한편, 본회의의 부의 요구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계속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게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바. 심사절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절차는 일반 고유안전건의 심사절차와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즉,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국58①⑤). 그러나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찬반토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86① 후단).

참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법사위)

「국회법」 개정(2012. 5. 25.)을 통해 도입된 안전신속처리(Fast track)제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도 적용된다. 다만,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등 일련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리절차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참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법사위)

○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신속처리대상 법률안은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서식 1-54). 이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국85의2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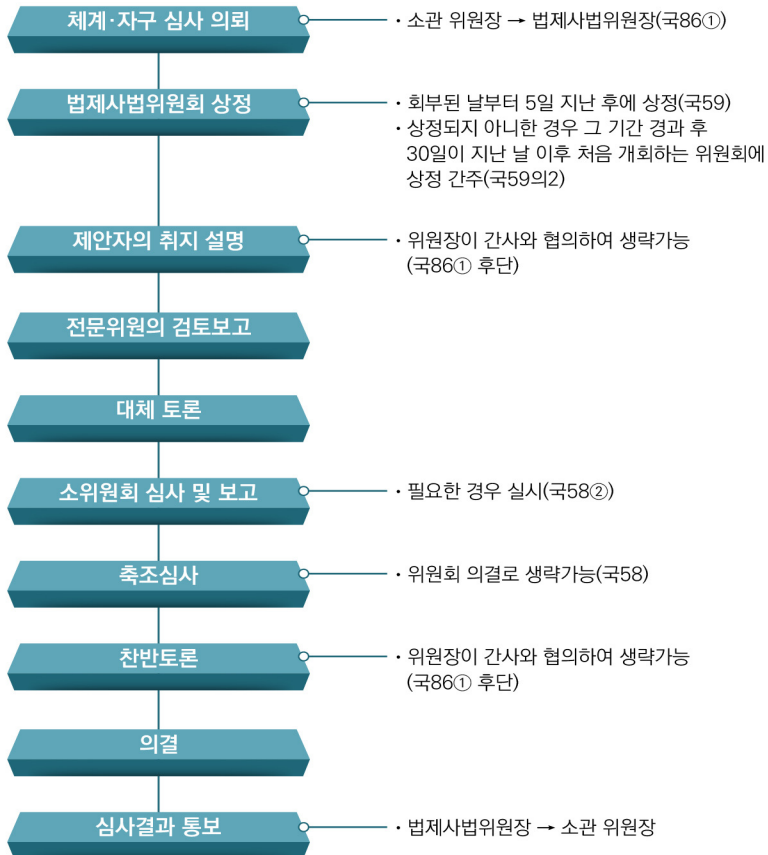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는 간주규정이므로 의장의 본회의 부의와 같은 별도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안건의 진행상황 및 부의 간주일 등과 관련된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안과에서 소관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본회의 부의 간주 사실을 통지한다(서식 1-55).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중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그 지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때에도 역시 해당 안건의 진행상황 및 부의 간주일 등과 관련된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안과에서 소관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본회의 부의간주 사실을 통지한다(서식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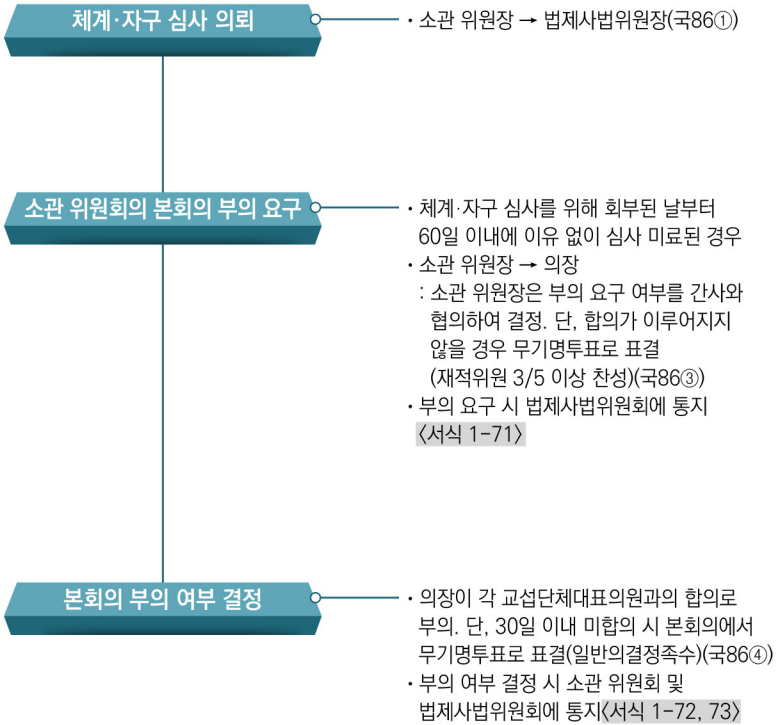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와 체계·자구 심사 지연 시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2-8, 9>와 같다.

▶ 그림 2-8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도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법사위 회부(간주)일 또는 지정일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 완료 → 심사 미완료 시 본회의 부의 간주

▶ 그림 2-9 ◀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도



사.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및 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최종적 의사는 의결형태를 통하여 표출된다. 특정 법률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2개 이상의 의결형태로 표현하여 최종적 의사를 모호하게 하는 행위는 국회 관례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같은 제명의 안건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지만, 의결 시에는 같은 차수의 회의에서 같은 제명의 안건을 동시에 의제로 삼지 아니하는 이유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2건 이상 계류 중일 때에는 같은 제명의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에 반려하여(〈서식 1-67〉) 소관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통합한 1건의 대안을 입안한 후 다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여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최종적 의사로서 1건의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의사일정 조정이 원만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일자를 달리하여 각각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도 회의일자를 다르게 하여 의결하는 방법도 있다.

사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반려의결 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사례

의안명	발의자	법사위		소관 위원회 처리 내용
		회부일	처리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 위원장	06.4.4.	반려의결 (06.8.23.)	2건을 통합한 대안으로 번안의결 (06.8.24.) → 법사위 의결(06.8.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06.4.14.		

사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려의결한 법률안을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사례

의안명	발의자	법사위		소관 위원회 처리 내용
		회부일	처리결과	
부도공공건설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의원 대표발의	12.11.15.	반려의결 (13.2.19.)	3건을 통합한 대안으로 원안가결 (13.2.28.) → 법사위 의결(13.4.22.)
부도공공건설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부도공공건설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06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가. 개 요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66①)〈서식 1-77, 78〉.

소관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그 의안의 취지·문제점·이해득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 심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었을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심사보고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국93).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안실무자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당일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등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국93의2).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79〉.

나. 작성·제출 절차

1) 심사보고서의 작성

심사보고서는 위원장 명의로 작성하여 의사국 의안과에 제출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국66②).

소관 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서 수정이 있었을 경우에도 의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당초에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로 심사보고한다. 그러나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체계·자구 수정부분을 법률안 본문에 반영하고 심사보고서에는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은 “약간의 체계·자구정리가 있었음”이라고 명기한다.

2) 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심사보고서는 위원회 의결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작성하는데 작성요령 및 기재사항은 <서식 1-78>과 같고, 의원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그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그 안전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가능하다(국66③).

3) 심사중간보고서

의장이 「국회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다. 중간보고의 형식에는 문서나 구두 보고 등의 제한이 없으나 중간보고는 안건의 심사에 관한 절차상의 중요 행위로서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식 1-46, 47>. 다만, 정치적인 상황, 의사일정의 긴박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보고 형식으로 중간보고를 대신한 경우도 있다.

사례

구두보고 형식의 중간보고 사례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심사기간		비 고
			지정일	기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10.11.17.)	보건 복지	10.12.8.	10.12.8. 11:00	10.12.8. 중간보고

다.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부대의견

부대의견은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결의문의 일반적 효력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법률안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을 붙인 경우 부대의견은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의결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되어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사보고서 서식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국 의안과에서 최종적으로 문서처리를 할 때에는 통상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의 개정문만을 법제처로 이송하게 된다. 따라서 부대의견을 정부부처에 확인시키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가 해당 중앙부처에 직접 부대의견을 통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07 전원위원회 심사

가. 개 요

“전원위원회”란 의원 전원이 위원이 되어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전원위원회제도는 「국회법」 제정(1948. 10. 2.) 시도입되어 6차례 개최된 적이 있으나 1960년 9월 26일 「국회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가, 위원회중심주의로 인하여 본회의의 의안심사가 형식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6대국회에서 「국회법」 개정(2000. 2. 16.)으로 재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5월 16일 본회의 의결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원위원회제도 재도입 당시에는 전원위원회의 의안심사는 계속하여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의원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5년 7월 28일 「국회법」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다.

나. 개최요건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려면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심사대상안건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일 것
- ②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것

그러나 이러한 개최요건을 갖추더라도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63의2①).

다. 전원위원회의 개최요구 및 개최시기

「국회법」에서는 전원위원회의 개최요구시기를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로 규정하고 있고(국63의2①),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전원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본회의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는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5①). 원칙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는 날에 최초로 개최하나, 당일 개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다음 날에 개최할 수 있다(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5②).

라. 전원위원회의 위원장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된다(국63의2③). 의장이 2명의 부의장 중 1명을 지명하면 지명된 부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마. 전원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63의2④).

바. 전원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보고

전원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다(국63의2①). 여기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은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원위원회는 이들 의안을 심사하고 그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국63의2②).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수정안 포함)하는 때에는〈서식 1-110〉 전원위원장이나 전원위원장이 지명하는 다른 위원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전원위원회 개최 사례

대별	안건명	소집요구 (소집요구일)	개회일
16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김원웅의원 외 70인 (03.3.28.)	03.3.28. 03.3.29. (2일간)
17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 연장동의안	이인영의원 외 83인 (04.12.8.)	04.12.9. (1일간)

08

본회의 심의

가. 개 요

“심의”란 회의체에서 회의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하는데, 현행 「국회법」에서는 본회의의 심사·논의를 “심의”라 하고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논의는 “심사”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 심의절차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과 그러하지 아니한 안건이 서로 다르다(국93).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 ① 위원장의 심사보고
- ② 질의(생략가능)
- ③ 토론(생략가능)
- ④ 표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 ① 제안자의 취지 설명
- ② 질의
- ③ 토론
- ④ 표결

다만,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안이 제출된 의안의 경우에는 소관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전원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나. 심의절차

1) 본회의 상정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할 수 있는 본회의 부의 안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에서 가결(원안 또는 수정)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

- ② 위원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입안·제출한 경우(국51)
- ③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경우(국87①)
- ④ 위원회가 이유 없이 안건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국85②)
- ⑤ 안건의 성질상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경우
- ⑥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소관 위원회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경우(국86③④)
- ⑦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때, 부의 간주일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하고, 미상정 시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국85의2)
- ⑧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이 해당 연도 11월 30일 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경우(국85의3)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당일에 상정될 경우 의원들의 최소한의 검토시간도 없이 본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후 「국회법」 개정(2002. 3. 7.)으로 특별한 사유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상정시기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보고서(위원회제안 포함)가 제출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국93의2).

그리고, 2003년 2월 4일 「국회법」 개정에서 정기회 중에 법률안의 제출·처리가 집중되어 예산안 심의 및 국정감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회 중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으로 제한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연중 법률안 처리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개정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2) 위원장의 심사보고(제안자의 취지 설명)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에서의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하게 된다(국67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의 경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하지 아니하므로 충실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으나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는 없다(국67④). 만일 위원장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려고 할 때에는 토론에 참가할 것을 미리 통지하고 의원의 자격으로서 발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대신하게 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국67②③). 같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러 개의 법률안이 일괄하여 의제로 상정된 때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일괄하여 동시에 할 수 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하되, 안건

의 심사경과와 결과, 제안이유·수정주요내용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자구 심사결과 등을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이 심사보고에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기 때문에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만 하게 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는 성질상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안건과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 안건 및 본회의의 수정안 등이 있다(국85②·85의3·86②·95).

위원회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제안하는 위원회안이나 위원회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제안하는 위원회제출 대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안자로서 취지를 설명하며(국51), 위원회의 대안이 의제가 된 때에는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원안에 대한 심사경과도 동시에 설명한다.

3) 전원위원장의 심사보고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전원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전원위원회의 중요 기능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있으므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되, 수정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원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질의·토론 및 표결

위원장의 심사보고나 제안자의 취지 설명이 있는 후에는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국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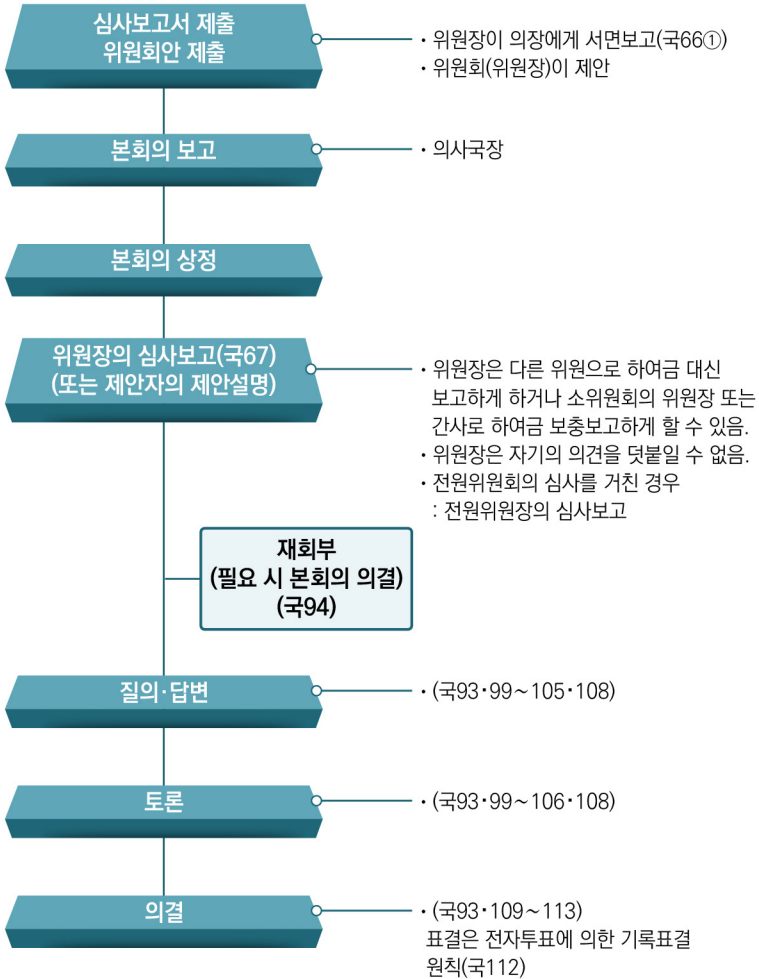
표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지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거수표결은 위원회에서만 인정되는 표결방법임)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국112①).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112②).

의장은 표결에 부치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하여 반대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결한다(국112③).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전자투표를 실시하며(국112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국112⑨).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국113).

▶ 그림 2-10 ◀ 본회의 심의절차도



가. 개 요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53①, 국98).

나. 이송 및 공포 절차

1) 이송대상 의안

이송대상 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모든 법률안·예산안 등과 정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건의문 등이며, 정부제출 의안 중 위원회에서 폐기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정부에 통지한다(서식 1-114~118).

2)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국97). 관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안을 의결할 때 그 자구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는 의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장의 명을 받아 의사국(의안과)에서 그 의안을 정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의안에 대한 일반적인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인과정에서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발생 유무
- 소관 위원회 수정사항 및 본회의 수정 시 그 내용의 반영 여부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수정사항의 반영 여부
- 인용법률 및 조항의 적합 여부
- 띄어쓰기, 부호, 한글·한자 표기, 맞춤법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그 밖에 입법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의안과의 법률안 확인 및 교열

본회의에서 의안이 가결되면 정부에 이송하기에 앞서 그 의안의 조항·자구·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누락 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확인절차는 의안의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국(의안과)에서 주관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수행한다.

의안실무자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① 심사보고서의 붙임 서류 중에서 원안가결의 경우에는 원안의 본문부를, 수정가결의 경우에는 수정안이 반영된 최종안의 법률안 본문부를, 위원회안과 대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의안원문의 본문부를 분리한 후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여 작성한 안을, 정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정부이송확인용 의안”(2부)으로 작성하여 좌측 상단에 내용확인필란을 만든다. ② 작성된 “정부이송확인용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보내어 내용확인필란에 전문위원의 내용확인을 받는다. ③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어 전문위원의 자구확인필을 받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경우 전문위원의 내용확인 및 자구확인필을 함께 받는다.

나)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

해당 의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은 의안과에서 소관 위원회로 송부한 정부이송확인용 의안(2부)에 대하여 오자·탈자·누락 여부 등과 해당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확인 시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확인이 끝난 때에는 의안제명 좌측 상단의 내용확인필란에 담당 전문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률안인 경우에는 정부이송확인용 의안(2부)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하고, 그 밖의 의안인 경우에는 2부 중 1부는 의안과로 송부하고, 1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한 정부이송확인용 법률안(2부)에 대하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공포된 후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가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국97).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의안과의 정부이송확인용 의안에 정정·추가·삭제 등의 첨삭을 할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고 최종 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일이 이를 확인·날인한다.

이러한 확인이 끝나면 법률안 제명 우측 상단에 자구확인필란을 만들고 담당 전문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2부 중 1부는 의안과로 송

부하고 1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관한다.

라) 의장의 이송결재

의안과는 소관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당 전문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친 정부이송확인용 의안을 정리하여 최종 정부이송안을 작성한 후 의장결재를 받는다.

참고 의장의 의안정리권

본회의에서 의안을 의결할 때 그 자구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는 의결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회법」 제97조의 취지에 따라 의장(의사국 의안과)이 의안을 정리하는 것이 관례로서 인정되고 있다.

3) 법률안 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국98①). 법률안의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의안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최종 확인한 법률안을 정리하여 공문과 함께 정부(법제처)에 이송한다(서식 1-114~117).

4) 법률공포절차

가) 공포권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53①).

나) 국무회의 심의

법률안이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경우 법률공포안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다) 대통령의 서명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법령등공포5①).

라) 공포번호 부여

법제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 후 법률공포대장에 등재하며 공포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이 경우 제정·개정·폐지 법률안임을 구별하지 아니한다.

마) 관보게재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현재 법률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있으며 법률공포일은 그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11①·12).

바) 국회의장의 법률공포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회의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의장은 대통령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포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방식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국98③, 법령등공포11②)〈서식 1-121〉.

- 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로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후 5일 이내
- ② 국회의 재의에 부친 결과 전과 같이 의결하여 법률로서 확정된 때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

사) 법률의 공포일 및 효력발생시기

법률의 공포일은 그 법률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12). 판례는 공포일을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로 보고 있다(1970. 7. 21. 대판 70누76).

법률은 그 법률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53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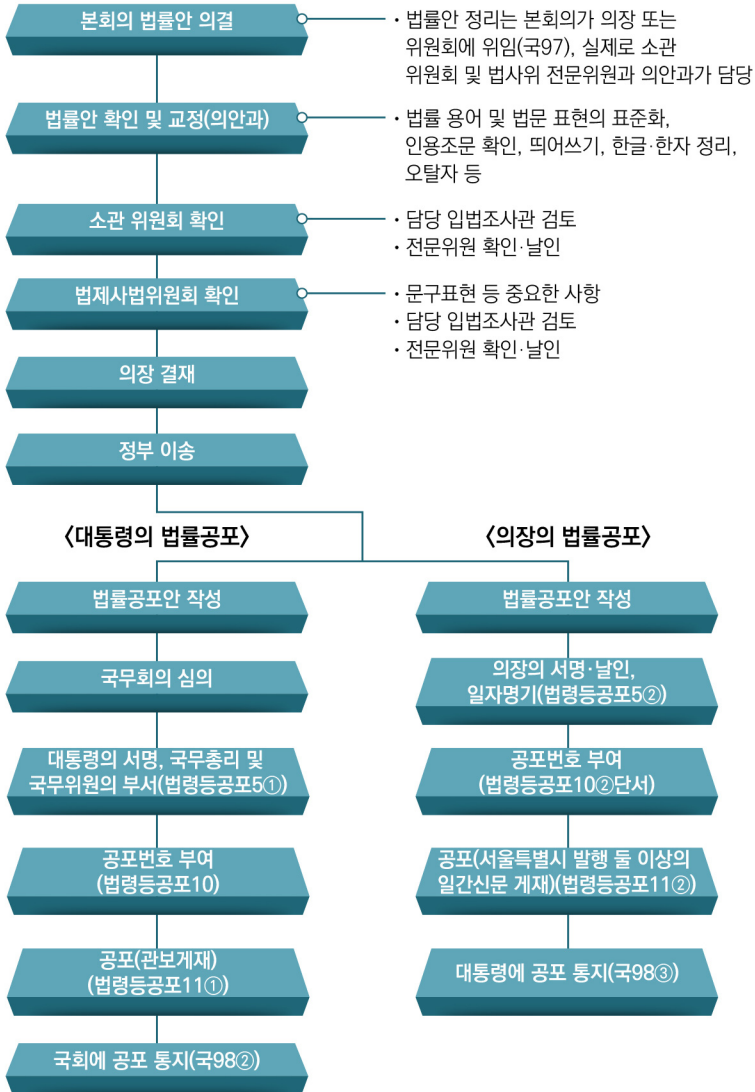
아) 법률 공포 통지 및 위원회 통지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98②). 정부로부터 공포통지서가 접수되면,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소관 위원회에 통지한다. 정부는 대통령 명의

로 의장에게 법률공포 목록 및 공포법률을 첨부한 법률 공포 통지 공문을 보내온다<서식 1-119>.

의안실무자는 공문서의 형식, 내용, 발신자, 첨부서류, 제목 등을 확인하여 공포통지서를 접수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법률의 제명에 “안”자가 붙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이미 공포가 된 법률은 법률안이 아니라 법률이기 때문이다. 의장의 결재 후 공포된 법률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에 공포 통지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시행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법률 공포 통지 공문 사본과 해당 공포법률 1부씩을 첨부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낸다<서식 1-120>.

▶ 그림 2-11 ◀ 법률안 정리·이송 및 공포 절차도



다. 관보정정

법률안이 정부(법제처)에 이송되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된 후에 명백한 오류 등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국회는 정부에 관보정정을 요구하여 관보정정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의안실무자는 관보정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보정정할 내용을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관보정정을 의뢰한다<서식 1-122~125>.

10

환부(還付)와 재의(再議)

가. 개 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헌53②③).

나. 처리절차

1) 재의요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법률안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의요구 공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서식 1-126~128>.

2) 국회 접수 및 통지

법률안이 재의요구되면 의장(의안과)은 지체 없이 소관 위원회에 법률안이 환부되었음을 알린다<서식 1-129>.

3) 본회의 심의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현행법상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과 같은 의결”이 반드시 원안의 결이나 또는 수정의결도 포함되느냐에 다소 논란이 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한 입법취지로 볼 때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의 재심의도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전과 같은 의결”이란 원안 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수정의결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례

정부로부터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심의한 사례

대별	건 명	제 안 자	의결일	재의결일	비 고
16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규택의원 외 152인	03.7.15.	03.7.31. (부 결)	
	노무현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균의원 외 147인	03.11.10.	03.12.4. (가 결)	법률확정 공 포 (03.12.6.)
17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자치 위원장	07.7.3.	07.11.23. (부 결)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 위원장	15.5.29.		투표 불성립 (15.7.6)

4) 본회의 의결 및 이송 또는 재의결과 통지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헌53④), 의장(의안과)은 이를 정부로 이송한다<서식 1-130>.

그러나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정부(법제처)에 통지한다(헌53④)〈서식 1-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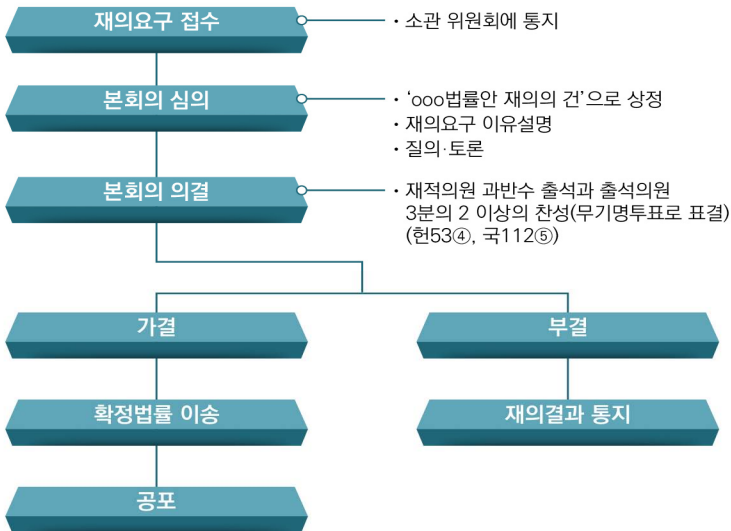
5) 공포

대통령은 재의결과 전과 같은 의결로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법률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헌53⑥, 국98③).

6) 재의요구 처리절차

재의요구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2-12>와 같다.

▶ 그림 2-12 ◀ 재의요구 처리절차도



제2장 예산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
·

제1절 예산과정

01

예산안의 편성

예산(budge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으로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헌54②).

이렇게 정부만이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의 모든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통일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회와 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도 정부예산(국가예산)의 한 부분으로 편성된다.

「국가재정법」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 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과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이 되는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 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의 심의에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제출한다.

표 2-2	예산안 편성 절차
--------------	------------------

기 간	사 항	비 고
전년도 12월 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기획재정부장관 → 각 중앙관서의 장) 	
1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국재28)
3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연도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예산안편성지침 통보(기획재정부장관 → 각 중앙관서의 장) •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예결위 보고(기획재정부장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및 주요비목의 단위·단가
4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요구서 작성(각 중앙관서의 장) 	
5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6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내부조정 -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정당설명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 대통령 보고 	
8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예산안 확정 	
9월 3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국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

02 예산안의 심의·확정

헌법 제54조는 국가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정부에 전속하게 한 반면,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전속시킴으로써 예산은 오직 국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과는 달리 대통령에 의한 공포를 효력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정부에 의한 거부제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정부는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한다.
-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한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적으로 심의·확정된다.

표 2-3 | 예산안 심의 절차

기 간	사 항	비 고
9월 3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안 국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재33)
9월~10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정부의 시정연설 	
9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심사,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10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0월~11월 3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감 세출예산 각 항 증액 · 새 비목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첨부 - 제안설명,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분과위 심사), 소위심사, 찬반토론,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p>※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 부의간주(국85의3)</p>
12월 2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회의 심의·확정 및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증액 동의 요구 - 예산안 본회의 심의·확정 - 예산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헌54②) 본회의 구두동의 후 이를 서면으로 보완

03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이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편성된 목적과 금액의 한도에서 지출을 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법률에 정하여진 세율 및 징수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되면,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다.
- ③ 각 중앙관서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을 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의 전용·이용 및 이체와 예비비 사용 그리고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진다.

표 2-4 예산의 집행 절차

기 간	사 항	비 고
전년도 12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 국무회의 - 국회수정예산의 증액 동의 - 예산공고 	
전년도 1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작성 -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 	

기 간	사 항	비 고
매분기 개시 15~20일 전 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배정 및 지출원인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중앙관서별·분기별 예산의 배정 -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재배정 -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공급 및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자금배정 - 공급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액 지출 	
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 시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지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의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사유 발생 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 	

04 결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기금의 수입·지출 실적을 포함한다)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결산의 국회심의회는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국회법」 개정(2003. 2. 4.)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결산 절차를 보면,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② 예산집행이 끝난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통지한다.

- ⑧ 결산 심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⑨ 정부의 처리결과 보고가 접수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송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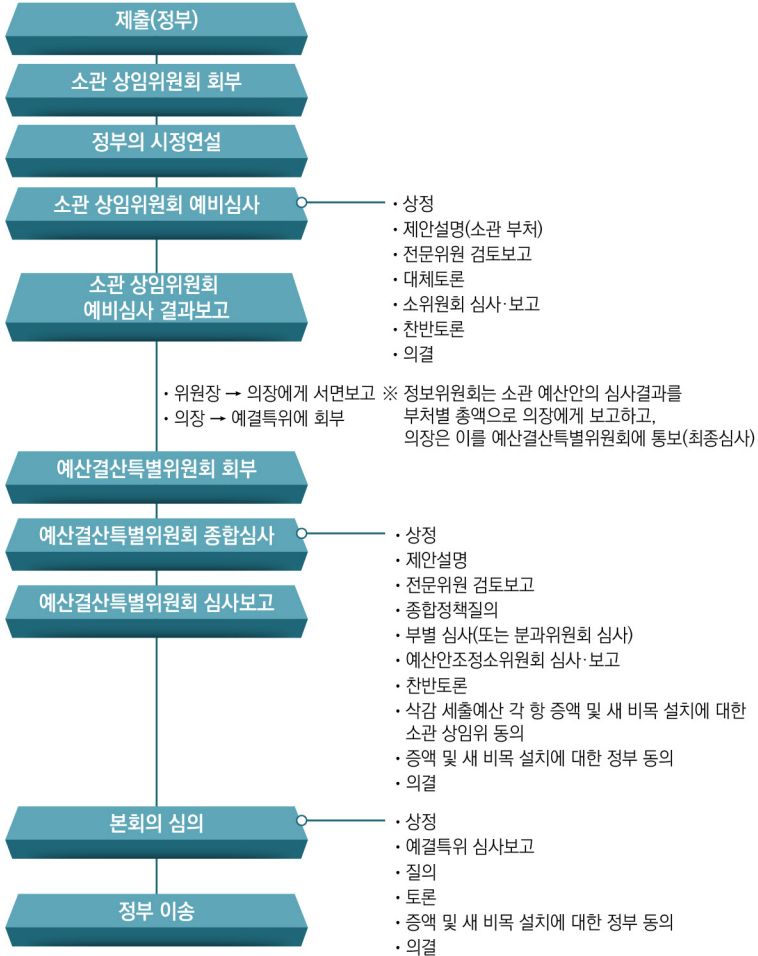
표 2-5 | 결산의 절차

기 간	사 항	비 고
전년도 11월 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의 작성 -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1월 15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일선관서 출납 정리 	
2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월 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3월~4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전체의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 	
4월 1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검사 확인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5월 2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기 간	사 항	비 고
5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의 국회 제출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헌99) 	
6월~8월 중순 8월 중순~8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심의 - 상임위원회 회부 및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기회 개회 전 (8.31.)까지 (국128의2)
12월 말 및 다음 연도 5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요구사항 이송 및 처리 - 정부에 시정 요구사항 이송 - 시정 요구사항 처리 - 처리결과 보고 	이송 후 자체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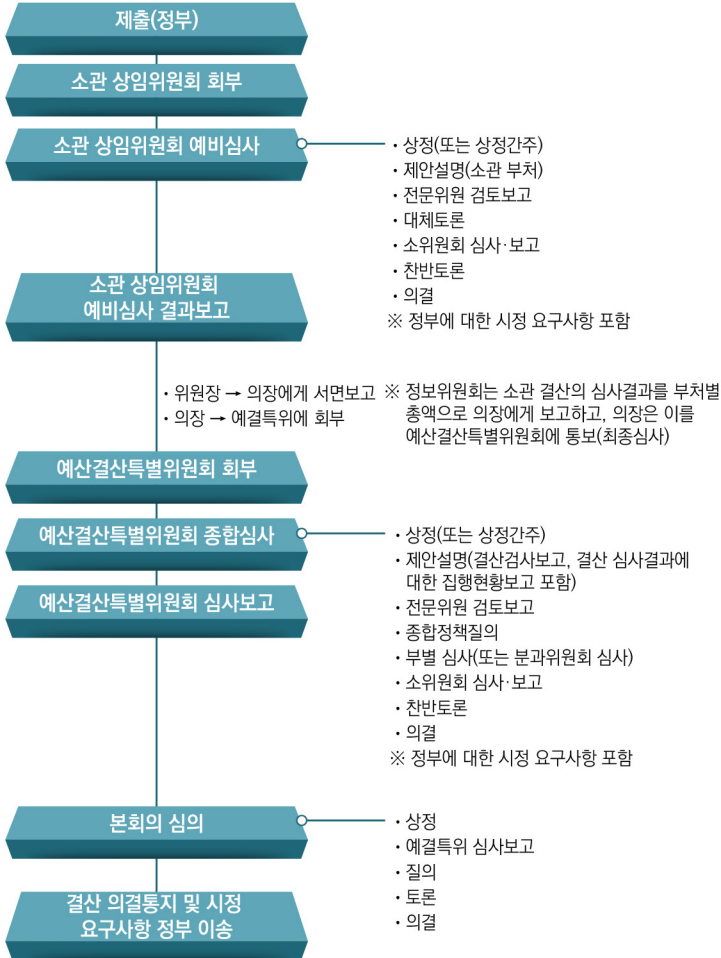
※ 예비비지출에 관한 승인 절차는 결산 절차와 동시에 진행됨.

▶ 그림 2-13 ◀ 예산안 처리절차도



※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회는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봄(2014. 5. 30. 시행).

▶ 그림 2-14 ◀ 결산 처리절차도



제2절 예산안 실무

01 접수

가. 개 요

헌법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헌54②). 그러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회 시행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시간 확보를 위하여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국가재정법」(2013. 5. 28.)에서 앞당김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국재33).

정부는 예산확정 후에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56).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그 제출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편성사유는 「국가재정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본예산의 심의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과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방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는 다음과 같다(국재89).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증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예산안의 접수”란 제출된 예산안을 의장이 수리하는 절차로서 예산안의 제출공문·내용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의안실무자(의사국 의안과)는 예산안의 내용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헌법과 「국가재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접수 시 확인사항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제출공문과 예산안 및 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출공문

의안실무자는 예산안 제출공문을 접수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서식 2-1>.

-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한(본예산의 경우 9월 3일)의 준수 여부
- 공문 및 예산안 첨부서류에 인용된 예산 관련 규정의 정확성 여부
- 대통령관인 날인 및 서명 여부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기획재정부장관)의 부서 여부

2) 예산안의 내용

예산안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구성되어 있다(국재19).

가)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국재2).
- 법조문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총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을 통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만 변경이 가능하다.

나) 세입세출예산

- 예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세부사항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할 때에는 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며 회계별로 독립하여 운용된다.
-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데,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국재21).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

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국재22①).

다) 계속비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국재23①).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국재23②③).

라)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국재24①).
-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국재24②).
- 기획재정부장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국재24③).

마) 국고채무부담행위

-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국재25①).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것인 만큼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국재25③).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연도 중에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상환연도에는 별도로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3) 예산안의 첨부서류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는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가지 종류가 있다. 정부는 예산안 첨부서류를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보통 9종의 책자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고 있다.

가)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예산안을 보완하기 위한 설명자료로 세항(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요약·정리되어 있다. 소관 부처의 예산을 각 세항단위로 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조직별 정원 및 봉급, 세항별 예산액의 전년도 대비 증감,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수록하며 심의의 편의상 통상 5권으로 분철(위원회별)한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국가재정법」 제34조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계속비 명세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추규모 명시 대상 사업,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 명세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및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가 포함되어 있다(국재34).

다) 성과계획서

「국가재정법」 제정(2006. 10. 4.)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적 및 그에 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재정운용 방식을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의 도입으로 각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각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국재8), 정부는 이를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다(국재34).

라) 성인지 예산서

「국가재정법」 제정(2006. 10. 4.)에 따라 정부는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국재26·34).

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국가재정법」 개정(2021. 6. 15.)에 따라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산부터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재27·34).

바)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인 조세감면·비과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정책적 감면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을 말하며,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서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課稅移延)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142의2), 조세감면 등에 따른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재34).

사)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규모·이유 및 의견
 독립기관의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재34).

그런데 1995년도 예산안까지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삭감이유 의견을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합철하여 제출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삭감내역을 대부분 기준단가 및 사업량 조정이라고만 표시하고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제시 부분은 이견없음으로 정리하여 형식적인 제출을 함으로써 원래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기관 예산안 심사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에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으로(국23, 법원조직법 82, 감사원법 2), 독립기관의 예산감액 내역 및 의견은 예산과목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감액내역 및 의견을 별책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1996년도 예산안부터는 별책으로 제출하고 있다.

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지출이란,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이나 양여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의미하며, 국유재산특례지출의 관리와 통제를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포함되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 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국유재산특례제한법 10),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재34).

자) 예산안 개요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4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시부터 예산안의 전체모습, 재정운용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예산안 개요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

차) 예산안편성지침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하는 예산안편성지침은 다음 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세부 작성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3) 제출부수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의안과와 협의하여 예산안과 첨부서류의 인쇄물을 일정 부수 제출하여야 한다.

표 2-6 예산안 첨부서류의 종류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법정서류	실제 제출서류 형식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나) 예산안 첨부서류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가)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1-V)
3.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나) 예산안 첨부서류 -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4.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나) 예산안 첨부서류 - 계속비 명세서
5.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나) 예산안 첨부서류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6.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나) 예산안 첨부서류
7.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나) 예산안 첨부서류
8.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나) 예산안 첨부서류 -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명시 대상 사업
9.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나) 예산안 첨부서류 차) 예산안편성지침
10.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해당 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나) 예산안 첨부서류 - 국유재산 명세서
11. 성과계획서	다) 성과계획서
12. 성인지 예산서	라) 성인지 예산서
1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4.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바)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법정서류	실제 제출서류 형식
15.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사)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규모·이유 및 의견
16.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나) 예산안 첨부서류 -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8.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나) 예산안 첨부서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19.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나) 예산안 첨부서류 - 지자체 보조사업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 「예산안 각목명세서」는 예산안 심의의 참고를 위하여 소관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임.

참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 관련 자료

정부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시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국재7).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 관련 자료(「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사회기반

참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 관련 자료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재9의2).

의안실무자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그 첨부서류와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e-의안시스템에 “기타 안건”으로 등록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한다.

다. 의장결재와 본회의 보고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안실무자는 이를 e-의안시스템에 등록하고 예산안 요지서와 회부공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으며, 예산안 제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02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와 정부의 시정연설

가. 개 요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국84④).

총전의 「국회법」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안의 위원회 회부가 늦어져 위원회 심사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제14대국회의 「국회법」 개정(1994. 6. 28.)에서 시정연설과 관계없이 예산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기간을 그만큼 확대하였다.

나. 위원회 회부절차

1) 예산안 회부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그 첨부서류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서식 2-2>.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는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간주되므로 의안실무자는 회부공문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국84④)<서식 2-3>.

2) 회부통지

예산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서식 2-4>.

3) 예비심사기간 지정

의장이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예비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84⑥).

종전에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기간의 지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함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부 후에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다<서식 2-8>.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비심사기간 지정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확정되면 의장에게 그 심사일정을 보고한다<서식 2-7>.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간주되므로 정보위원회로 회부할 때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심사기간을 지정한다<서식 2-9>.

예비심사기간이 지정된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예비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서식 2-12>, 의장은 필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를 연기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서식 2-13>.

다. 정부의 시정연설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각 부문별 역점시책의 운용방향 등에 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되는데

이는 예산안의 심사절차상 필수요건이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경우도 있다.

03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가. 개 요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절차와 같이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결하게 된다(국58).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앞선 예비심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예비심사절차

1) 상 정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면 위원회 운영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상정한다.

2) 제안설명

예산안이 상정되면 소관 부처의 장이 제안이유와 예산안의 개요, 역점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소관 부처의 제안설명 직후에 하는데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에 기초자료가 되며 예산안의 개요, 배경, 문제점 지적과 개선 또는 시정방향 등을 제시한다. 대개의 경우 보고내용 중 검토의견만을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한다.

4) 대체토론

상정된 예산안의 내용과 정부시책 등에 대하여 소관 부처의 장과 질의·답변을 하며, 정부위원인 차관, 차장, 실·국장이 대신 답변하기도 한다.

5) 소위원회 심사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6) 찬반토론 및 표결

소위원회안에 대하여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찬반토론 및 표결을 행하게 되나 대체로 소위원회에서 이견조정을 거쳐 채택한 안이므로 전체위원회에서 찬반토론·표결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7)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제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예비심사보고서에는 심사경과, 주요 지적사항, 심사결과, 소수의견, 부대의견 등을 기재하는데 작성요령 및 기재사항은 <서식 2-18>와 같다.

예비심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는 소관 부처의 예산안 조정내역(예산액의 증감액 내용을 수치로 표시)은 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서식대로 작성한다.

예비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함과 동시에 의장에게 보고한다<서식 2-15, 17, 18>.

다. 정보위원회 심사특례

1) 개 요

정보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국84④).

2) 심사절차

정보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그 절차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동일하다.

3) 심사특례

정보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사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첫째,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사결과는 세부항목별로 보고되나 정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되고, 의장은 이를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선 예비심사의 성격을 가지나, 정보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보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가감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수정을 하지 못한다. 「국회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예산안·결산 심사기간 지정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일반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예결위 회부 전”을 기준으로 예산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전”을 기준으로 정보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사기간을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최종심사권을 가지는 정보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4) 심사보고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II급비밀로 작성되며, 심사보고서 2부(결재 및 보관용 1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부용 1부)만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서식 2-16>.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가. 구 성

종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였으나, 「국회법」 개정(2000. 2. 16.)으로 상설화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규정인 「국회법」 제44조제2항·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한다(국45).

나. 회 부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또는 지정된 예비심사기간이 종료되면 그때까지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한다<서식 2-19>. 정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1부를 첨부하여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서식 2-21>.

상임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가 지정된 예비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비심사보고서를 추후에 별도로 송부한다<서식 2-20>. 별도로 송부된 예비심사보고서의 심사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반영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조정소위원회 심사완료 전까지 송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시 첨부된 예비심사보고서는 「국회법」이 요구하는 정식의 절차를 통하여 전달된 것인 반면, 예산안 회부 후 별도로 송부되는 예비심사보고서는 정식의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적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함에 있어서 그 기속력에 차이를 두어 지가 있다.

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가. 개 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절차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국84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국84의3), 통상적으로 예산안의 상정 전에 개최하고 있다.

나. 심사절차

1) 상 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예산안을 상정한다.

2)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대체로 예산안이 상정된 첫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신년도 경제운용시책 및 재정운용의 방향과 이에 따른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정부의 제안설명 직후에 행하여지는데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제1차적인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며 예산안의 개요, 배경, 문제점 지적과 개선 또는 시정방향 등을 제시한다. 실제에 있어 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와 같이 보고내용 중 검토의견만을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함이 보통이다.

4) 종합정책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정책질의는 전체 국무위원을 대상으

로 정부의 시책방향, 재정·경제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방향 등 국정전반에 관하여 본회의의 대정부질문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5) 부별 심사

부별 심사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와 달리 2~3개 부처씩 구분하여 위원회별 또는 특정분야별로 행하는 질의방식이다. 종전에는 대상부처를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심사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비경제부처별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6) 분과위원회 심사

제6대국회부터 제10대국회까지는 예산안과 결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하였으나, 「국회법」 개정(1981. 1. 29.)으로 제11대국회 전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담 심사기관으로 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1대국회 후반기 「국회법」 개정(1983. 11. 17.)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이 부활된 이후에도 분과위원회 제도는 일정 기간 존속되었다.

그동안 분과위원회의 실제 운영은 예산안 심사에 한하여 제11대국회와 제12대국회기간 중에 운영되었으며, 제13대국회부터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제10대국회 이전에 질의의 한 형태로서 운영하였던 부별 심사방식을 채택하였다.

분과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를 기준으로 구성·운영하였는데, 분과위원회 수와 그 소관 사항,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 선임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그 구성시기는 대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종결되는 날이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소위원회는 일정한 예산안 조정원칙을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 정책질의, 부별 심사 시의 수정의견 등을 기초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여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의 삭감·증액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

소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결과 그리고 수정내용을 보고하며, 위원들에게는 소위원회의 예산안수정안을 유인·배포한다. 소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겸하는 것이 관례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경과는 통상적으로 여당 간사가 보고한다.

8)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2003. 2. 4.)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

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서식 2-39~42).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부터 72 시간 이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84⑤).

9) 찬반토론

소위원회의 수정안(또는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행한다.

10) 정부의 예산증액 동의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삭감할 수는 있으나,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정부의 동의 없이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헌57)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표결하기 전에 예산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구두동의를 받는다.

11) 표 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위원회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기도 한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서식 2-22, 23>.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예산안 수정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06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가. 개 요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개정에서는 예산안의 헌법(54②)상 의결기한(12. 2.)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국회법」(84의2①, 84의4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7의2①)상 의결기한(12. 2.)이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함)과 세입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예산안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시행으로 예산안등에 대한 국회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예산안등의 의결기한 전에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상 예산안 제출기한(회계연

도 개시 90일 전)보다 앞당겨 「국가재정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3. 5. 28. 개정)에서 예산안등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국85의3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포함)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서식 2-25~27).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85의3②)(서식 2-24).

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국85의3④)(서식 2-3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는 예산안 제출시기에 즈음하여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국85의3④). 한편, 위원회가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서식 2-30〉 그 대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국85의3⑤).

의안실무자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된 법률안이 접수되면, 정부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견을 조회하며〈서식 2-32, 33〉,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과 법률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고, 소관 위원회에 통보한다〈서식 2-34〉.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위원회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포함)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12월 1일)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법률안 중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85의3③)〈서식 2-28, 29〉.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입안하면 그 대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므로(국85의3⑤), 대안반영폐

기된 동일 제명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법률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사례

의안명	상임위 회부	예결위 회부	본회의 자동부의	본회의 의결	비고
2015년도 예산안등	14.9.23.	14.11.6.	14.12.1.	14.12.2.	•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본회의 수정안 가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4건	14.9.23.		14.12.1.	14.12.2.	• 동일제명 부수 법률안 중 자동부의 대상으로 선정 • 일부 본회의 수정안 가결
2016년도 예산안등	15.9.11.	15.10.28.	15.12.1.	15.12.3.	•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본회의 수정안 가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15.9.14.		15.12.1.	15.12.2 15.12.3	• 일부 본회의 수정안 가결
2017년도 예산안등	16.9.5.	16.10.26.	16.12.1.	16.12.3.	•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본회의 수정안 가결

사 례

의안명	상임위 회부	예결위 회부	본회의 자동부의 의	본회의 의결	비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1건	16.9.5.		16.12.1.	16.12.2.	• 일부 본회의 수정안 가결
2018년도 예산안등	17.9.1.	17.11.6.	17.12.2.	17.12.6.	•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본회의 수정안 가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	17.9.4.		17.12.1.	17.12.8.	• 일부 본회의 수정안 가결
2019년도 예산안등	18.9.4.	18.11.5.	18.12.1.	18.12.8.	•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본회의 수정안 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8건	18.9.3.		18.12.1.	18.12.8.	• 일부 본회의 수정안 가결
2020년도 예산안등	19.9.4.	19.10.28.	19.12.1.	19.12.10.	•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본회의 수정안 가결

사례

의안명	상임위 회부	예결위 회부	본회의 자동부 의	본회의 의결	비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정부제출)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0건	19.8.30.		19.12.1.	19.12.10. 19.12.23 19.12.27.	• 일부 본회의 수정안 가결

07

본회의 심의

가. 개 요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국84②).

나. 심의절차

1) 상 정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면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처리일정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감안하여 야 하고, 「국회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수정안(서식 2-35~ 38)이 제출된 경우에는 예산안과 함께 상정한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이 상정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안건의 개요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3) 질의·토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찬반토론을 행한다.

4)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개정에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의결시한(12. 2.) 준수를 위하여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자동부의 및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무제한토론에 의하여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 관련 규정의 적용을 12월 1일까지로 한정하고,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을 12월 1일 밤12시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12월 2일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국106의2⑩).

5) 예산증액 동의 및 의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57). 통상적으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정부를 대표하여 본회의에 출석 중인 국무총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고 의결한다.

08 정부이송

가. 개 요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예산으로 확정되고 의장은 정부에 이를 이송한다.

나. 이송절차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된 경우, 최종 확정된 예산 및 수정사항(본회의 수정안 또는 예결위 심사보고에 별첨된 수정안을 말하며, 부대의견이 있는 경우 부대의견도 포함한다)을 정부에 이송한다<서식 2-43>.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긴급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인을 추후 진행한다.

한편,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함에 있어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정부대표자로부터 구두동의를 받는다. 정부는 동의 사실을 추후 문서로도 제출하고 있다<서식 2-44>.

제3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실무

01 결산의 의의

“결산”이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국84 ②)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은 사후승인의 의미로서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02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의의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55②, 국재52). 이를 예비비지출 승인이라 하며 결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재52④).

예비비는 그 성격상 구체적 지출항목 없이 총액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출의 내용에 대하여 결산과는 별도로 국민대표기관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이다.

예비비지출 승인은 결산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국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도 예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다.

03 접수

가. 개요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국재61),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재52).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처리되고 있으나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집행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의 처리절차도 유사하다.

나. 접수 시 확인사항

1) 제출공문

의안실무자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출공문 접수 시〈서식 2-55, 60〉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정부의 결산제출시한(5월 31일)의 준수 여부
- 대통령관인 날인 및 서명 여부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기획재정부장관)의 부서 여부

2) 제출서류

가) 결산보고서

결산보고서는 다음의 서류로 구성되며,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국가회계법 14, 15의2).

- ① 결산 개요
- ②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한다)
- ③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 ④ 성과보고서

나) 결산보고서 첨부서류

결산 등의 제출 시 요구되는 첨부서류 및 근거규정은 <표 2-7>과 같고, 결산의 실제 제출서류는 <표 2-8>과 같다.

표 2-7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법정서류 및 근거규정

구 분	법 정 서 류	근 거 규 정
1. 결산	가. 결산 개요 나. 세입세출결산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3)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5) 이월명세서 6)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7)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8)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9)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10) 예비금 사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12)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3)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4)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5) 자원조성실적표 16) 성인지 기금결산서 17)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18)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설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법 14 • 국가회계법 14, 15의2, 국가회계법 시행령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20) : 세입세출결산 첨부 서류 - 1) ~ 14) :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은 제외 - 15) ~ 18) : 기금의 수입지출결산만 해당

구 분	법 정 서 류	근 거 규 정
	19) 통합재정수지표 20)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입금사용명세서 다.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 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운용보고서 4)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 운용보고서 라.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법 14, 15의2, 국가회계법 시행령 5 - 1) ~ 4) : 재무제표 첨부서류 • 국가회계법 14
2. 예비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55, 국재52

표 2-8 결산의 실제 제출서류 현황

1. 국가결산보고서 - 결산 개요 -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 포함)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별책 :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
2.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3.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첨부서류
4. 국가채무관리보고서
5. 채권현재액총계산서

6.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7.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참고자료
8. 정부기업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재무제표
9. 기금 재무제표(종합, I~IV)
10. 성인지 결산서
11.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12. 결산개요(통계편)

다) 제출부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관련 법정제출서류의 제출부수는 의안과와 협의하여 정한다.

2012회계연도 결산까지는 550부, 2017회계연도 결산까지는 530부의 법정제출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과다 인쇄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종이 법정제출서류와 함께 편집·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글파일 형태(USB)로 모든 법정제출서류를 제공함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총부수를 축소하고,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는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에 제공하는 결산에 한하여 소속 상임위원회 자료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결산검사보고, 기금운용평가보고서 및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헌99, 감사원법 41). 보고시기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관례적으로 정부가 결산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재82).

의안 실무자는 정부의 결산 제출 시 결산검사보고, 기금운용평가보고서 및 기금존치평가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원 및 정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각각 별도의 공문으로 접수하고, e-의안시스템에 '기타 안건'으로 등록한 후, 상임위원회(기금 관련 평가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한다.

다. 의장결재와 본회의 보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면 e-의안시스템에 등록하고 요지서와 회부공문을 작성하여 의장결재를 받은 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안 본회의 보고 참조).

04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가. 개 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면 예산안과 동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국84①). 다만,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안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국84④).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를 사용한 부처(배정 후에 사용하지 않은 부처 포함)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에만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결산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사례

예비비 배정 미사용 부처 예비심사 사례

의안명	상임위 예비심사	
	위원회	예비비지출 내용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법제사법	전액 불용된 법무부 소관 교도작업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예비심사함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산업통상자원	전액 불용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예비심사함

나. 회부절차

1) 회부공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회부공문은 예산안과 동일하게 정보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부 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첨부서류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한다.

2) 회부통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서식 2-4>.

3) 심사기간 지정

예산안의 심사기간 지정에 준한다. 종전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실시 전까지 결산예비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2003. 2. 4.)으로 2004년도부터는 결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국128의2).

다. 정부조직 개편과 회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으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경우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 즉, 2007회계연도 결산은 정부조직 개편 전 2007년도 12월

말의 정부조직에 따라 작성되어 제출되기 때문에 ① 부처 전체가 1개 부처로 흡수(舊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되거나 ② 부처 전체가 여러 부처로 분리·흡수(舊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되거나 ③ 부처의 업무 일부가 분리된 후 존속(舊 여성가족부 업무 중 가족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분리된 후 舊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존속)하는 경우 결산의 예비심사를 어떻게 분장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④ 「국회법」 개정(2010. 5. 28.)에 따라 특임장관실의 소관을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한 경우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중 특임장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두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담당해야 하는지 문제되었다.

결산은 정부의 예산 집행을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집행의 책임을 해제시키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결산의 심사 결과 부당한 지출이나 행정의 비능률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예산에 대한 환류이며 정책평가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다음 연도 예산안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결산 예비심사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을 「국회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소관으로 하는 부처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별)로 예비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1개 부처의 결산에 대하여 업무별(사업별)로 나누어 수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경우 위원회 간에 중복심사를 하거나 심사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협의하여 사전에 조율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7회계연도 및 2009회계연도 결산의 예비심사는 사항별

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다.

- ① 2007회계연도 결산 중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된 舊 국가청소년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 소관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가 아닌 회부 당시 청소년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으로 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다.
- ② 2007회계연도 결산 중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 분리·흡수된 舊 해양수산부 소관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흡수한 업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를 소관으로 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흡수한 업무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소관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하였다.
- ③ 2007회계연도 결산 중 舊 여성가족부 소관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로 분리된 가족사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으로 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고, 가족사무를 제외한 舊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다.
- ④ 「국회법」 개정(2010. 5. 28.)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변경된 특임장관실 소관의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2009회계연도 결산 작성 기준일(2009년 12월 말)에 특임장관실을 소관으로 한 정무위원회가 아닌 회부 당시 특임장관실을 소관으로 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다.

가. 개 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산안에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선 예비심사의 성격을 가진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절차 등도 예산안의 심사절차와 매우 유사하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기술한다.

나. 예비심사절차

1) 상 정

「국회법」 개정(2012. 5. 25.)에 따라 결산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여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국59),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59의2).

2)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참조〉 제2절 예산안 실무 참조

3) 소위원회 심사

결산 관련 의안에 대하여 이전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국회법」 개정(2003. 2. 4.)으로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결산시정 요구제도가 도입되었다. 200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포함)부터 일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4) 찬반토론 및 표결

〈참조〉 제2절 예산안 실무 참조

5)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제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의안별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서식 2-15, 17, 18).

위원회는 결산예비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서식대로 결산예비심사보고서에 “결산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작성한다.

참고 결산시정 요구사항 작성 예시

□ 부처명

시 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 요지		시정 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관련 사업명	○○회계-○○사업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부
	지적 사항		
	시정 요구 사항		

정보위원회의 결산심사보고서〈서식 2-16〉는 II급비밀로 작성되므로 2부(결재 및 보존용 1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부용 1부)만 첨부한다.

다. 정보위원회 심사특례

〈참조〉 제2절 예산안 실무 참조

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또는 지정된 예비심사기간이 종료되면 그때까지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서식 2-19〉. 그 밖에 회부절차는 예산안 회부절차에 준한다.

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가. 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절차는 예산안에서와 같이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국84③).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개정(2011. 5. 19.)에 따라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되었고, 예산안과 동일하게 결산의 상정 전에 개최하고 있다. 다만,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84의3).

나. 심사절차

1) 상 정

「국회법」 개정(2012. 5. 25.)에 따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여야 상정할 수 있다(국59).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59의2).

2)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대체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상정된 첫 회의

에서 실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운용의 성과와 재정운용실적 및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감사원장이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보고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제2절 예산안 실무 참조

4) 종합정책질의

〈참조〉 제2절 예산안 실무 참조

5)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으나, 2002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경제·비경제부처별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다.

6) 소위원회 심사

결산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국회법」 개정(2003. 2. 4.)으로 결산시정 요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2002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있다.

7) 찬반토론·표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기록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성격상 수정안이 나올 수 없으며, 원안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물어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시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의결한다.

8) 심사보고서 작성·제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의안별로 심사보고서(결산시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서식 2-22, 23).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08 본회의 심의

가. 개 요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나. 심의절차

1) 상 정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상정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안건의 개요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이를 토대로 심의를 하게 된다.

3) 질의·토론

생략가능

〈참조〉 제2절 예산안 실무 참조

4) 의 결

〈참조〉 제2절 예산안 실무 참조

다. 일부 부처를 제외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일부 부처의 결산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은 각각 독립되어 있어서 의안의 심의과정에서 편의상 병합심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의결 시에 하나의 의안을 분리하거나 여러 개의 의안을 병합하여 의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관례이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독립된 의안으로서 결산을 의결함에 있어서 특정 부처를 제외하고 의결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안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원칙에 반하는 의결형태이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결산 의결에서는 일부가결·일부부결하거나 일부가결·일부계류의 의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산을 의결할 때에 특정 부처의 예산액 사용이 부적절하다면 결산의 전체를 불승인하거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처에 대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의사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회의진행이라고 하겠다.

제14대국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일부 부처를 제외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사례는 없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의 일부를 제외하고 의결한 사례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 단계 심사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한 심사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의사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장이 결산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도 위원회의 소관 부처별로 결산을 분리하여 회부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이라는 의안 전체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주의 원칙상 결산의 특정 부분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이다. 즉, 결산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결산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에 한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관 부처의 일부를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예비심사의 기본속성에 반하지는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사례

일부 부처의 결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미로된 사례

대별	회계 연도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회부일 (의결일)	비고
		위원회	보고일	주요내용		
14대	1993	노동환경	94.9.26.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미로	9.29. (11.30.)	심사기간지정 (9.26.까지)
15대	1998	법제사법	99.9.27.	감사원 및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미로	9.29. (11.19.)	심사기간지정 (9.27.까지)
17대	2003	교육	-	소위 미구성으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심사미로	9.14. (12.6.)	심사기간지정 (9.14.까지)
	2006	문화관광	07.8.30.	국정홍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심사미로 (기자실 통폐합 관련)	8.27. (9.5.)	심사기간지정 (8.27.까지)
18대	2009	국토해양	-	결산, 예비비 심사미로 (4대강 사업 관련)	9.13. (10.1.)	심사기간지정 (9.13.까지)

09 정부통지 및 시정요구사항 이송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통지한다<서식 2-56, 61>. 이 경우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정부에 이송한다<서식 2-57>.

10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송부

정부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한다(국84②). 실제로 정부가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송부하는 데는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처리결과가 접수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한다<서식 2-58, 59>.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는 보통 12월 말경 한 차례 이루어졌는데,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에서 정부가 연말에 제출하는 처리결과 보고 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다음 연도 결산국회 시 그 후속조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부터는 12월 말에 한 차례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 그 다음 회계연도 결산 국회제출시기에 그 후속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제4절 기금운용계획안

01 기금제도의 개관

가. 기금의 의의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국재5).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정부재정활동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기금과 예산을 비교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 기금과 예산의 비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설치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일반적 재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보유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 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목적에 위하여 특정자금을 운용
자원조달 및 운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 과 무상급부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사업수행
확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조정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 통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금융성기금은 30% 초과) 변경 시 국회의결 필요
결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나. 기금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기금은 예산보다 큰 규모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종전에는 정부의 자체 운용계획에 의하여 확정·운용됨에 따라 그 운용의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법」 개정(2001. 12. 31.)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국84의2).

이후 기금결산은 「국가재정법」 개정(2008. 12. 31.)과 「국회법」 개정(2010. 5. 28.)에 따라 결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결산으로 통합되어 제출·심사되고 있다.

02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국재68). 또한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금융성기금은 10분의 3)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재70).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국채70③).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금융성기금은 10분의 3) 이하인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절차는 예산안의 심의절차를 준용(국84의2)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절차는 <표 2-10>과 같다.

표 2-10 기금운용계획안 절차

기 간	사 항	비 고
1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기 간	사 항	비 고
3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을 기금관리주체에 통보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5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6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 	
8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음 	
9월 3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12월 2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나. 기금운용계획안 실무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의사국 의안과)에 제출한다<서식 2-45>.

1) 제출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운용총칙

- ① 해당 연도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으로 그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②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포함) 및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한다.

나) 자금운용계획

- 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한다.
- ②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한다.
- ③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되, 주요항목은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은 세항·목으로 구분한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2-46>.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는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는 기금운용의 전체모습, 기금운용의 중점방향 및 분야별 역점사업 등이 기록된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도 함께 제출되고 있다.

표 2-11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현황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명	실제제출서류 형식
1. 기금조성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
4. 성과계획서	중앙관서별 성과계획서로 같음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명	실제제출서류 형식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8.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 '기금운용계획안 각목명세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참고를 위하여 소관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임.

2) 예산안 처리절차의 준용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예산안의 심의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위원회 회부, 소관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및 정부이송의 절차는 제2절 예산안 실무를 참조한다.

다만, 「국회법」 개정(2010. 3. 12.)으로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 심사의 내실을 기하였다. 이 경우 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국84의2③) <서식 2-47, 48, 49>.

사례

기금사업 수행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사례

대별	의안명	기금명	의견제시 위원회	주요내용
18대	2012년도 기금운용계 획안	국유재산관리기 금운용계획안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법무시설조정 사업 증액 필요
		수산발전기금운 용계획안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 재해로 인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 상시편성 필요

의안실무자는 운용·관리 부처와 사업 수행 부처가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지정하여 회부한다.

사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련위원회를 지정한 사례

대별	의안명	소관위 (회부일)	관련위 (회부일)	관련위 의견 제시
18대	2009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09. 3. 31)	국토해양 위원회 (09. 4. 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지출계획 변경 관련 의견 제시

제5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01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 의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 권한을 획득하며, 사용·수익 권한 행사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을 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긴급하고 시급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앞당겨 제공하고, 기존 예산중심의 재정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금융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한 시설사업은 완공 후 국가가 20년 이상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08. 12. 31.)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예산안

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0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제출·심의 절차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의2①②).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의3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안의 심의절차는 예산안의 심의절차를 준용(국84의4)하고 있으며,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 제출·심의 절차는 <표 2-12>와 같다.

표 2-1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제출·심의 절차
---------------	------------------------------------

기 간	사 항	비 고
1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연도 BTL 대상사업 발굴(해당 주무부처) 	
2월~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 실시(해당 주무관청) 	
4월 3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L 한도액안 작성지침 통보(기획재정부 → 해당 주무부처) 	
4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검토 의뢰(해당 주무관청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검토의견 송부(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해당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6월 초·중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L 한도액 요구서 제출 (해당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7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BTL 한도액안 작성 	
8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심의 및 BTL 한도액안 확정 	
9월 3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L 한도액안 국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12월 2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의사국 의안과)에 제출한다(서식 2-50).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안은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안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84조의4에 따라 예산안의 심의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안의 위원회 회부, 소관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및 정부이송의 절차는 제2절 예산안 실무를 참조한다.

제3장 헌법개정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선출안, 의원징계, 의원자격심사, 중요동의, 인사청문요청안,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
·
·

제1절 헌법개정안

01 헌법개정안의 의의

“헌법개정안”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 요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거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안한 것을 말한다(헌128~130).

02

헌법개정의 절차

가. 헌법개정안의 제안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제안할 수 있다(헌128①)〈서식 3-1~3〉. 헌법개정을 위하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라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명의로 제안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그 제명을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나. 헌법개정안의 공고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헌129).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한 후 바로 정부에 공고를 요청한다(서식 3-4).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먼저 정부에 공고를 요청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한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공고를 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공고기간을 둔 것은 국민이 헌법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민의 의사형성에 필요한 기간을 줌으로써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할 때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하므로(헌130①), 결국 공고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 전일까지가 된다.

헌법개정안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며 그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법령등공포2·3).

헌법개정안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법령등공포11①) <서식 3-5, 6>.

다. 국회의 의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130①).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일정은 헌법상 의결기간의 범위에서 국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국회가 스스로 정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일반 의안과는 달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112④).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130①). 헌법개정안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정의결할 수 없고 전체로서 가·부만을 결정한다.

헌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일반 의안의 심의절차와 같이 제안자의 취지 설명, 질의, 찬반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표결에 들어간다.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므로 투표용지는 의원서명란과 가부란으로 구별되어 있다. 의원은 의원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받아 가부란에 “가(可)” 또는 “부(否)”를 표시하는 방식

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국112⑨).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여〈서식 3-7〉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그 헌법개정안은 부결되고 의장은 이를 정부에 통보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 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헌130②③).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고(국민투표법 49), 국회에 이를 통지한다〈서식 3-8, 9〉.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이 이송되어 오면 바로 국민투표절차에 들어간다.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한다(국민투표법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헌법개정안(국민투표일)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국민투표법 22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고, 이를 매 세대에 투표일 전 4일까지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국민투표법 23①·24①).

마. 헌법개정 공포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헌130③, 국민투표법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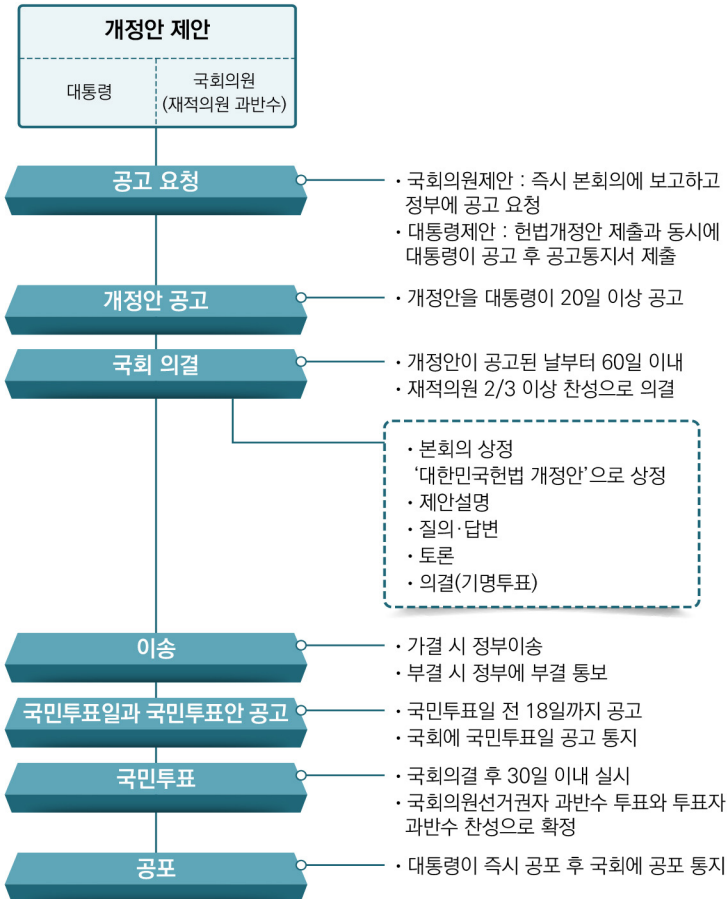
헌법개정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며, 그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법령등공포4).

헌법개정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법령등공포11①)〈서식 3-10, 11〉.

바. 헌법개정안 처리절차

헌법개정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2-15>와 같다.

▶ 그림 2-15 ◀ 헌법개정안 처리절차도



제2절 동의안

01 동의안의 의의

“동의안”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이는 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의 국정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사전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국채모집,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헌58),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헌60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헌60②)에 대한 동의권 및 국무총리 임명동의 등 인사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임명동의안은 종전에는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서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으나 「국회법」 개정(2000.2.16.) 및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6.23.)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청문을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국§46의3·65의2, 인청).

동의안에는 이외에도 국회에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임 또는 사직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도 포함된다(예 :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의원 사직 등). 다만, 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에 대하여는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41⑤·45⑥·135).

동의안은 그 성격상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고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나, 회의의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동의안의 제출자인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02 동의안의 종류

동의안은 그 심사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동의안

1) 일반동의안

- ① 국채의 모집,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동의안, 국가보증채무동의안(헌58, 국재92①)
- ②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안(헌60①)

- ③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국내주류에 대한 동의안(헌60②)
- ④ 일반사면동의안(헌79②)
- ⑤ 국가나 국민에게 증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안(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③)

2) 임명동의안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헌86①·98②·104①②·111④)

〈참조〉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첨부 서류는 제11절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첨부서류” 참조

나. 위원회의 심사 없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동의안

인사에 관한 안건은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① 의원체포·구금동의안(헌44①, 국26)
- ②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의 건 및 의원 사직의 건(국19·41⑤·45⑥·135)
- ③ 월수임명동의안(군인사법 17의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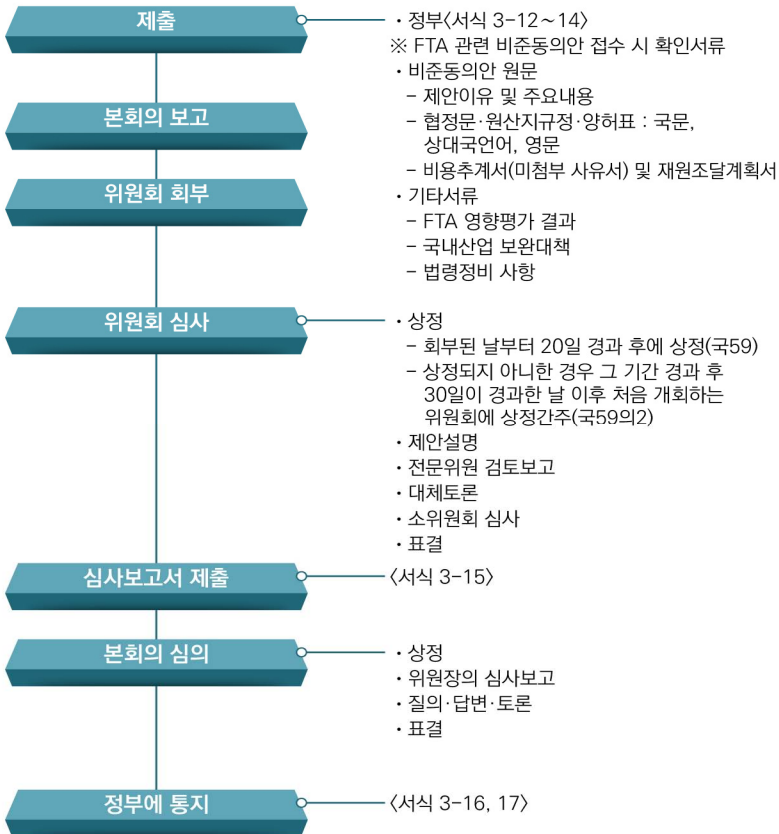
※ 월수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03 동의안 처리절차

가. 일반동의안

일반동의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16 ◀ 일반동의안 처리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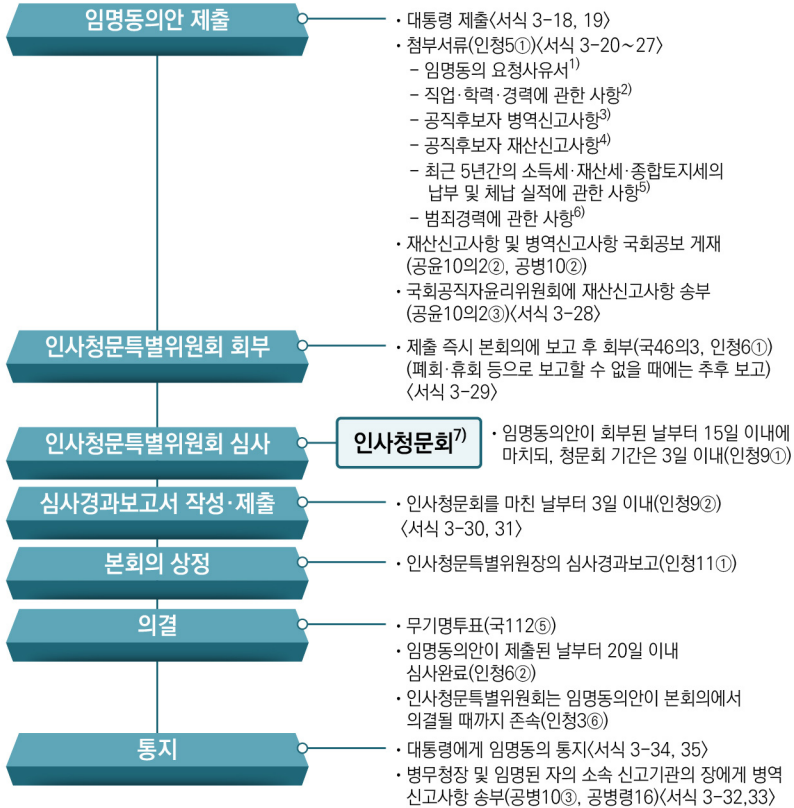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일반동의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심사절차 및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 : 제1장제2절 법률안 실무 참조

나. 임명동의안

임명동의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17 ◀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절차도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봄(국65의2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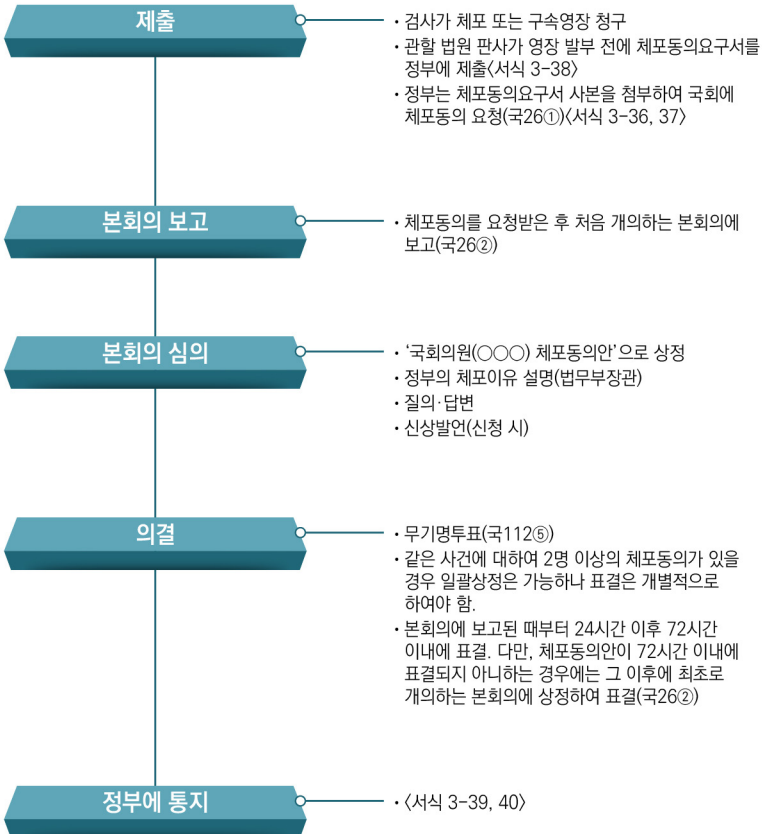
※ 1)·2)·3)·4)·5)·6)의 첨부서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참조

※ 7) 인사청문회의 절차는 제11절 인사청문요청안 참조

다. 의원체포·구금동의안

의원체포·구금동의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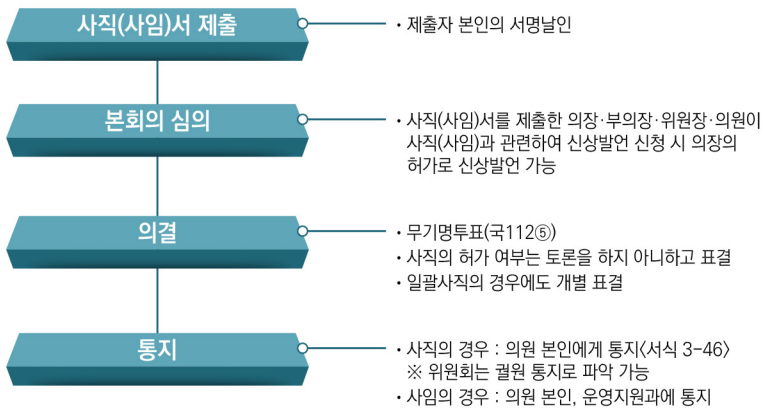
▶ 그림 2-18 ◀ 의원체포·구금동의안 처리절차도



라.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의 건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의 건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19 ◀ 회기 중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의 건 처리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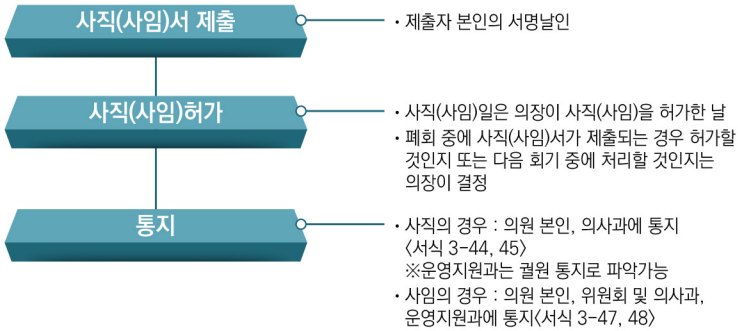


사례

회기 중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 사례

-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사임의 건: 제36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9.7.5.)에서 의결
- 국회의원(오세정) 사직의 건: 제36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2018.10.1.)에서 의결
- ※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 → 의사와 위원계 공문처리(국47③)

▶ 그림 2-20 ◀ 폐회 중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의 건 처리절차도



※ 의장·부의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에는 사임할 수 없음(국19).

사 례

폐회 중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 사례

- 교육위원장(이찬열) 사임의 건 : 2020.2.10(의장허가)
- 국회의원(김성수) 사직의 건 : 2020.1.29(의장허가)
- ※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도 의장의 허가를 요함(국47③) → 의안과 제출

가. 동의안의 수정

동의안은 그 성격상 수정할 수 없고 해당 동의안에 대한 가·부
로써 처리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
한 동의(재정기능의 동의안) 중 일부는 회의의 능률성 제고와 행
정상 효율성을 위하여 수정하여 동의한 선례가 있다.

이 경우 국회에서 동의안을 수정하여 처리할 때에는 동의안의 제출
자인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4월 2일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본회의 수정안의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03년
4월 4일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동의
안의 수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
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국회가 수정하여 가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채택(2003.4.28.)하여 보고
한 바 있다(국회운영위원회는 의견제시가 없었음).

그 당시, 김경재의원 외 29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2003.3.26.
파견부대의 규모와 예산액을 감액한 수정안)되어 이를 접수처리
하고, 2003년 4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사례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을 수정가결한 사례

건 명	제출자	제출일	처리일	처 리 내 용
2009년도 및 2010년도 발행 구조조정 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정 부	09.4.13.	09.4.29.	• 동의안의 효력발생일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로 하여 동의
2010년도 학자금 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정 부	09.11.16.	10.1.18.	• 발행액을 10조원 이내에서 9조원 이내로 삭감하여 동의
2014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 부	13.10.2	14.1.1.	• 발행액을 1.8조원 이내에서 1.4조원 이내로 삭감하여 동의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 부	20.4.25.	20.4.30.	• 동의안의 효력발생일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로 하여 동의

나. 동의안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부대의견

동의안에 첨부되어 의결된 부대의견은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적 성격을 가지므로 결의문의 일반적 효력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독립된 의안으로 의결된 결의문과도 구별된다.

위원회에서 동의안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부대의견은 본회의 의결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의사국 의안과에서 최종적으로 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동의안의 기본성격에 맞게 부대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가·부만을 정부에 통지한다.

부대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의 처리결과 등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에서 문서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다. 다만, 예산·결산과 관련된 부대의견은 그 내용이 전 부처와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어 예산·결산에 대한 정부이송 시 함께 첨부하고 있다.

사례

동의안에 부대의견을 붙여 동의한 사례

건 명	제출자	제출일	처리일	부 대 의 견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 부	11.9.30.	11.12.30.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주식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를 통하여 필요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사례

건 명	제출자	제출일	처리일	부 대 의 견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 부	11.9.30.	11.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 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채권보증을 따른 국민부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중장기 재정운용전망과 함께 전년도 전망 대비 변동내역 및 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 부	12.8.29.	12.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통상부는 GGGI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문책 및 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 •감사지적사항의 책임 당사자는 GGGI 해당 직에서 즉각 퇴진할 것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정 부	13.10.14.	13.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운용 방안 등을 '14년 4월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201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 부	14.9.22.	14.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는 한국장학 재단으로 하여금 향후 CP 발행이 차기년도 국가 보증액의 증가요인으

사례

건 명	제출자	제출일	처리일	부 대 의 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정 부	18.9.4.	18.12.7.	<p>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군사적 협력의 내용 및 변동사항을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정부는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군의 해외파견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정 부	19.9.4.	19.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영 FTA 체결시 그 적용에 따른 통관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영국에 통관절차 간소화 및 통관인력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하는 방안 에 대하여 검토할 것

다. 국무총리 궐위 시 부서권자

국무총리의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헌86),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헌82). 국무총리가 궐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후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현 국무총리가 부서를 하지만, 전임 국무총리가 사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에 누가 부서권을 행사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반드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므로 국무총리 궐위 시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관계 국무위원이 궐위된 경우 장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차관은 정부위원의 자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부서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행정부의 해석이다.

과거 국무총리서리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궐위 시 대통령이 곧바로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하여 총리로서의 권한행사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도 국무총리서리가 부서를 한 사례도 있었으나,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 한 국무총리서리의 국무총리권한 행사는 위헌이라고 할 수 있기에 더 이상 국무총리서리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사례

국무총리 결위 중 국회에 제출하는 후임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서 관련 사례

건 명	제출일	동의일	부 서
국무총리(이영덕) 임명동의의견	94.4.23.	94.4.29.	부서 없음.
국무총리(김석수) 임명동의안	02.9.17.	02.10.5.	서리 김석수 부서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	07.3.15.	07.4.2.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부서
국무총리(김황식) 임명동의안	10.9.16.	10.10.1.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부서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	15.5.26.	15.6.18.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서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17.5.12.	17.5.31.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부서

제3절 승인안

01 승인안의 의의

“승인안”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국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하나, 때로는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동의안과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명시된 승인안을 승인대상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에 대한 승인 : 예비비지출 승인(헌55②, 국재52④),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에 대한 승인(헌76③)
- 방송에 대한 승인 :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방송법 59),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방송법 65),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23)
- 의장의 권한행사에 대한 승인 :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국21③)
-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승인 : 국정조사계획서의 승인(국감조3④),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국감조7iv)

승인안은 안건의 성질상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다.

02 승인안의 종류

승인안은 그 심사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승인안

- 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헌55②, 국재52④)
- ②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 승인안(헌76③)
- ③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법 5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3)
- ④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방송법 65)¹⁾

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승인안

- ①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국감조3④)
- ②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감조7iv)

다. 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승인안

- ①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국21③)

1) 2007년 9월 21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처음으로 제출할 때 제출자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방송법」의 해석상 '방송위원회'임을 확인하였음.

03

승인안 처리절차

〈참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승인안에 대한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시 심사절차 및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 : 제1장 제2절 법률안 실무 참조

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헌55②, 국재52④)

〈참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처리 절차는 제2장제3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실무 참조

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 승인안(헌76③)

〈참조〉 일반동의안 처리절차와 동일하므로 제2절 일반동의안 처리절차 참조

사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 승인안 제안 사례

건 명	제 안 자	소관 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승인의건	대통령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심사 특별위원회	72.9.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승인의건	대통령	재무위원회	93.8.19.

다.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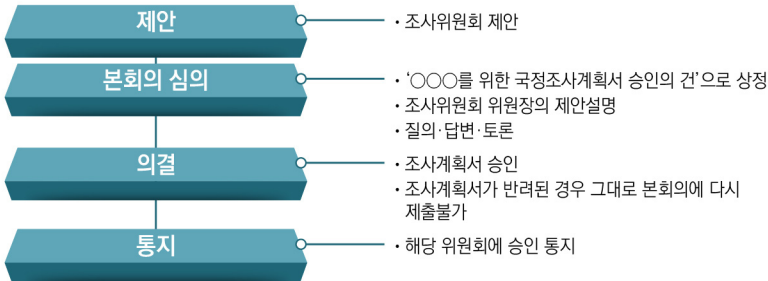
▶ 그림 2-21 ◀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처리절차도



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국감조3④)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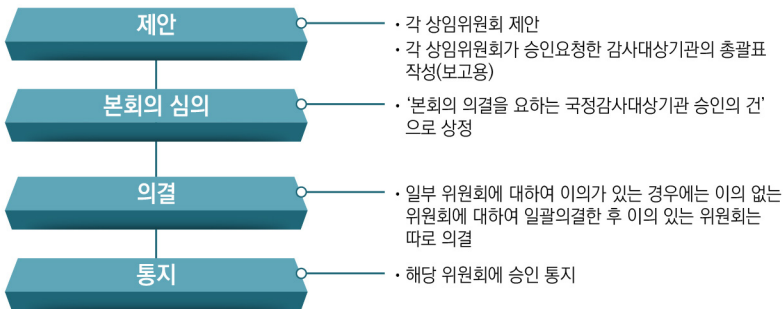
▶ 그림 2-22 ◀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절차도



마.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감조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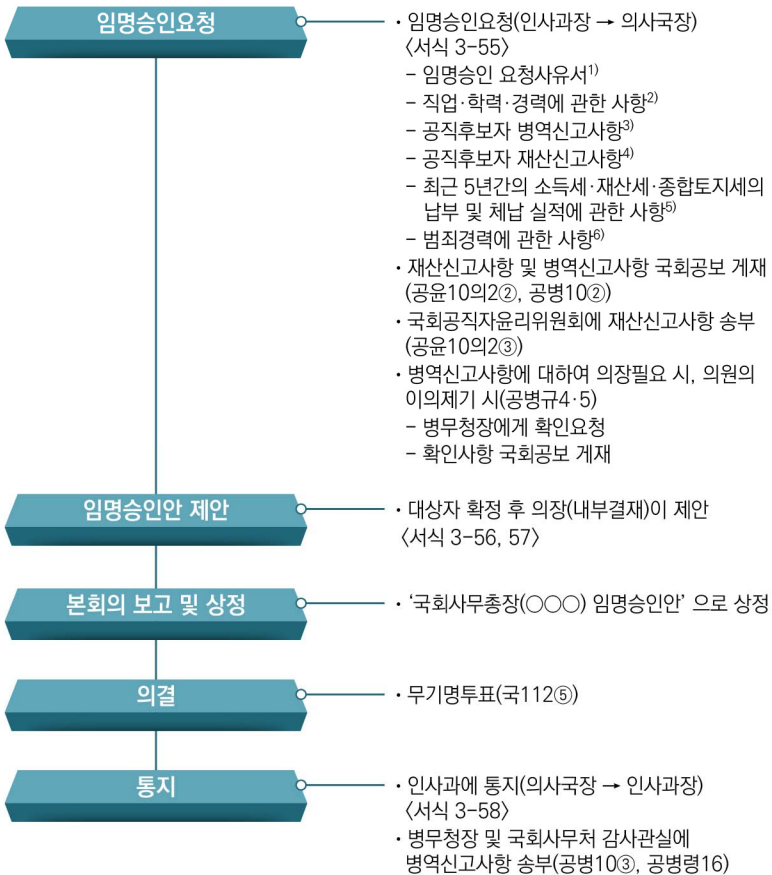
▶ 그림 2-23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처리절차도



바.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국21③)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24 ◀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처리절차도



※ 1)·2)·3)·4)·5)·6)의 첨부서류는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 참조

04 승인안 관련 사항

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수정승인 여부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국회심의회는 사전동의가 아닌 사후승인절차이기 때문에 수정승인이나 부분승인은 성격상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보며, 같은 명령에 대한 국회절차는 승인·불승인으로 일단 처리하고 개정·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해당 명령을 개정·폐지 또는 정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하여 국회가 수정승인하거나 새로운 명령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으며, 개정·폐지 법률안에 의하여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개정 또는 폐지한 사례는 존재한다.

사례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여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개정 또는 폐지한 사례

건 명	제안자	의결일	비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호)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	법제사법 위원장	52.6.5.	•재의요구로 53.5.30. 재의결 확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6호)중개정법률안	법제사법 위원장	53.12.21.	

사례

정부 또는 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하여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개정 또는 폐지한 사례

건 명	제 안 자	의 결 일	비 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호)중개정법률안	신익희의원	50.11.23.	•재의요구로 51.1.18. 재의결 확정
경제의안정과성장예관한긴급명령(제15호)폐지법률안	정 부	82.3.13.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 등 13인	11.4.29.	

나. 한국방송공사 등 결산 승인안의 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84조의 예산안·결산의 심의절차는 헌법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그 예산의 지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로서 이 때의 예산안·결산은 국가의 예산안·결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국45)도 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결산이 아닌 일반 승인안으로 분류되는 의안으로서 「국회법」 제81조에 따른 일반 의안의 심의절차를 따르게 된다. 즉,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의 경우 처음에는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감독 부처의 장의 승인으로 확정하였으나, 공영방송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제4절 결의안

01 결의안의 의의

“결의안”이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의안을 말한다. 결의안은 반드시 결의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 하더라도 국회의 결의를 표명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이면 결의안으로 분류한다(예: 감사요구안, 탄핵소추안, 국회의원윤리강령안).

결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를 위한 결의안과 국회 자체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대내적 의사표시를 위한 결의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외적 의사표시를 위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결의내용을 결의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정부, 국제기구, 대사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국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결의안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과 「국회법」 등에서 대정부 통제수단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결의안은 개별 법령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02

결의안의 종류

결의안은 그 심사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결의안

- ① 일반결의안(국79)
- ② 감사요구안(국79·127의2)
- ③ 탄핵소추안(헌65, 국130~134):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자는 의결이 있는 경우
- ④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국재38④): 대상사업의 소관 부처 소관 위원회에 회부
- ⑤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 법제 사법위원회 회부

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결의안

- ① 회기결정의 건 또는 회기연장의 건(국7①)
 - ②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감조2①)
 - ③ 국정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감조15·16)
 - ④ 일반결의안(국51)〈서식 3-60〉
 - ⑤ 감사요구안(국51·127의2)〈서식 3-69〉
- ※ 2008년 9월 1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재

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요청(대통령 명의)
- ②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기타 안건) 회부
- ③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결과 보고(심의결과보고서 첨부)
- ④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결의안) 제안
- 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 상정·의결
- ⑥ 심의 결과 통지

다. 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결의안

-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헌62, 국121)
- ② 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헌44②, 국28)
- ③ 계엄해제요구 결의안(헌77⑤, 계엄11)
- ④ 탄핵소추안(헌65, 국130~134) :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자는 의결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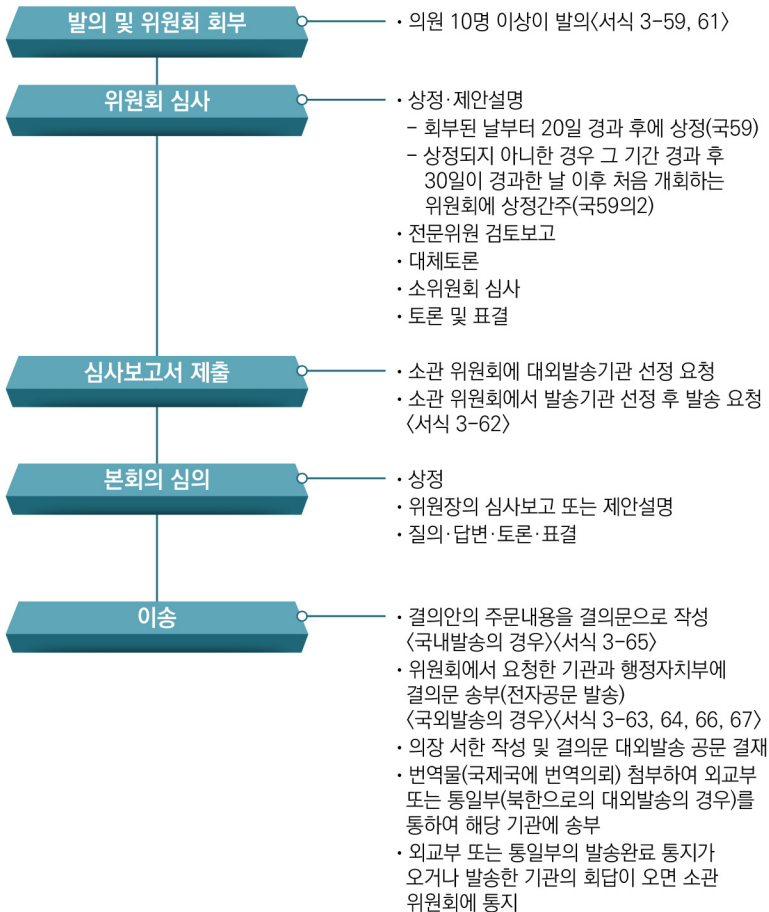
03 결의안 처리절차

<참조>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결의안에 대한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시 심사 절차 및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 제1장제2절 법률안 실무 참조

가. 일반결의안(국79)

일반결의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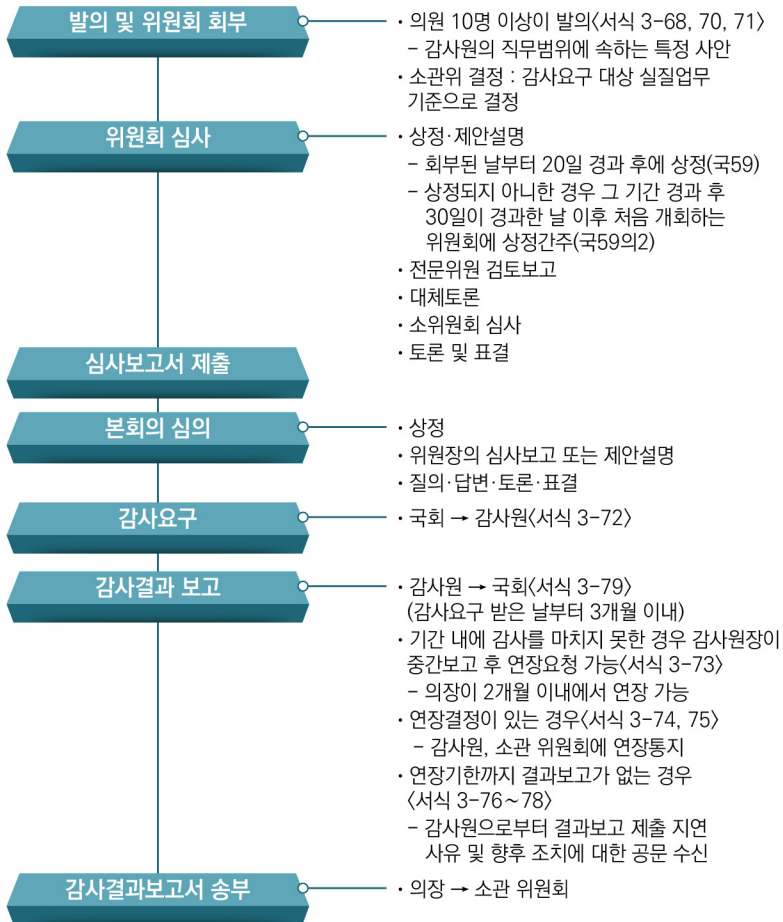
▶ 그림 2-25 ◀ 일반결의안 처리절차도



나. 감사요구안(국79·127의2)

감사요구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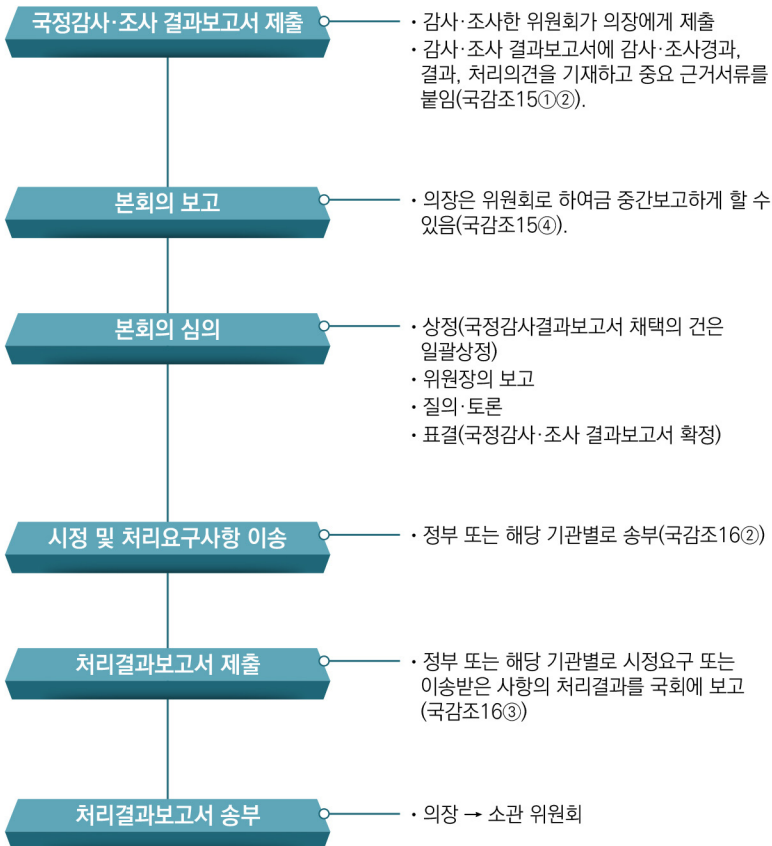
▶ 그림 2-26 ◀ 감사요구안 처리절차도



다. 국정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감조15·16)

국정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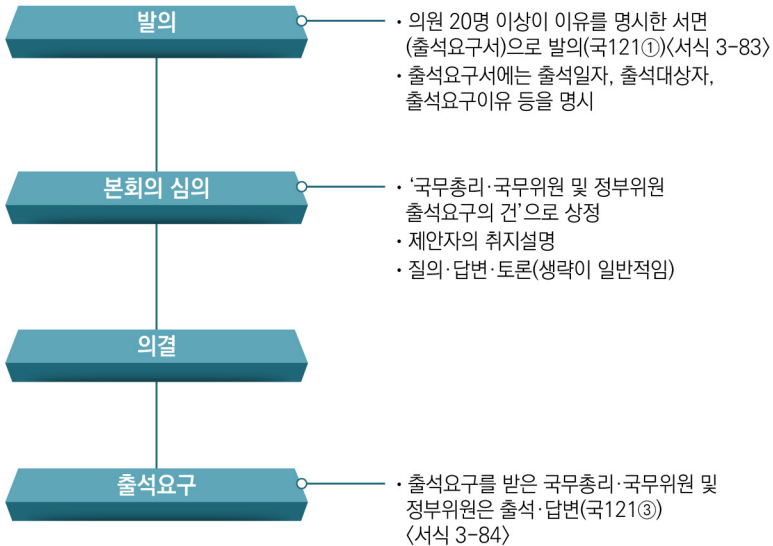
▶ 그림 2-27 ◀ 국정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절차도



라.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헌62, 국121)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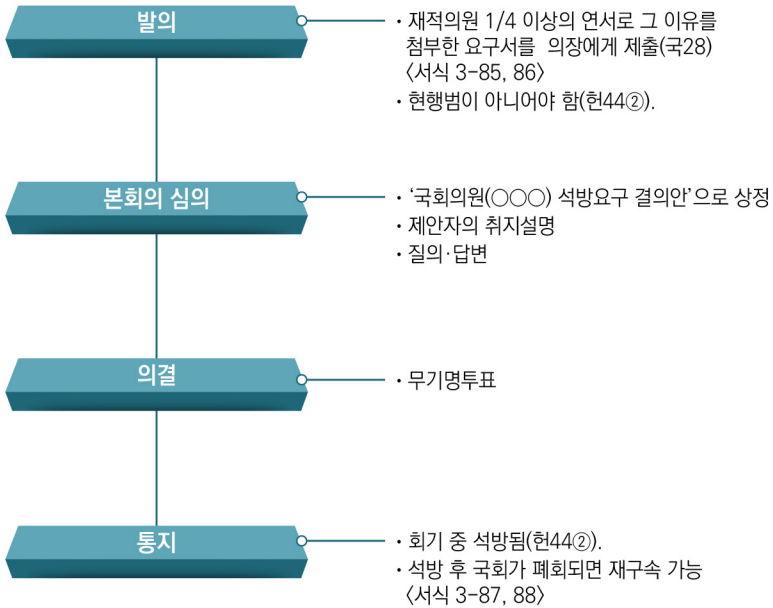
▶ 그림 2-28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처리절차도



마. 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헌44②, 국28)

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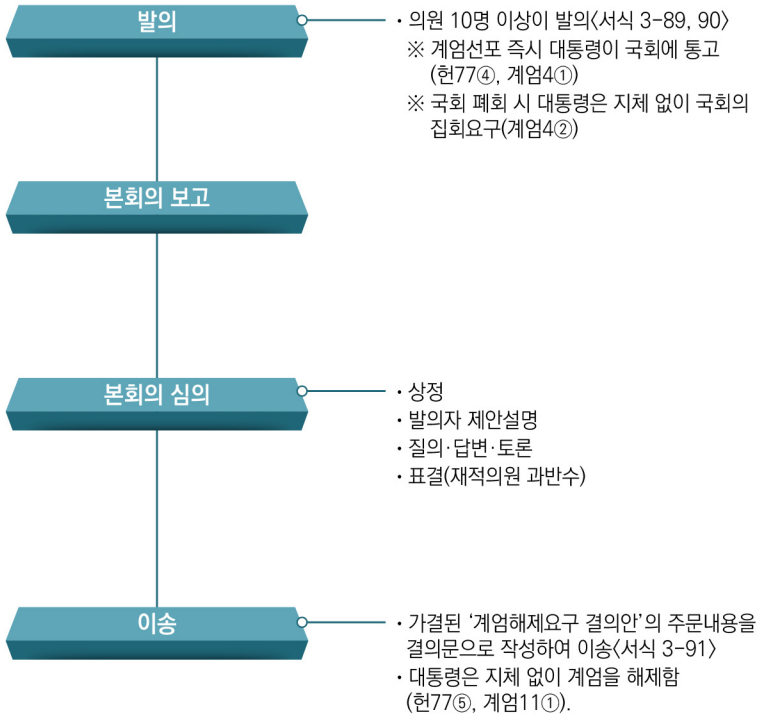
▶ 그림 2-29 ◀ 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 처리절차도



바. 계엄해제요구 결의안(헌77, 계엄4·11)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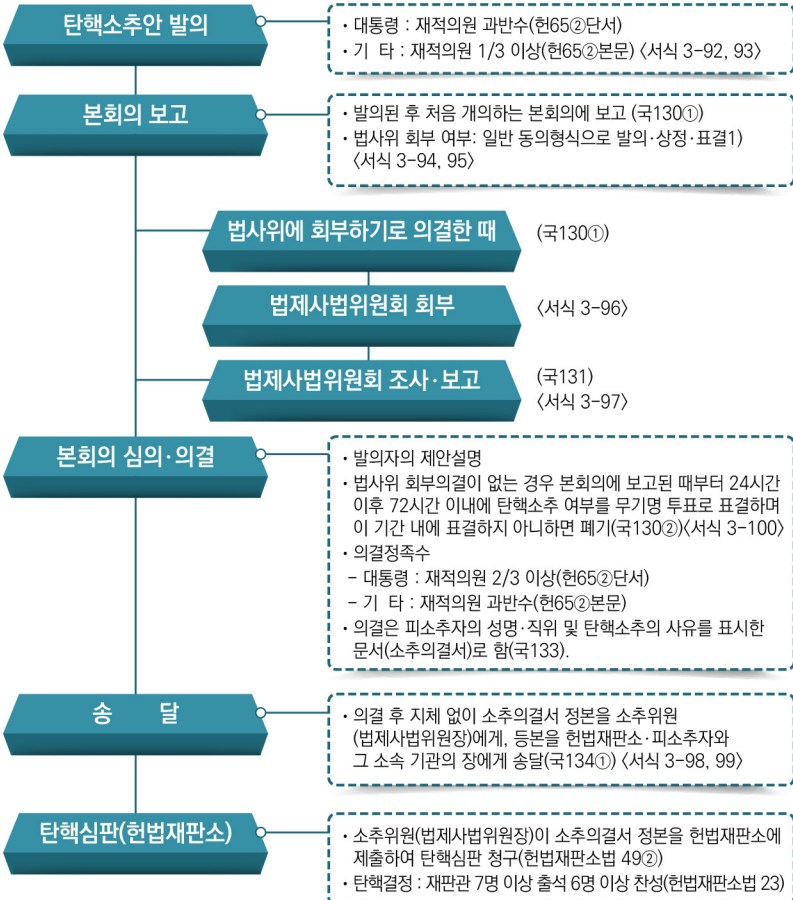
▶ 그림 2-30 ◀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처리절차도



사. 탄핵소추안(헌65, 국130~134)

탄핵소추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31 ◀ 탄핵소추안 처리절차도



1) 대법원장(유태홍)에대한탄핵소추의견법제사법위원회회부예관동동의(류준상의원) 1985.10.21. (제12대국회) 부결

가. 결의안과 결의문

국회의 의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그것이 외부에 표명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본회의가 개의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에 대한 ○○○위원회 입장’ 또는 ‘○○○에 대한 ○○○위원회 결의문’ 등의 형식으로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는 국회의 내부기관이므로 그 결의문은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여 표명하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의문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사례

건 명	위 원 회	채 택 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발동요건 완화를 위한 농림수산물위원회 결의문	농림수산물식품	11.6.23.
형사소송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감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문	행정안전	11.11.23.
호남고속철도건설 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문	국토교통	15.7.14.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5.10.20.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문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18.11.29.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9.10.15.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9.10.17.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9.10.21.

나. 사퇴(해임)에 관한 권고결의안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사퇴(해임)에 관한 사항이

건의안의 형식이 아니라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일반의안인 결의안 등의 형식으로 발의되는 경우가 있다. 제11대국회 제116회(임시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1983.4.22.)는 「국회법」에 따라 일반의안으로 제출된 국무위원(문교부장관 이규호)해임권고결의안과 국무위원(내무부장관 노태우)해임권고결의안의 의안성립 문제와 ‘소관위원회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결국 「국회법」 해석 등 법해석상의 문제로 귀착되어 그 소관을 국회운영과 「국회법」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국회운영위원회로 결정하였고, 이후 제출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사퇴(해임) 권고결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고 있다.

정부위원(예: 국정홍보처장 파면요구 결의안)의 경우도 국무위원에 준하여 국회운영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하여 회부하였다. 다만,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아닌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위원 등에 대한 사퇴 권고결의안 등은 소관 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국회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례가 있으며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사례도 있다.

사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사퇴(해임)을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한 사례

건 명	발 의 자	발 의 일	비 고
국가정보원장(천용택)사퇴 권고결의안	이부영의원 외 130인	99.12.17.	「국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
국가정보원장(고영구)사퇴 권고결의안	이규택의원 외 152인	03.5.1.	
방송위원(강동순)사퇴촉구 결의안	지병문의원 등 28인	07.4.30.	
국가정보원장(남재준) 해임 촉구 결의안	전병헌의원 외 126인	13.11.19.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고영주) 해임 촉구 결의안	이종걸의원 등 128인	15.11.1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의원 등 3인 외 163인	16.6.23.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윤종오의원 등 4인 외 37인	17.3.2.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방송통신위원장(이호석) 해임 촉구 결의안	정우택의원 외 103인	17.10.27.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 촉구 결의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18.10.30.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헌법 제63조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제도이므로 이와 관련성이 없는 정부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아닌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해임이나 사퇴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결의안 또는 감사요구안

2006년 12월 20일 이계진의원 등 35인이 정부 전 부처의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상임감사의 판공비 사용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감사요구(청구)안을 발의하였다.

감사요구(청구)안의 소관 위원회를 정할 때에는 감사요구(청구)대상 업무를 소관하는 위원회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위 감사요구(청구)안의 경우 전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모든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다.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업무의 비중이나 중요도, 위원회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협의요청 전에 「국회사무처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위 감사요구(청구)안의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에 관련되어 있으나 산하기관 및 공기업을 총괄·감독하는 기획예산처장관을 출석시켜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국회운영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하여 회부되었다.

의안실무자는 접수단계에서 여러 위원회를 소관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회의 단일위원회 소관주의를 설명하고 위원회별로 의안을 달리하거나, 의안의 중심내용을 정확히 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여 사전에 소관 위원회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례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결의안 또는 감사요구안 발의 사례

건 명	발의자	발의일	소관 위원회	비 고
외환은행 매각 중단조치 촉구 결의안	이재오의원 등 4인 외 147인	06.2.17.	정무 위원회	
아웅산 테러범 신병송환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정형근의원 등 20인	06.3.22.	정보 위원회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상임감사 판공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청구안	이계진의원 등 35인	06.12.20.	국회 운영 위원회	의안소관조 정위원회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	유성엽의원 등 18인	09.9.3.	국토 해양 위원회	
	이용섭의원 외 83인	09.9.8.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의 경우 조사대상사업의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회부함

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국회법」 제51조는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의안의 내용은

「국회법」상의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이나 그 활동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스스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의원이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결의안 형식으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한 다음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에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 및 활동기간 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계획서를 통하여 승인받으므로 활동기간 연장 또한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해석되는바 결의안의 형식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제19대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구성 결의안 의결 시 미리 주문에 활동기간 연장가능 기간을 명시하고 명시된 기간 내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국회법」 개정(2014.5.14.)으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활동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한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국44⑤).

제5절 건의안

01 건의안의 의의

“건의안”이란 국회가 정부나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의원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국회가 채택·발송한 건의안은 정치적 의사표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해당 기관이 처리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임의사항이나 정치적으로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02 건의안의 종류

건의안은 그 심사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건의안

- 일반건의안(국79)

사례

의원이 일반건의안을 발의한 사례

건명	발의자	발의일	처리일	처리결과
나주시·화순군, 북제주군(구 좌읍, 조천읍)·남제주군(성산읍, 남원읍, 표선면)특별재난 지역선포건의안	서병수의원 등 105인	04.9.4.	04.9.23.	04.11.4. 정부가 국회건의 수용불가 통보

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건의안

- 일반건의안(국51)

사례

위원회가 일반건의안을 발의한 사례

건명	발의자	발의일	처리일	처리결과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설치촉구 건의안	법제사법위원장	08.2.26.	08.2.29.	08.3.13. 정부가 검토의견 제출

다. 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건의안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헌63)

※ 해임건의의 사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중대한 과오를 범한 때, 정치적 책임 추궁 시,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잘못 보좌한 경우 등

사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사례

건명	발의자	발의일	처리일	처리결과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우상호의원 등 2인 외 130인)	우상호의원 등 2인 외 130인	16.9.21.	16.9.24.	별도 조치사항 없음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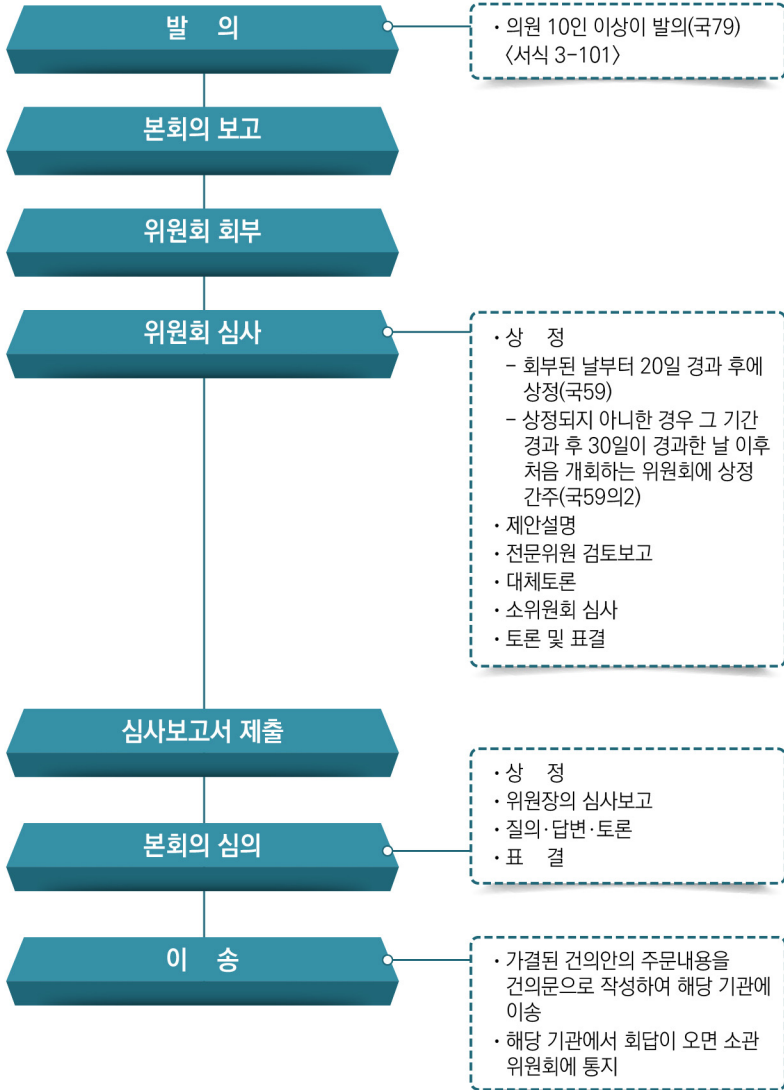
건의안 처리절차

가. 일반건의안(국79)

일반건의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반건의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심사절차 및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
 : 제1장제2절 법률안 실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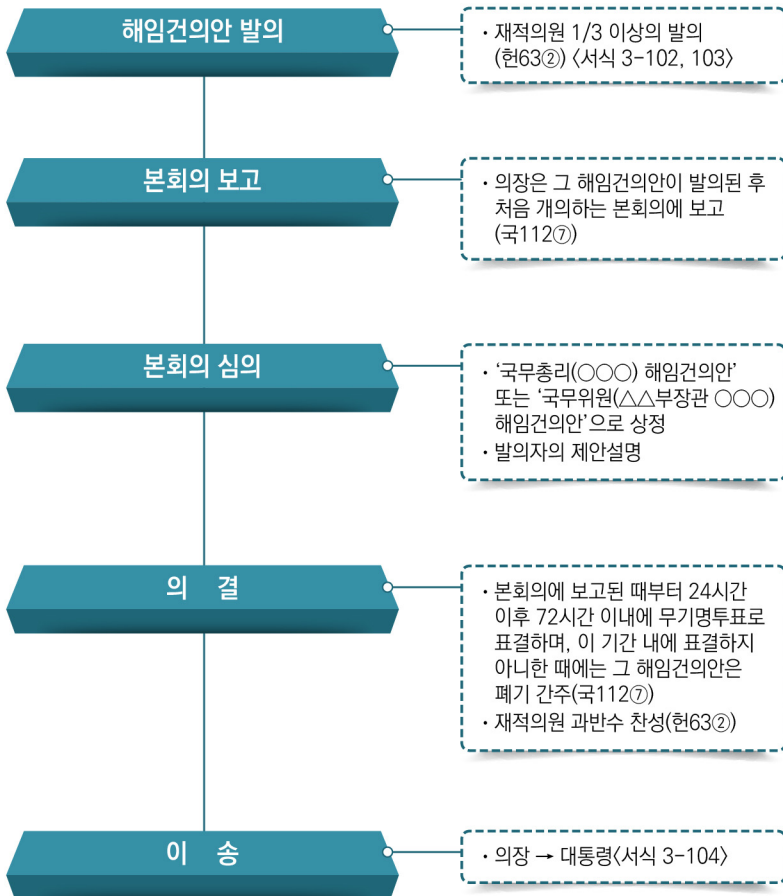
▶ 그림 2-32 ◀ 일반건의안 처리절차도



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헌6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33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처리절차도



04

건의안 관련 사항

가.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결의안 또는 감사요구안

여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하나의 공문으로 일괄 제출할 수는 없다.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별로 각각 발의요건을 충족하여 독립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

여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독립된 의안으로 제출한 사례

건 명	발 의 자	발 의 일	처 리 일	처리결과	비 고
‘국무위원(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정재석) 해임건의안’ 외 21건	김태식의 원외 99인	94.4.25.	94.4.28.	폐 기	개별의안 으로 각각 표결
‘국무위원(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홍재형) 해임건의안’ 외 21건	신기하의 원외 103인	94.10.27.	94.10.28.	부 결	”

제6절 규칙안

01 규칙안의 의의

“규칙안”이란 국회의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국169). 국회규칙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이며 절차적인 사항에 국한되나, 행정입법인 법규 명령이나 대법원규칙과는 달리 「국회법」의 시행령은 아니며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한 내부규율로서 자주적인 성격을 가진다.

국회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며 (국37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국37①·86),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국회사무처법」 제14조, 「국회도서관법」 제12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1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10조 등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해당 법률에 특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회규칙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국회의 의사나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제정·개정·폐지하고, 국회 소속 기관의 운영이나 그 소속 직원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만을 받아 제정·개정·폐지하는 체계임을 알 수 있다.

법률에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규칙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02

규칙안의 종류

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국회규칙 :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② 국회방청규칙
- ③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 ④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 ⑤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 ⑥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⑦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 ⑧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⑨ 국회청원심사규칙
- ⑩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 ⑪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 ⑫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⑬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⑭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 ⑮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⑯ 국회정보공개규칙
- ⑰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 ⑱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 ⑲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⑳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㉑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 ㉒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정하는 국회규칙 :
국회 소속 기관의 운영이나 그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

- ① 국회사무처 직제
- ②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③ 국회도서관 직제
- ④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 ⑥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⑦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⑧ 국회인사규칙
- ⑨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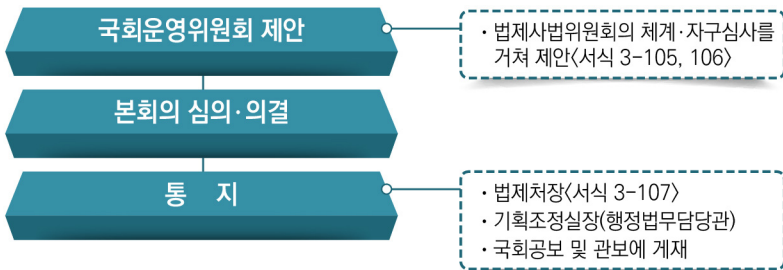
- ⑩ 국회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⑪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⑫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03 규칙안 처리절차

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국회규칙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국회의 의사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안으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제정·개정·폐지하는 규칙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2-34>과 같다.

▶ 그림 2-34 ◀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국회규칙 처리절차도



※ 의원발의 규칙안은 법률안의 심의절차와 같음

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정하는 국회규칙

국회 소속 기관의 운영이나 그 소속 직원에 관한 규칙안으로서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만을 받아 제정·개정·폐지하는 규칙안의 처리절차는 <그림 2-35>와 같다.

▶ 그림 2-35 ◀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정하는 국회규칙 처리절차도



제7절 선출안

01 선출안의 의의

통상 “선출”이란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 “선출안”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통해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헌111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헌114②)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1명 중 4명(국가인권위원회법 5②) 등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 헌법기관 및 국가기관의 구성에 국회가 참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가조직에 관한 권한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이들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4명 등과 같이 국회에서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의안을 “선출안”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3명,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3명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4명 등과 같이 국회

에서 추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의안을 “추천안”이라고 한다.

선출안 및 추천안은 의안종류상 모두 선출안으로 분류되며, 의안 처리절차나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근거 법률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에 따라 의안명을 다르게 할 뿐이다.

중전에는 이들 선출(추천)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서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다.

「국회법」 개정(2000. 2. 16.) 및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헌법에서 국회 선출을 명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국46의3·65의2, 인청).

그 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개별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02 선출안의 종류

선출안은 선출대상 공직 및 인사청문회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선출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헌111③)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헌114②)

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선출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국가인권위원회법 5②)
추천안은 그 추천대상 공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②)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③)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공운14의5③)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②)
-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특별감찰관법 7①)

03

선출안 처리절차

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선출안〈서식 3-108~111〉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국46의

3③<서식 3-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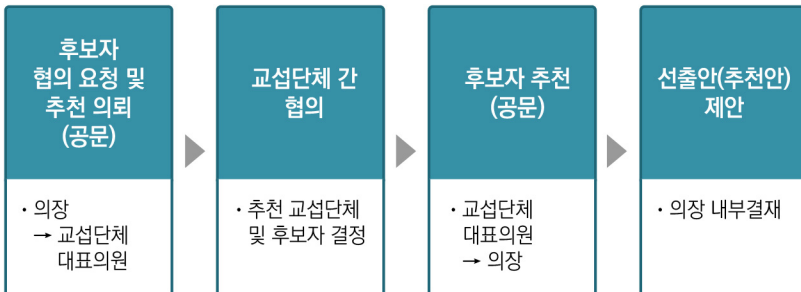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심사경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다음 무기명투표로 표결(국112⑤)하며, 대통령 및 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한다<서식 3-113>.

개별 법률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선출 또는 추천 의뢰를 받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출 또는 추천한 자에 대한 선출안 또는 추천안을 제안한다.

해당 선출안 또는 추천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국112⑤)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한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출(추천)안을 제안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그림 2-36 ◀ 의장이 선출(추천)안을 제안하는 과정



선출(추천)안의 첨부서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와 마찬가지로 ① 추천서 ②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③ 공직후보자 병역 신고사항 ④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⑤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⑥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이며, 모든 첨부서류는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추천 시 준비하여야 한다.

※ 2020년 2월 4일 원내대표 간 합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선출(추천)안 중 상임직위를 제외한 인사안건에 대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함.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및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은 첨부서류에서 제외함.

의안실무자는 협의 요청 및 추천 의뢰 공문을 교섭단체에 시행한 후 수시로 협의 결과를 각 교섭단체 행정실을 통하여 확인한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완료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모든 교섭단체에 확인한 다음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 등을 안내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 등과 같이 해당 법률에 교섭단체 간 추천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²⁾ 실무적으로 교섭단체 현황에 따라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교섭단체의 후보자 추천 공문은 선출(추천)안의 첨부서류가 완비되었을 때 접수하여야 한다. 첨부서류가 완비되면 후보자 추천 공문을 접수하고 의장이 선출(추천)안을 제안하는 시점에 의안번호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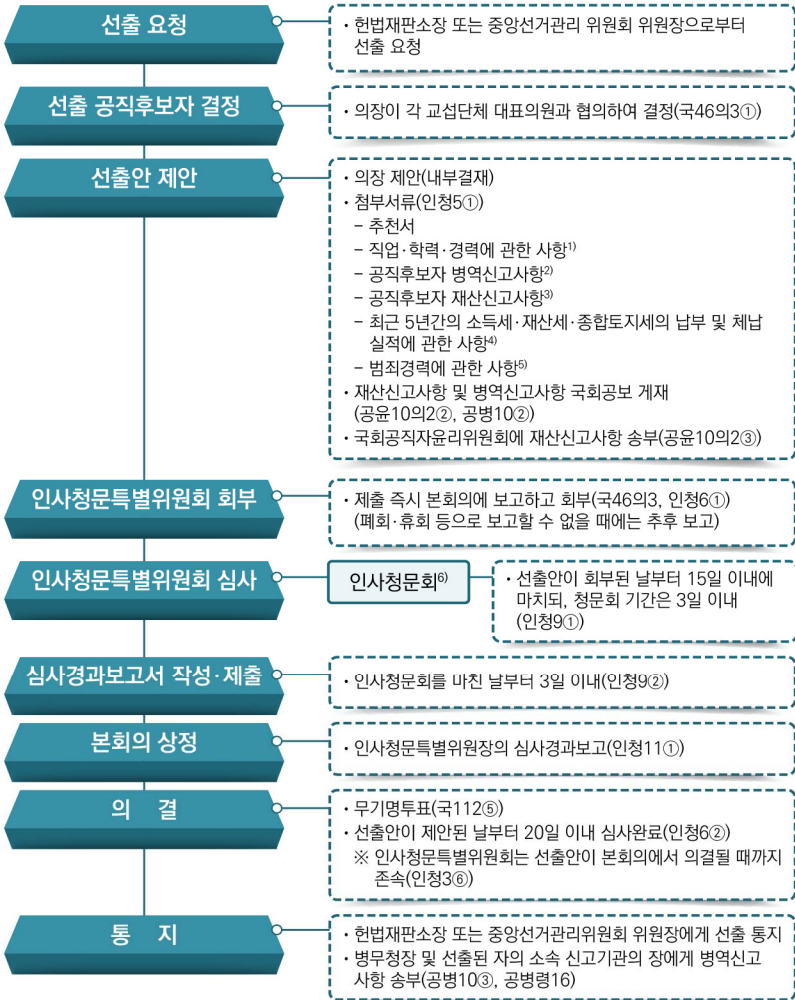
또한 선출안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부는 회부공문을 수신할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되는 행위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법」에 따라 의장의 선출안 제안과 동시에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관례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거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직원에 대한 검무명령이 있는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선출안 및 추천안의 처리절차는 <그림 2-37, 3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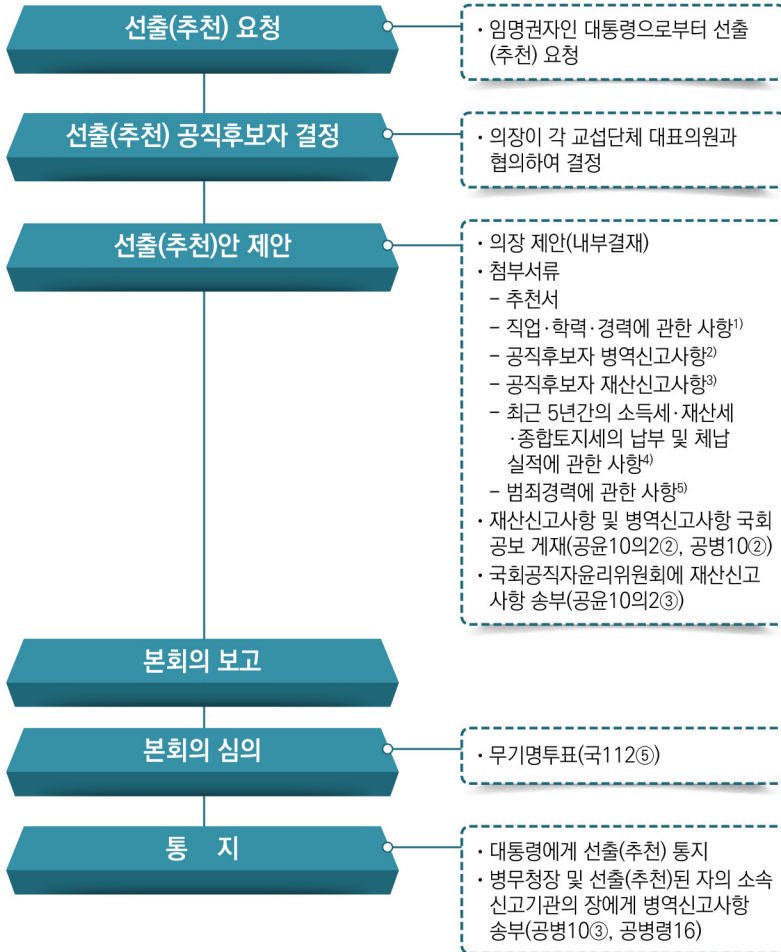
▶ 그림 2-37 ◀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 선출안 처리절차도



※ 1)·2)·3)·4)·5)의 첨부서류는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 참조

※ 6) 인사청문회의 절차는 제11절 인사청문요청안 참조

▶ 그림 2-38 ◀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공직후보자 선출안 및 추천안 처리절차도



※ 1)·2)·3)·4)·5)의 첨부서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참조

제8절 의원징계

01 의원징계의 의의

“의원징계”란 국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정한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하여 국회자율권인 징계권을 행사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형벌권에 의한 처벌이나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과하는 일반적인 징계와는 구분된다(국155~164).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기인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의원신분으로서의 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징계에 따른 불이익의 범위도 의원의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신분의 박탈에 한정된다.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헌법이 사법적 심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헌64),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02 의원징계요구권자

「국회법」 제156조에 따른 의원징계요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장
- ② 소속 위원장
- ③ 의원 20명 이상
- ④ 모욕을 당한 의원
- ⑤ 윤리특별위원장
- 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명 이상

03 의원징계사유

국회는 의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국155).

가.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청렴의 의무) 또는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헌 법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생 략)

-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나. 「국회법」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 ⑧ (생략)

다. 「국회법」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라.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략)

마. 「국회법」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같은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국회법」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 국회법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⑥ (생략)

사. 「국회법」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 국회법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① ~ ③ (생략)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아. 「국회법」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자.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국회법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카. 「국회법」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 국회법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파.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거.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4.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 14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6.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8.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너.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 국회의원윤리강령 주요내용
 -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자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국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선수범한다.
 -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주요내용
 - 국회의원윤리강령 준수 의무
 - 품위유지 의무
 - 청렴의무
 - 직권남용금지
 -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 사례금 금지
 - 겸직금지 등
 - 겸직신고의무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회피의무
 - 재산신고의무
 - 기부행위의 금지 등
 - 직무상 국외활동 시 보고 또는 신고 의무
 - 회의출석의무
 - 친·인척 보좌직원 임용요청 금지 및 보좌직원 관리 의무

04

의원징계의 종류(국163)

가.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의원징계(제155조제8호·제10호 및 제11호 제외)의 종류

-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③ 30일(제15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³⁾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 ④ 제명(본회의는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164).

나. 「국회법」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의원징계의 종류

-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 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②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2022년 4월 5일 시행 예정

③ 제명(본회의는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164).

05 의원징계요구·회부시한 등

가. 의원징계의 요구

소속 위원장이 징계대상자를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의원 20명 이상, 모욕을 당한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이 징계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 터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여야 한다(국157②).

징계요구의시한의 기산점에 대하여 1999년 7월 13일 제2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회기 중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의 기산점은 같다” 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의안번호 부여와 관련하여 의안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의장, 소속 위원장, 의원 20명 이상 또는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서가 의안과에 제출된 때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윤리특별위원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하는 시점에 의안번호를 부여한다.

사례

징계안에 대한 의안번호 부여 사례

- 국회의원(강용석) 징계안
 - 2010년 7월 21일 윤리특별위원회 장세환의원 등 5인의 요구로 제안
 - 「국회법」 제156조제6항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진행
 - 윤리특별위원회에서 2011년 5월 30일 의결
 - 심사보고(2011년 5월 30일) 후 의안번호 부여

나. 의원징계안의 회부시한 및 본회의 보고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소속 위원장이 보고한 징계 요구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의원 20명 이상 또는 모욕을 당한 의원의 징계 요구는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각각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3-114, 116 117>.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국155 단서).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징계의 요구가 의원의 신

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빨리 완결지어 법적 안정 상태에 두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징계의 요구나 회부를 할 수 없다.

윤리특별위원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이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요구서를 접수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국156 ⑥)(서식 3-115, 118),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06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 가. 징계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지났을 때에 상정할 수 있다(국59). 회부된 후 20일이 지났을 때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59의2).
- 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국46①).
- 다. 징계에 관하여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전속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한다(국158).
- 라.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국46③).

- 마.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국159).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으나,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국160).
- 바.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의 종류 등을 정한 징계안을 의결한 때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로 의결한 때에는 그 경고 또는 사과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한다(국163 ③)〈서식 3-119〉. 다만, 「국회법」 제155조제10호에 해당(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163 ③ 단서).
- 〈참조〉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시 심사절차 및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위원회 처리절차 : 제1장제2절 법률안 실무 참조

07 본회의 의결 및 선포

- 가.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국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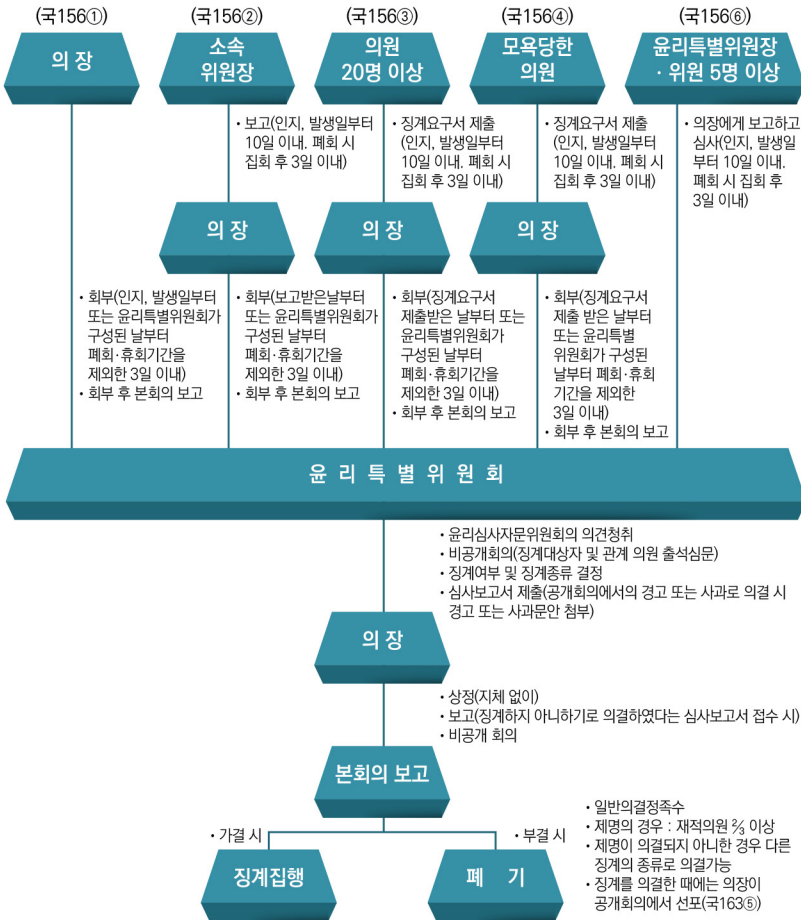
- 나. 「국회법」 제155조제10호에 해당(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국156⑦).
- 다. 징계에 관한 본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한다(국158).
- 라.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으나,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국160).
- 마. 징계의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64③). 이 경우 해당 의원이 변명을 위하여 출석하였더라도 변명이 끝난 후 퇴장하므로 의결을 위한 출석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바. 본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국163④).
- 사.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국163⑤).

〈참조〉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본회의 상정절차 : 제1장제2절
법률안 실무 참조

08 의원징계안 처리절차(국155~164)

의원징계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2-39>와 같다.

▶ 그림 2-39 ◀ 의원징계안 처리절차도



※ 「국회법」 제155조제10호에 해당(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함.

09 의원징계 관련 사항

가. 징계요구 제출 시한

「국회법」 제157조제2항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제출시한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국157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 지나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이면 접수가 가능하다. 국회의원(김성태) 징계안의 경우 징계사유는 8월 2일에 발생하였는데 징계안은 8월 21일에 제출하였다.

사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 지나서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사례

건	명	제안자	제안일	비고
	국회의원(김성태) 징계안	오영식의원 등 25인	13.8.21.	사유발생일 : 13.8.2.

의안실무자는 징계안에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징계사유의 발생일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기준일부터 형식적으로 10일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면 제출시한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접수 처리하고, 실제 요건 준수 여부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9절 의원자격심사

01 의원자격심사의 의의

국회는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가 자율권에 의하여 갖는 의원신분에 관한 여러 권한 중의 하나이다. 국회가 자율권에 의하여 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수단으로는 징계에 의한 제명과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상실이 있다. 제명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자격심사는 의원에게 당선무효사유가 있거나 임기개시일 이후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가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국138~142).

02 의원의 자격요건

“의원의 자격”이란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의미하며 의원의 품위와는 구별된다.

현행법상 의원의 자격요건으로는

- ① 적법한 당선인일 것
- ②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하여 갖고 있을 것 등이다.

03 의원자격심사의 절차

가. 의원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138).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의원자격심사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3-124, 125>.

자격심사청구의 제기기한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심사대상 의원의 임기 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의장은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국139①)<서식 3-117>.

종전에는 의원의 자격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속소관이었으나,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 5. 31.)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으로부터 자격심사청구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그것을 회부한 경우에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격심사는 의원 자격에 대한 쟁송(爭訟)의 심리(審理)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에 대하여 자격 유무를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할 수는 없다.

다. 청구서 부분의 심사대상 의원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의장은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시에 청구서 부분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국139①)〈서식 3-126, 129〉.

의장이 청구서의 부분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게 한 것은 심사대상 의원에게 자격심사가 청구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에 항변할 소명자료를 갖추어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국139②)〈서식 3-127, 128〉.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국140①)〈서식 3-130〉.

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자격심사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부된 후 20일이 지났을 때에 상정할 수 있다(국59). 회부된 후 20일이 지났을 때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자격심

사안은 윤리특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59의2).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국140②). 그러나 심사대상 의원이 기일 내에 이유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국140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자격심사 청구의원 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국141①).

자격심사 청구의원 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국141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본회의에서 자격 유무가 결정되면 의장이 그 결과를 자격심사 청구의원 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하므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유무결정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는 일반의안과는 달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자격의 유무를 판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참조〉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시 심사절차 및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위원회 심사절차 : 제1장제2절 법률안 실무 참조

마. 본회의 심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142①).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142②).

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는 징계에 관한 본회의와 같이 비공개(국158)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142③).

〈참조〉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본회의 상정절차 : 제1장제2절
법률안 실무 참조

바. 결정결과 통보

본회의에서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한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국142④)〈서식 3-132〉.

04 의원자격상실결정의 효과

자격상실을 의결한 때에는 그때부터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퇴직하게 되지만, 그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이 없다는 결정은 확정력이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의원은 그 직을 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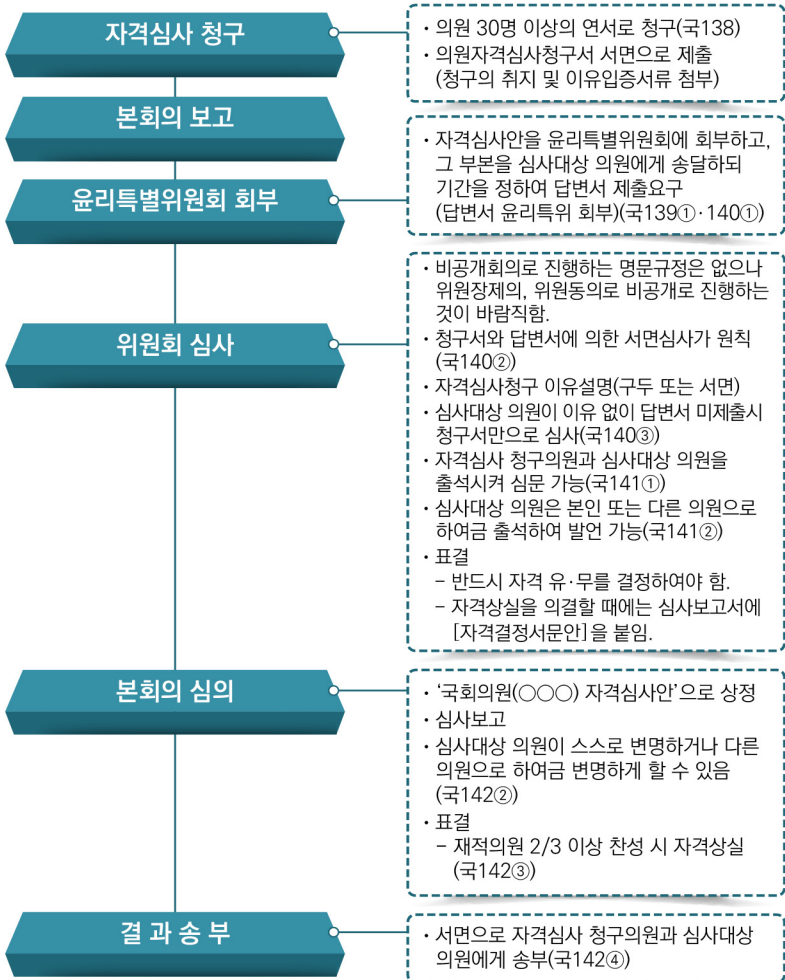
이 결정은 재의(再議)할 수 없으며 권력분립주의의 견지에서나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제소(提訴)할 수도 없다(헌 64④).

그러나 의원자격상실시기와 그간 사실상 의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관계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의원활동의 고도의 정치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의원으로서 의사(議事)에 관여한 행위와 수당의 지급 등은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국회의 선례도 같은 태도이다.

05 의원자격심사안 처리절차

의원자격심사안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2-40>과 같다.

▶ 그림 2-40 ◀ 의원자격심사안 처리절차도



제10절 중요동의

01 중요동의의 의의

가. 동의(動議)

“동의”란 회의체에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로서 동의가 발의·성립되면 심의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

동의를 안을 갖추는 등의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통상 회의에서 직접 발의된다는 점에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과 같이 사전에 안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일정한 서면형식과 접수절차 등)를 거쳐 발의되는 의안과 구별되며, 의결을 거쳐야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시회의 집회 요구, 휴회 중 회의재개 요구, 국정조사 요구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요구정족수, 서면제출 등)하여 요구하면 집회, 회의재개, 국정조사 등의 절차가 당연히 개시되는 요구와도 구별된다.

동의를 그 성질상 구두동의(口頭動議)가 일반적인 형태이나 본회의 수정동의와 같이 중요한 사안이나 내용이 복잡하여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을 갖추어 발의하여야 한다.

동의를 통상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재청)으로 발의되는 동의(국 89)와 특별한 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국75①·77·85의2①·91·95①)로 구분된다.

나. 중요동의

동의 중에서 회의운영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의원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의장이 제의하는 동의를 “중요동의”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다만, 수정동의나 번안동의와 같이 원안에 종속된 동의는 중요동의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중요동의를 동의를 중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국회의 관행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며, 성질은 일반동의와 같다.

중요동의에는 휴회의 건,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등이 있다.

중요동의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형식을 갖추어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동의를 의안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그 내용에 제한은 없으나, 법률로써 특별히 그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의안은 중요동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결의안으로 제출될 수 있는 내용을 국회운영상 중요동의의 형식으로 처리한 사례는 있다(예 :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02

중요동의의 종류

가. 특별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

- ① 비공개회의를 열자는 동의(국75①)
- ② 의사일정 변경동의(국77)
- ③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85의2①)

나. 의장이 제의하는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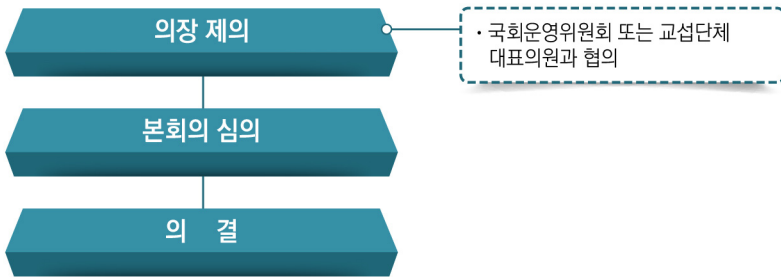
- ① 휴회의 건
- ② 비공개회의를 열자는 동의(국75①)
- ③ 의사일정 변경동의(국77)
- ④ 회기결정의 건
- ⑤ 회기연장의 건
- ⑥ 투표방법을 변경하자는 동의(국112②)

03 중요동의 처리절차

가. 의장제의

의장제의 중요동의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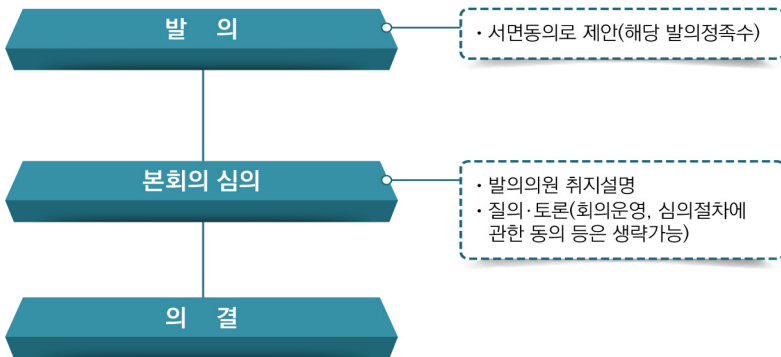
▶ 그림 2-41 ◀ 의장제의 중요동의의 처리절차도



나. 의원발의

의원발의 중요동의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2-42 ◀ 의원발의 중요동의의 처리절차도



제11절 인사청문요청안

01 인사청문요청안의 의의

「국회법」 개정(2000. 2. 16.)과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으로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임명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절차로서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인사청문회 도입 당시에는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13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에 대하여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자질과 능력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어 인사청문회대상자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표 2-13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범위
---------------	----------------------

도입시기 및 법적 근거	대 상 자	소 관 위원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임명동의안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선출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법」 개정(2003. 2. 4.)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인사청문요청안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법」 개정(2007. 12. 14.)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	소관 상임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인사청문요청안 - 합동참모의장	소관 상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	인사청문요청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

도입시기 및 법적 근거	대 상 자	소 관 위원회
「국회법」 개정(2012. 3. 21.)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3.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2012. 3. 21.)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인사청문요청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 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 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	인사청문요청안 - 특별감찰관	소관 상임위원회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부칙에서 「국회법」 및 「인사 청문회법」 개정	인사청문요청안 - 한국방송공사 사장	소관 상임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	인사청문요청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소관 상임위원회

-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봄(국65의2⑤).
- ※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음(국65의2③).

02

인사청문요청안의 종류

인사청문요청안은 인사청문요청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가.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국46의3, 대인5②)

-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나.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이 개별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국65의2)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헌법재판소법 6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4①
- 국무위원후보자(○○○)장관 (○○○) 인사청문요청안 : 국공31의2, 대인5②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①
-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국가정보원법 7①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7②
-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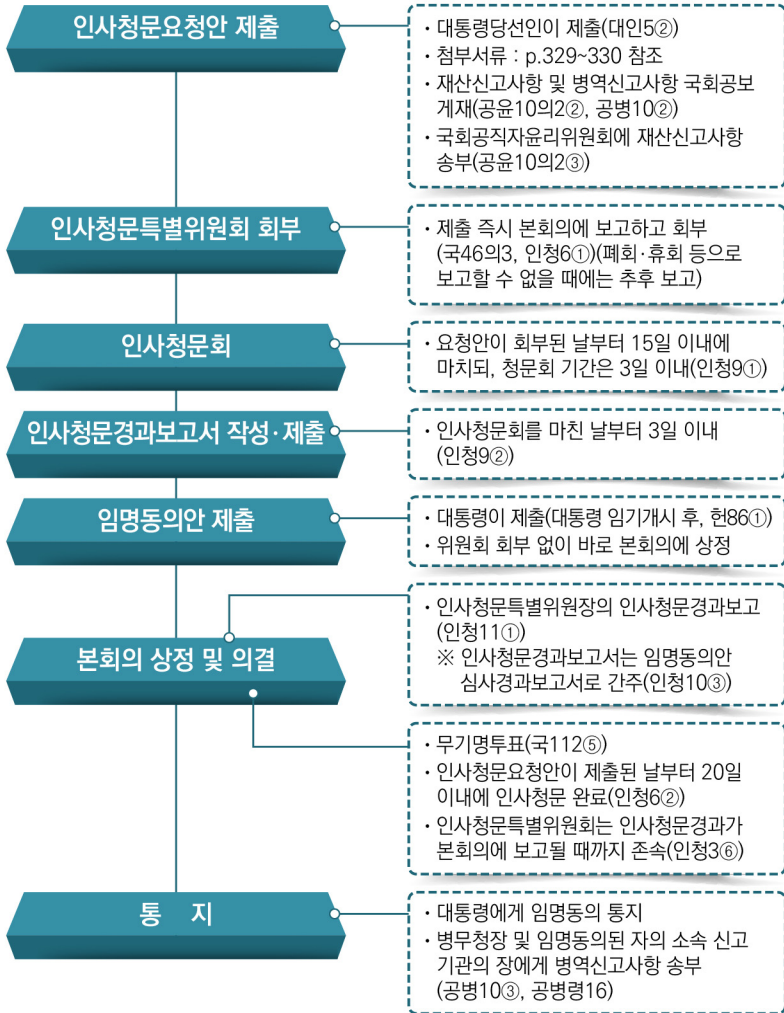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5③
-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국공32①
-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검찰청법 34②
-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경찰법 11②
-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12
- 한국은행 총재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한국은행법 33①
- 특별감찰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특별감찰관법 7②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방송법 50②
-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공수처법 11①

03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절차

가.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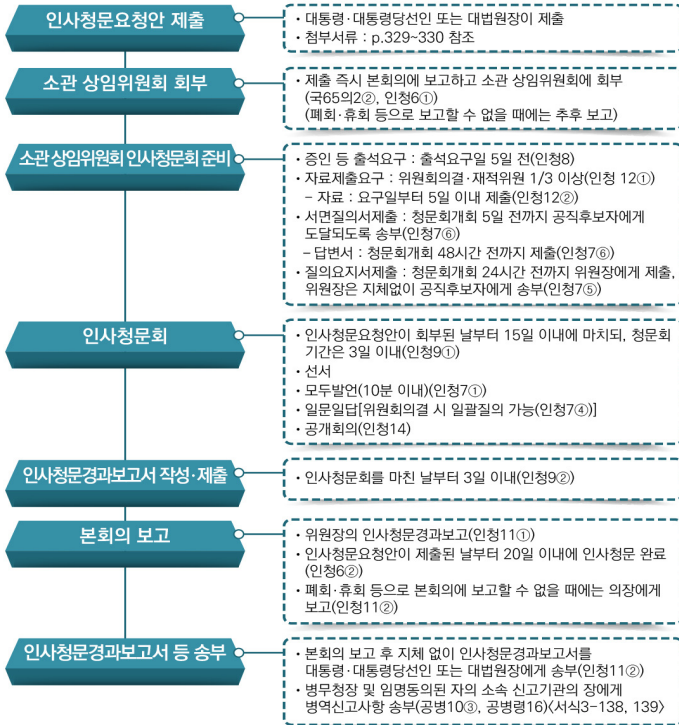
▶ 그림 2-43 ◀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절차도



나. 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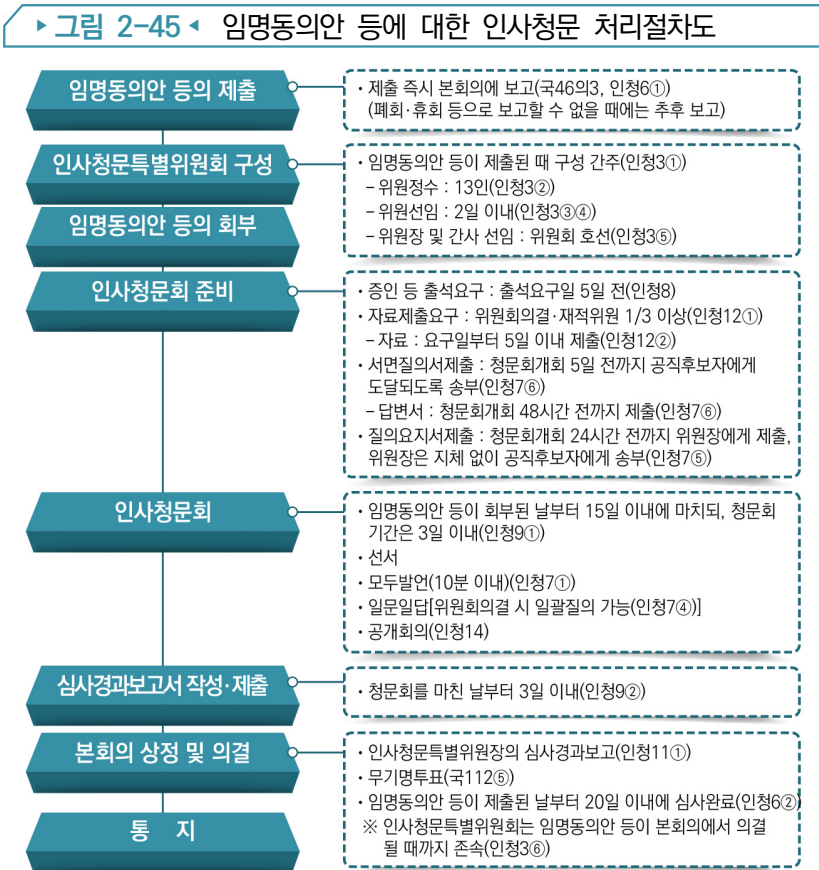
▶ 그림 2-44 ◀ 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절차도



- ※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2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인청6③).
 - 국회가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임명·지명할 수 있음(인청6④).

04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 처리절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임명동의안 등⁴⁾에 대한 처리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2-45>과 같다.



4)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에 대한 선출안

05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첨부서류

임명동의안등⁵⁾의 첨부서류(인청5)는 다음과 같다.

가. 요청사유서(임명동의안, 인사청문요청안의 경우) 또는 추천서
(선출안의 경우)

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이력서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상훈수여증명서

다.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공병10①)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공병규2②)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공병10①후단)

5)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에 대한 선출안
 -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라.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공운10의2②)

- 공직후보자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공운규22, 공운규정12③)
- 공직후보자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사유서(공운12④·공운규23①·공운규정12②)
-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공운10의2②·공운규22①·공운규정12①)

마.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소득금액증명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납세(체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체납)증명서

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 조회서

참고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및 배부 관련 실무

1)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관련 실무적 세부 사항

- 가)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관련 사항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지거부허가확인서를 첨부하고 고지거부사유서에는 독립 생계를 증빙하는 서류(소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 나) 모든 공직후보자는 후보자 내정일 현재의 재산에 대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이에 대한 증명서류 포함) 및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되,

참고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및 배부 관련 실무

- (1) 현직에 있는 공직후보자 : 후보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확인서와 관보(또는 공보)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변동사항신고서를 제출함.
- (2) 공직에 있었던 공직후보자 : (1)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다) 재산신고사항공개목록에 대한 증명서류는 임명동의안 등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로 따로 작성
- 라)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하여는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모두 첨부
- 마) 납세 사실이 없는 대상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납세사실 없음이 명시된 '사실증명'을 첨부

2) 임명동의안등의 배부에 관한 사항

- 가) 임명동의안등에 포함된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누출 및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안솔루션(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한 시스템을 통하여 의원 전원에게 배부
- 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 및 소속 위원에게는 위원회 행정실을 통하여 회의용·심사용 인쇄물(개인정보 포함)을 별도로 제공(임명동의안 등 100부,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75부)
- 다) 임명동의안 등의 접수 시에는 DRM 배부를 위한 PDF파일과 인쇄물(임명동의안 등 170부,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80부)을 각각 제출받도록 함.

참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

- ①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국46의3①)
- ②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46의3①)
- ③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국46의3①)
- ④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국65의2②)⁶⁾
- ⑤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국무위원후보자(국65의2②)
- ⑥ 대법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국65의2②)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공수처법5①)

가.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후보자

헌법상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무위원 가운데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무임소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과 공무원의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무임소 국무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는 행정조직 관련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무임소 국무위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면 1973년 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무임소장관을, 1981년 4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정무장관을, 2008년 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특임장관을 각각 신설하여 행정각부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무임소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 장래 수행할 장관직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아니하다. 실무적으로도 “국무위원후보자(○○○장관 ○○○) 인사청문요청안”이라고 하여 예정된 장관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특정 업무를 수행할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검증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전문성 등을 사전에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회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국무위원후보자가 장래 수행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장래 정책방향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업무를 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대통령당선인(이명박)이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이유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무임소 국무위원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여 의안과에서 이를 접수한 사례는 있다[예 : 국무위원후보자(남주홍)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이춘호)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당시부터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기에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자마자 위 인사청문요청안은 모두 철회되었고 예정 장관직을 특정한 인사청문요청안으로 다시 제출되었다.

제12절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01 국회의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의의

국회 또는 의장은 국회의원이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정부위원회 또는 공공단체의 위원으로 위촉·추천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중심주의 원칙을 존중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기도 하고,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기도 한다<서식 3-142~146>.

의안실무자는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되어 위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최초로 위원 추천 요청이 접수되면 국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할지, 교섭단체에 의뢰할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촉·추천 위원 등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새로 절차를 진행시켜 연임 여부, 위원 교체 등을 추천권자가 다시 결정한다.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은 선출(추천)안과 달리 독립된 의안 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기타 안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02

국회(국회의장)가 위원을 위촉·추천·지명하는 공직 현황

표 2-14 | 국회(국회의장)가 위원을 위촉·추천·지명하는 공직 현황

구 분	공 직	위원자격 (임기)
국회 위촉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12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0) 	국회의원 (3년)
국회 추천 (6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3명) (공직자윤리법 14조의5) 	전문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3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 	전문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3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전문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4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전문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교육위원회 위원(9명)⁷⁾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전문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감찰관 후보자(3명) (특별감찰관법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2명)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23) 	국회의원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10명) (북한인권법 7) 	전문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인권재단 이사(10명) (북한인권법 12) 	전문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9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6) 	전문가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9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4) 	전문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4명)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5) 	- (2년)	

구 분	공 직	위원자격 (임기)
국회의장 지명(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6명)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10) 	국회의원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기념관 이사(4명) (독립기념관법 7) 	국회의원 (2년)
국회의장 추천(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3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 	전문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10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4) 	전문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3명)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26) 	전문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3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7) 	전문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3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 	전문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3명) (사립학교법 24의3) 	전문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분권위원회 위원(10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6) 	전문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2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10) 	전문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3명) (인성교육진흥법 9) 	전문가 (2년)
국회의장 위촉(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4명)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4)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4명)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8명) (국회법 46조의2) 	전문가 (2년)

7) 2022년 7월 21일 시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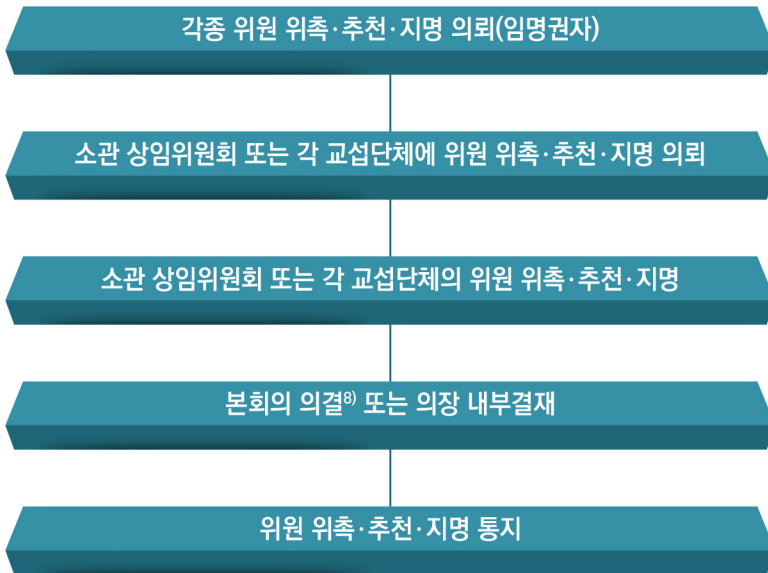
8)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정하고 있음.

9)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정하고 있음.

03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처리절차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의 처리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2-46>와 같다.

▶ 그림 2-46 ◀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처리절차도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II

www.assembly.go.kr





제3편

의안 관련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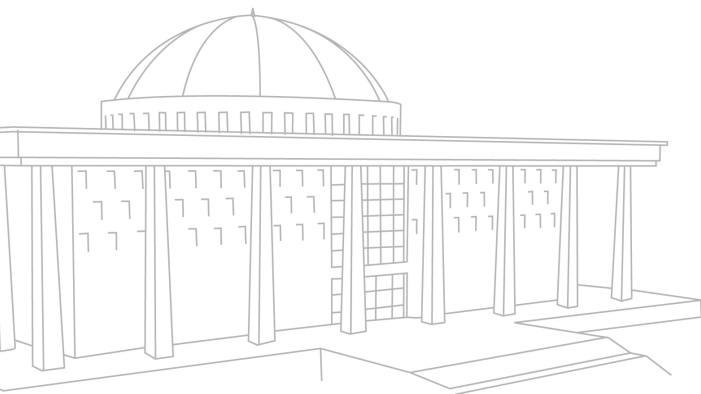
제1절 의안의 철회 및 수정

제2절 수정동의, 의원발의 대안

제3절 번안(翻案)

제4절 재회부

제5절 본회의 부의 요구



제1절 의안의 철회 및 수정

01 의안의 철회 및 수정의 의의

가. 관계 규정

● 국회법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발의자가 아닌 찬성자의 동의(同意)는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2명 이상 공동발의인 경우에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일단 의제가 되어 심의에 들어간 의안은 그 심의 여부의 결정 권한이 그 의안을 심의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의제가 된다”는 것은 회의에 의제로 상정하여 의안을 정식으로 심의 과정에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철회대상 의안을 의제로 상정하기 전에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철회되고, 위원회 상정 후부터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상정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

한편,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어 심사가 개시된 의안은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철회 시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발의자의 수정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원이 수정동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국95).

다.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정부는 정부제출 의안에 대하여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요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 “철회요구” 또는 “수정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85~87, 96).

라. 철회요구 및 수정안의 의안번호 부여 여부

철회요구 및 수정안은 독립된 의안이 아니므로 별도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02 의안의 철회 및 수정 절차

가. 의안의 철회

1) 절차요약

가) 철회요구 접수<서식 1-84, 85>

나) 의장결재 및 본회의 보고

다) 철회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와 동시에 철회

라) 철회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경우

① 소관 위원회에 철회동의 여부 보고 요청<서식 1-88>

② 소관 위원회의 철회동의 여부 의결

③ 소관 위원회의 철회동의 보고<서식 1-89>

마) 철회대상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 철회동의 여부 의결

바) 의안 철회통지 : 철회요구자, 철회된 의안의 발의자, 소관 위원회, 관련위원회<서식 1-9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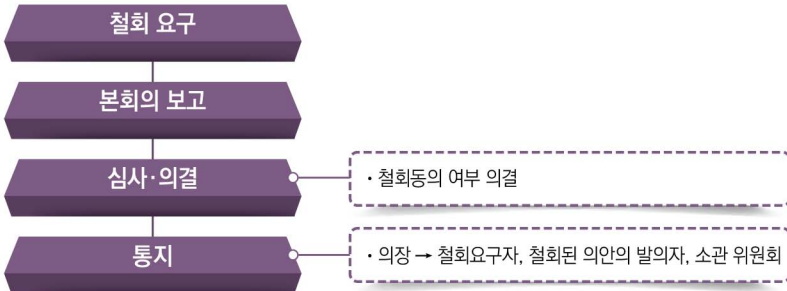
2) 처리절차

철회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경우 및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의 처리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다.

▶ 그림 3-1 ◀ 철회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 그림 3-2 ◀ 철회대상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나.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정부의 수정안 제출

1) 절차요약

가)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접수<서식 1-96>

나) 의장결재 및 본회의 보고

다) 원안(수정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안 접수와 동시에 원안이 수정되었음을 소관 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통지<서식 1-99, 100>

라) 원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경우

① 소관 위원회에 수정안 회부<서식 1-97>

② 소관 위원회의 수정동의 여부 의결

③ 소관 위원회의 수정동의 보고<서식 1-98>: 동의하면 수정안을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 동의하지 아니하면 원안만 심사

④ 소관 위원회가 수정동의 보고를 하면 의장은 수정사실을 관련위원회에 통지<서식 1-101>

마) 원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 : 수정동의 여부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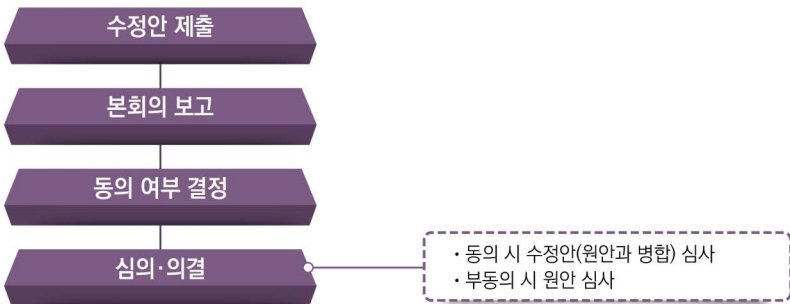
2) 처리절차

수정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경우 및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의 처리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다.

▶ 그림 3-3 ◀ 수정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 그림 3-4 ◀ 수정대상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03 의안의 철회 관련 사항

가. 일부 발의자(찬성자) 제외 가능 여부

「국회법」에 따라 의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의자(찬성자)에서 일부 의원만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유효하게 접수되어 의안으로 성립된 이후에는 발의자 제외와 같은 형식상 변경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의원만을 발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접수된 의안을 철회한 후에 해당 의원을 제외하고 동일 내용의 의안을 다시 발의하여야 한다.

※ 실무적으로 의안과 접수 후 위원회 회부 전의 결재단계에서 일부 발의의원 또는 찬성위원의 철회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의사(찬성의사)의 정정(訂正)으로 보아 의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위원회 회부 후에는 접수·회부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발의의사(찬성의사) 및 안(案)의 정정이 불가능하다.

나. 철회된 의안의 효력발생시점

의원 또는 정부는 발의 또는 제출한 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법」은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의안심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철회자가 제출한 철회

요구서가 접수된 시점에, 위원회 심사 중에는 위원회가 동의 여부를 의결한 시점에, 본회의 심의 중에는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의결한 시점에 철회의 효과가 발생한다.

사례

위원회 철회동의 보고 사례

건 명	제출일	철회요구일	철회일
재외국민보호법안	16.12.28.	18.4.18	18.8.23. 〈18.8.23. 위원회 동의, 8.30. 보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1.2.	17.8.31.	17.9.22 〈17.9.22. 위원회 동의, 9.28. 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	18.10.12.	18.11.6. 〈18.11.6. 위원회 동의, 11.23. 보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3.12.	19.11.18.	19.11.29 〈19.11.29 위원회 동의, 12.10. 보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9.5.7.	20.1.15.	20.2.26 〈20.2.26 위원회 동의, 3.2. 보고〉

다. 철회된 의안의 재제출

철회된 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의안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철회를 동의하는 의결은 의안 그 자체를 의결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의원 또는 정부는 철회된 의안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 기존 비준동의안 철회 후 새로운 비준동의안 제출

한·미FTA 추가협상에 관한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 형식에 관하여 당시 정부는 추가협상에 관한 서한교환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기존 한·미FTA와 구분되는 별개의 조약이므로 국회에 별도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미FTA 추가협상 서한교환은 자동차 분야 등에서 기존 한·미FTA의 내용을 변경·개정하는 것으로서 2개의 비준동의안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안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가결될 경우 동일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모순과 이로 인한 법적 효과의 상충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법률안과 달리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는 그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2개의 비준동의안을 하나의 안으로 합칠 수는 없다. 따라서 계류 중인 기존의 비준동의안과 중복·상충되는 추가협상 합의문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 비준동의안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

므로 「국회법」 제90조에 따라 기존 비준동의안을 철회한 후 추가협상 결과를 포함한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

기존 비준동의안을 철회한 후 추가협상 결과를 포함한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사례

건 명	제 출 일	철회요구일	철회일	경 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08.10.8.	11.4.28.	11.5.4.	11.6.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으로 추가협상 결과를 포함하여 재제출

제2절 수정동의, 의원발의 대안

01 수정동의, 의원발의 대안의 의의

가. 관계 규정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정동의

수정동의는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하려는 목적으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것을 말한다<서식 1-102~105>.

수정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 「국회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헌법재판소(2006. 2. 23. 2005헌라6)는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국회법」상 수정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왔다.

2010년 3월 12일 「국회법」 개정에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명문화하였는데, 이후 헌법재판소(2020. 5. 27. 2019헌라5)는 “국회법 제95조제5항 본문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부의안건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정동의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례(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 수정동의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예시)

- ① 부의안건의 개정조문을 직접 수정(변경, 삭제 등)하는 경우
- ② 부의안건 개정조문의 시행을 위한 부칙만을 수정하는 경우
- ③ 부의안건의 법률 제명만을 수정하는 경우
- ④ 부의안건의 개정조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거나, 해당 조문의 단서 또는 후단을 변경·삭제하는 경우
- ⑤ 부의안건의 개정조문과 같은 조 안에서 항·호·목 등을 신설·변경·삭제하는 경우
- ⑥ 부의안건의 개정조문에 포함된 용어의 정의규정, 적용범위, 행정제재, 벌칙, 과태료 등을 신설·변경·삭제하는 경우
- ⑦ 그 밖에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을 충족하는 조문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동의는 통상적으로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의형식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수정동의에 의한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부의된 후 본회의 토론종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심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심사기간이 지정된 안건 등은 위원회에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이 본회의 부의된 후 본회의 토론종결 전까지 제출되어야 심의가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본회의 의사일정과의 연계, 수정안 접수 절차,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 후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수정동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며, 원안과는 떨어져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의원발의 대안

대안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원발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국95④). 따라서 의원발의 대안은 원안의 위원회 토론종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의원발의 대안은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되는 것으로 독립된 의안이 아니므로 의안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 그림 3-5 ◀ 수정동의와 의원발의 대안의 비교



02 수정동의, 의원발의 대안의 처리절차

가. 수정동의

- 1) 수정안의 제출 및 접수<서식 1-102~105>
- 2) 의장결재 및 본회의 보고
- 3) 본회의 상정·질의·토론
- 4) 수정안과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

▶ 그림 3-6 ◀ 수정동의 처리절차도



나. 의원발의 대안

- 1) 의원발의 대안 제출 및 접수(위원회 심사 중에 제출)
- 2) 의장결재 및 본회의 보고
- 3) 소관 위원회 회부
- 4) 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심사
- 5) 위원회 심사보고

▶ 그림 3-7 ◀ 의원발의 대안 처리절차도



제3절 번안(翻案)

01 번안의 의의

가. 관계 규정

● 국회법

제91조(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翻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動議)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를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나. 번안의 개념

“번안”이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반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번안은 객관적 사정이 이전의 의결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전과 다른

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의결된 의안을 다시 심의하여 수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 번안의 제출방식

1)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의 번안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를 번안하고자 하는 의안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냐에 따라 발의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그 의안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발의한다<서식 1-106, 108, 109>.

나)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한다 <서식 1-107~109>.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의 번안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의 동의(이 경우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포함되면 의제로 성립)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발의한다<서식 1-106, 108, 109>.

라. 번안의 제출시한

1)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의 번안

본회의에서의 번안은 법률안·예산안 등 안건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할 수 없고, 국회규칙 등과 같이 정부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그것이 시행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의 번안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번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 위원장이 의장에게 그 심사보고서의 반려를 요청하여야 한다.

02

번안의 처리절차

가. 본회의 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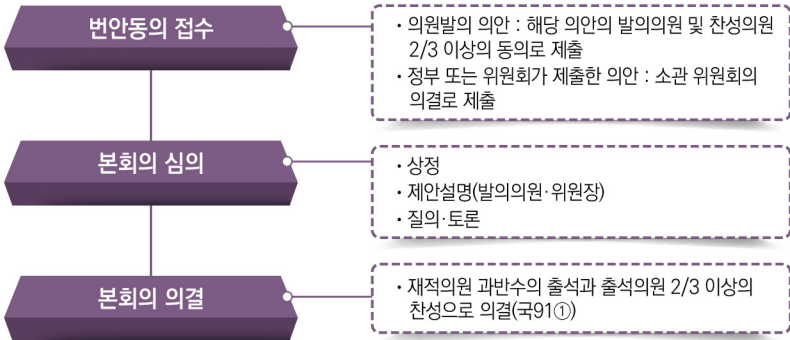
1) 절차요약

- 가) 번안동의를 의장(의안과)에게 제출
- 나) 의장결재 및 본회의 보고
- 다) 본회의 심의 : 상정, 제안설명, 질의·토론
- 라) 본회의 의결

2) 처리절차

본회의 번안동의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3-8 ◀ 본회의 번안동의 처리절차도



사례

본회의 번안동의 처리 사례

건 명	번 안 동의자	본회의 의결일	번 안 동의일	번 안 의결일	비 고
휴회에관한동의	김인태의원	52.10.28.	52.10.29.	52.10.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문화관광 위원장	08.2.19.	08.2.25.	08.2.26.	위원회 의결로 번안동의 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행정자치 위원장	08.2.26.	08.2.27.	08.2.29.	”

나. 위원회 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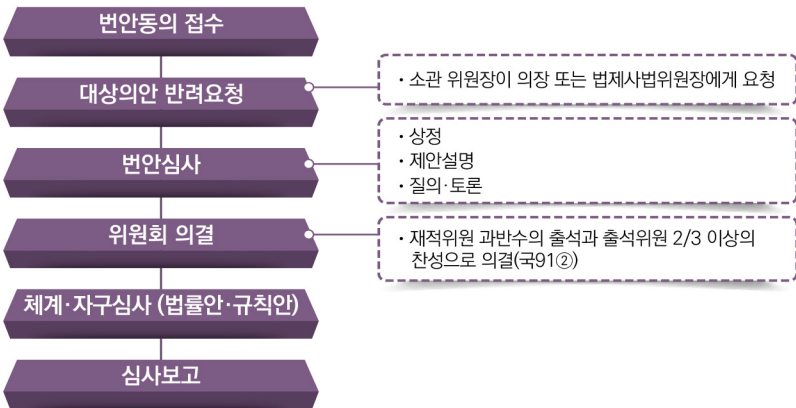
1) 절차요약

- 가) 번안동의를 소속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서식 1-106, 108, 109>
- 나) 심사보고서 반려요청(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시 법제사법위원
장에게, 의장에게 심사보고를 한 경우에는 의장에게)<서식
1-64, 65>
- 다) 번안에 대한 심사
- 라) 위원회 의결
- 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법률안·규칙안)
- 바) 심사보고

2) 처리절차

위원회 번안동의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3-9 ◀ 위원회 번안동의 처리절차도



사례

위원회 번안동의 처리 사례

건 명	번 안 동의자	위원회 의결일	번 안 동의일	번 안 의결일	비 고
백두대간보전·관 리법안	이정일의원 외 1인	03.4.22. 농해위	03.11.20.	03.11.20.	법사위로 부터 반려받음.
일제강점하친일반 민족행위진상규명 에관한특별법안	김희선의원 외 1인	03.12.16. 과거사진상 규명특위	04.2.4.	04.2.4.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11.3.9. 복지위	11.4.12.	11.4.1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외 1인	11.3.10. 문방위	11.4.21.	11.4.2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외 1인	13.11.7. 안행위	13.12.12.	13.12.12.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 김상희의원	17.11.14. 복지위	17.12.1.	17.12.1.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윤종필· 신용현의원	17.11.30. 여가위	17.12.22.	17.12.22.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이만희· 황주홍의원	17.12.1 농해위	18.2.6.	18.2.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박덕흠· 이혜훈의원	17.9.21. 국토위	18.11.6.	18.11.6.	"

03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의 수정방법

소관 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된 의안을 의결 당시의 명백한 착오, 객관적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그 수정방법은 소관 위원회에서의 번안이나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 또는 본회의 번안의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이를 의안처리단계별로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의 수정방법

단계별 구분	수정방법
① 소관 위원회 의결 후 체계·자구심사의뢰 전	위원회 번안
② 체계·자구심사의뢰 중	위원회 번안(번안대상외안 반려받은 후)
③ 체계·자구심사 후 심사보고 전	위원회 번안
④ 심사보고 후 본회의 상정 전	위원회 번안(번안대상외안 반려받은 후)
⑤ 본회의 상정 후 본회의 의결 전	본회의 수정동의
⑥ 본회의 의결 후 정부이송 전	본회의 번안
⑦ 정부이송 후	수정 불가

제4절 재회부

01 재회부의 의의

가. 관계 규정

● 국회법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나. 재회부의 개념

재회부는 심사가 끝나서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그 안건을 다시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동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회부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 자체를 재회부하는 것이므로 재회부 받은 위원회는 그 안건을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치고 이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결정을 하거나 이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회부와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위원회에서의 “재심사”가 있다. 재심사는 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사·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안건을 재심사할 수 있는 경우로는 본회의 의결로 안건이 해당 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경우와 위원회 스스로 번안하는 경우가 있다.

02

재회부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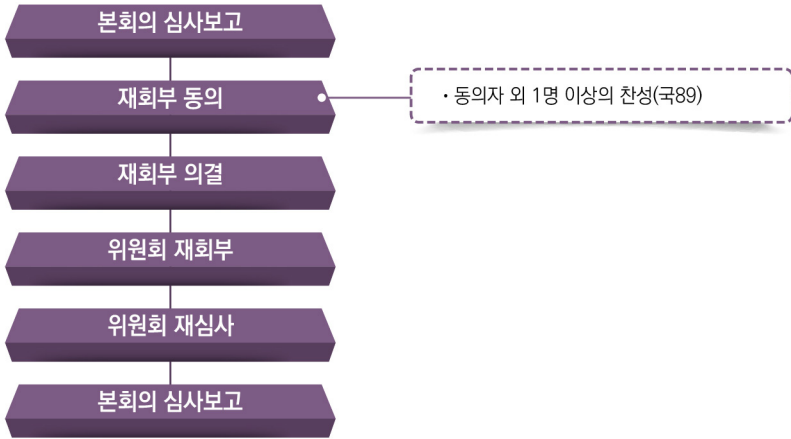
가. 절차요약

- 1) 위원회의 본회의 심사보고
- 2) 본회의에서 재회부 동의
- 3) 재회부 의결
- 4) 위원회 재회부<서식 1-111>
- 5) 위원회 재심사
- 6) 본회의 심사보고

나. 처리절차

재회부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3-10 ◀ 재회부 처리절차도



사례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한 사례

건 명	재회부동의	재회부 의결일	위원회 의결일	본회의 의결일	비 고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4인)	06.8.21. 중요동의 (의장제외)	06.8.21.	06.8.24. 건설교통 위원회	06.8.29.	심사기간 경과 후 본회의 상정

제5절 본회의 부의 요구

01 본회의 부의 요구의 의의

가. 관계 규정

●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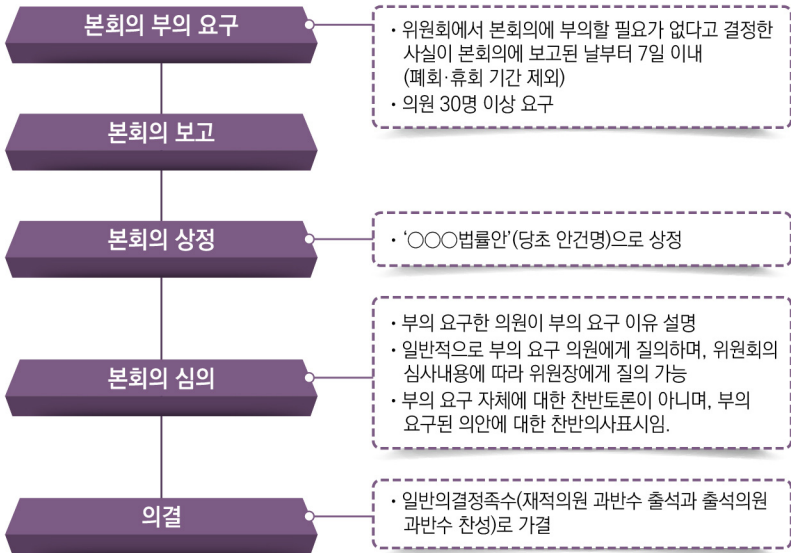
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개념

“본회의 부의 요구”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서식 1-113〉,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날이란 위원회의 폐기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을 말한다.

02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절차

본회의 부의 요구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3-11 ◀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절차도



사례

본회의 부의 요구 사례

건명	제출일	위원회 의결일	본회의 부의요구일	본회의 의결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10.3.23.	10.6.22. (부결)	10.6.29. (임동규의원 등 66인)	10.6.29. (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22인)	16.1.11.	16.1.18. (폐기)	16.2.4. (권성동의원 등 139인)	16.5.29. (임기만료 폐기)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V

www.assembl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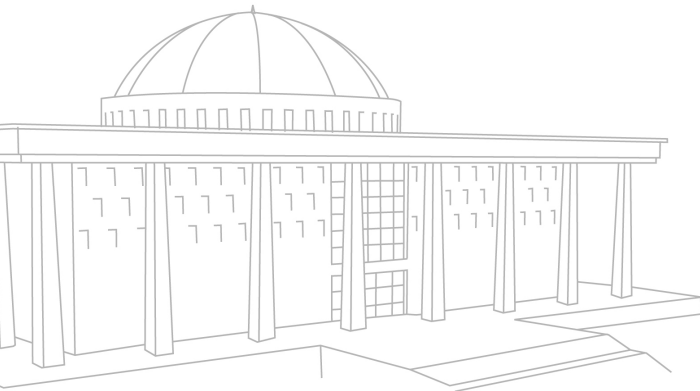
제4편

각종 질문

제1절 대정부질문

제2절 서면질문

제3절 긴급현안질문



제1절 대정부질문

01 대정부질문의 의의

정부에 대한 질문은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줄여서 “대정부질문”이라 한다(국122의2①).

대정부질문은 의원이 국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제가 된 안전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질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흔히 “대정부질의”라고 하는 것은 질문과 질의를 혼동하여 쓴 것이므로 대정부질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02 대정부질문의 절차

가. 의제별 관계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국회는 그 의결로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긴급현안에 관

한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국정 분야를 수개의 의제로 구분하여 ‘의제별 일정’과 ‘출석대상자’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특정사안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국121①⑤·122의2①).

나. 의제별 질문의원 수의 결정 및 배정

의장은 의제별 질문의원 수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질문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국122의2④⑤).

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 결정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의원 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을 정한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국122의2⑧).

라. 질문요지서의 제출 및 정부 송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서식 4-1>,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국122의2⑦)<서식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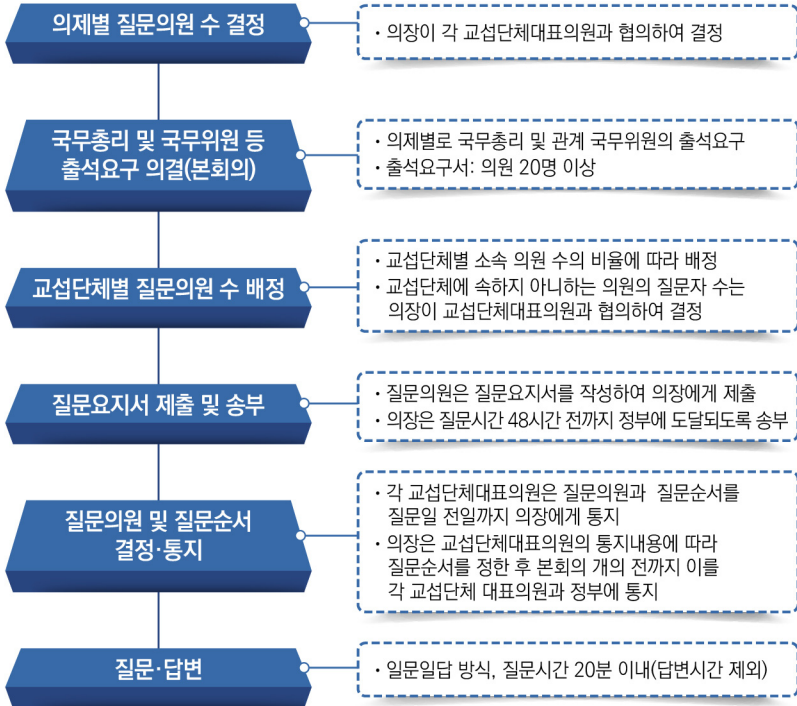
마. 대정부질문과 답변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국122의2②③⑥).

바. 대정부질문 절차

대정부질문 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4-1>과 같다.

▶ 그림 4-1 ◀ 대정부질문 절차도



03 대정부질문의 한계

질문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국102). 또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고(국 146),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상의 징계대상이 된다(국155ix).

04 대정부질문 관련 사항

가. 대정부질문 시 다른 의제 소관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대정부질문은 국정에 관하여 통상 4개 의제로 구분하여 4일 또는 5일 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 대정부질문의 첫째 날은 정치, 둘째 날은 외교·통일·안보, 셋째 날은 경제, 넷째 날은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렇게 의제별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것은 제9대국회 이후부터이다. 제7대국회 중반까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의제로 삼아 질문이 이루어졌고, 제7대국회 후반기부터 제9대국회 초반까지는 모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국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였다. 제9대국회 중반 이후부터는 현재와 같이 의제별로 행하여지는 대정부질문 제도가 정착되었다.

이렇듯 대정부질문은 국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듣는 자리이므로 모든 국무위원이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제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고, 의제에 맞춰 해당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다양화되고 이에 맞춰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방대한 영역의 국정에 대해 한꺼번에 묻고 답을 듣는 것은 깊이 있는 토론을 어렵게 하고, 회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의제별로 구분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모든 국무위원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질문을 받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불필요하게 장시간 대기하였으나 의제별로 구분하여 특정일

에만 출석하게 함으로써 국무위원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없지게 되었다.

다만, 국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는 모든 의제에 대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대정부질문기간 모든 날에 출석하고 있으며, 질문일 시점에 사회적 이슈가 크거나 의제간 연관성이 깊은 현안이 발생하여 다른 의제 관련 국무위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의결로 해당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

대정부질문 시 해당 의제가 아닌 질문일에 다른 의제 질문대상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질문·답변한 사례

① 제19대국회

2014년 11월 5일 제329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외에 경제 분야 질문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출석시켜 질문·답변하였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출석시킨 것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재현된 단말기 불법보조금 대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질문하기 위해서였다.

② 제18대국회

2008년 11월 3일 제278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경제 분야 질문 대상인 기획재정부장관을 출석시켜 질문·답변하였다.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을 출석시킨 것은 2008년 10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사 례

발생하여 그 대처방안을 함께 묻기 위해서였다.

③ 제17대국회

2008년 5월 8일 제273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출석시켜 질문·답변하였다. 경제 분야 질문 대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출석시킨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해 촛불집회 등 반대 시위가 극심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묻기 위해서였다.

2007년 6월 11일 제268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외에 문화 분야 질문 대상이었던 문화관광부장관을 출석시켰다. 이때는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및 언론정책을 묻기 위해서였다.

제2절 서면질문

01 서면질문의 의의

“서면질문”이란 의원이 개회 중에 행하는 구두질문(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에서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 또는 폐회 중 정부시책 등에 관하여 정부의 소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비판 및 감시권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서면질문은 의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단독으로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고, 무소속 의원의 경우에 더욱 유용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02 서면질문 절차

가. 서면질문서 제출 및 정부이송

의원은 정부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서식 4-3>,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

한다(국122①②)〈서식 4-4〉.

나. 정부답변서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야 하며〈서식 4-5〉, 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122③).

다. 보충질문

의원은 정부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국122⑤).

라. 해당의원 통지 및 회의록 게재

정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해당 의원에게 통지한 후〈서식 4-6〉, 질문서와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한다(국115① x vi)〈서식 4-7〉.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시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국122④). 회의록에는 ‘답변서’만을 게재하고 ‘기타 답변관계자료’는 서면질문을 한 해당 의원에게 제공한다.

마. 서면질문 절차

서면질문 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4-2〉와 같다.

▶ 그림 4-2 ◀ 서면질문 절차도



03 서면질문 관련 사항

가. 서면질문의 대상

「국회법」 제122조의 서면질문제도는 구두질문이 불가능한 경우 의원의 계속적인 입법활동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헌법 제62조의 취지와 「국회법」 제122조 및 제122조의2가 속하여 있는 제8장의 제목이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대통령은 서면질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사 례

대통령에게 서면질문한 사례

건 명	질 문 의 원	제출일자	처리결과
박철언대통령특별보좌관“평양방문”에관한질문	박찬중·이 철의원	89.7.31.	반 려
대구서갑구보궐선거및정호용씨후보사퇴에관한질문	김영배의원 외 69인	90.3.30.	반 려
6.29선언의진상규명에관한질문	허경만·조찬영의원 외 71인	91.12.27.	반 려
전직대통령비자금조성설에관한질문	조세형의원 외 7인	95.8.24.	반 려

※ 1995년 이후 대통령에게 질문한 사례 없음.

나.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요구

「국회법」에는 서면질문(국122)과 서류제출요구(국128)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서면질문은 정부정책, 업무 등에 대한 방침, 소견 등을 묻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로 보아 질문과 답변의 형식이 아닌 단순한 서류(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법」 제122조의 서면질문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종전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의원이 정부·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 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수 있었으나, 폐회 중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문방식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당초 서면질문제도의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폐회 중에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부응하여 제14대국회의 「국회법」 개정(1994.6.28.)에서 서류제출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국회가 상임위원회 소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의원의 의정활동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만을 대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국정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서류(자료)를 요구·확보하기 위하여 서면질문의 형식을 빌려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긴급현안질문

01 긴급현안질문의 의의

“긴급현안질문”이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제14대국회의 「국회법」 개정(1994.6.28.)에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 질문대상을 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개정에서 이를 확대하여 대정부질문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122의3).

긴급현안질문은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상적인 대정부질문제도와 달리 긴급히 발생한 중요한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02 긴급현안질문 절차

가. 긴급현안질문요구서 제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그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122의3①②)〈서식 4-10〉.

다만, 정부위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의결이 필요하다.

사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위하여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사례

구 분	의안명	제출일	의결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14.5.20. (이완구·박영선의원 외 274인)	14.5.21.

나. 긴급현안질문 접수 시 확인사항

- ① 질문요구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 질문요구서 제출 여부(국122의3②)
- ② 의원 20명 이상 찬성 여부(국122의3①)
- ③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사항인지 여부(국122의3①)
- ④ 안을 갖추고 그 이유와 질문요지 기재 여부(국122의3②)
- ⑤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기재 여부(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은 제외)
- ⑥ 제목 기재 여부(‘○○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 ⑦ 질문요구일시 기재 여부(20 . . . 00 : 00)

다.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및 의사일정 결정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국122의3③).

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출석요구서 송부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국122의3④), 질문요지가 기재된 질문요구서를 첨부하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출석요구서를 지체 없이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서식 4-12>.

마. 긴급현안질문의원 및 질문시간·순서 결정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회법」 제122조의3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정부질문에 관한 규정(국122조의2)을 준용한다(국122의3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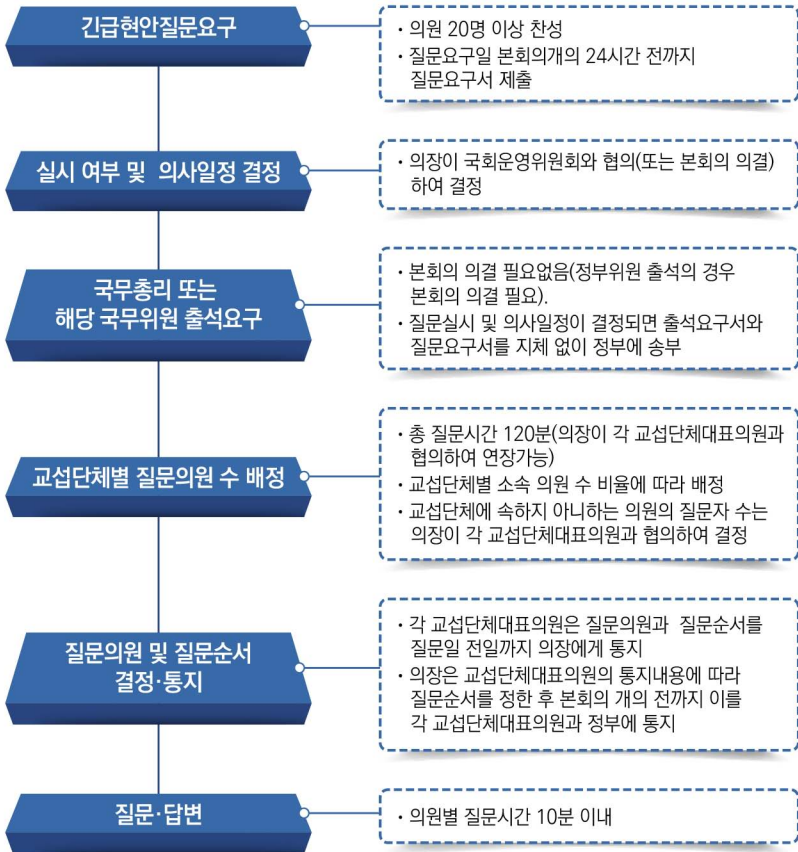
바. 긴급현안질문과 답변

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하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원의 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국122의3⑤⑥).

사. 긴급현안질문 절차

긴급현안질문 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4-3>과 같다.

▶ 그림 4-3 ◀ 긴급현안질문 절차도



편집위원

의안과장	박 철
정치의원담당	김 선 홍
경제의원담당	김 민 지
사회의원담당	전 성 민

홍성오	이건화	이강욱	진수현	이해정
김현학	유승연	이민희	채소영	하민경
김기연	이예리	권유진		

국회의안편람 해설편

발 행 : 국 회 사 무 처

편 집 : 의사국 의안과

발행일 : 2021년 12월

인 쇄 : 경 성 문 화 사

※ 이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발간등록번호

31-9710100-001433-14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